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 일 시 : 2018년 6월 18일 [월] 1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남인순
- 주 관 : (로고)[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후 원 : (로고)일주학술문화재단

목 차

4

인사말

-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정선 회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2

축사

- 일주학술문화재단 허승조 이사장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양호승 회장
-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23

주제발표 1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4

주제발표 2

떠밀려 표류하는 그룹홈청소년의 살아내는 삶 이야기

박현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홍나미 /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50

토론

- 정선욱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영신 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 박현동 대표((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 이인옥 과장(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
- 유주헌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69

부록

- 실태조사 설문지
- 심층면접 질문지

식 순

시 간	순 서
14:00~14:30	▪ 등록
14:30~14:55 (25분)	▪ 개회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축사 및 인사말
14:55~15:00 (5분)	휴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15:00~15:50 (50분)	▪ 주제발표1 :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2 : 떠밀려 표류하는 그룹홈청소년의 살아내는 삶 이야기 - 박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5:50~16:40 (50분)	▪ 좌장 :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 박현동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 과장) - 유주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16:40~17:00 (20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	▪ 폐회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헌신하여 오신 안정선 회장님을 비롯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좌장을 맡아 정책세미나를 진행하실 김형태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하여주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박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님,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님, 토론을 하여주실 유주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님,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장님,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님, 박현동 (사)청소년문화동동체 십대지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아동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룹홈은 요보호 아동의 대안양육체계로서 바람직한 시스템입니다. 아동보호정책과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862차 회의, 2003.1.31.)는 대규모 양육시설 보호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시설인 아동그룹홈과 위탁양육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룹홈의 증가 속도는 빠른 데 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동보호시설에 준하여 실시하지만 지원은 원칙과 기준이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일자리 사업으로 책정하여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복권기금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과 기준이 없는 운영비 책정으로 운영문제가 심각하며, 종사자 부족과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아동보호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

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연간 2,494만2천원 기준으로 지급(국비 40%, 지방비 60%)하고 있으며, 2교대도 시행되지 않아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이며, 호봉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들이 아동청소년 그룹홈 정상화 및 차별철폐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겠습니까.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다른 보호유형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여 저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로 키우는 일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 사후 대응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굴 중심, 아동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요구에 대응하고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자체 아동보호 인력 확충 규모를 보면 총 219명(시도 25명, 시군구 19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인력 확충 규모로는 전달체계 전면 개편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아동보호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

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세미나는 (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와 현재를 비교하고, 지난 10년간 변화의 추이를 바탕으로 아동생활가정의 향후 10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정책세미나에서 아동청소년 그룹홈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정선 회장님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그룹홈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철

인사말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놈의 실태조사 맨날 하면 뭐하나, 그래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걸...’
우린 어느새 깊이 체념하고 열패감에 너무나 익숙해져있습니다. 매년 구름처럼 모였던 열망은 막연히 바람처럼 사라져왔기에, 기대는 또다시 허탈한 냉소로 바뀌지 않을까 불안하지만 희망의 등불 하나 켜는 심정으로 닫힌 문을 다시 열어봅니다.

아동을 대규모양육시설(고아원)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각성에 따라 민간에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온 소규모 가정보호형태를, 정부가 UN의 권고와 선진세계의 아동보호흐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여 제도 안으로 편입하면서 시작된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이 15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연구와 준비 없이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게 급급했던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인 아동복지사업을 줄속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입하여 그룹홈보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열걸에 일자리사업으로 편입된 결과 우리 아동그룹홈은 15년 동안 비정상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서 신음을 하며, ‘그저 애들 때문에...’ 죽지 못 해 여기까지 견뎌왔습

니다.

3차에 걸친 실태조사를 보면 법제화 이후 양적인 변화는 대단했고, 결국 국가에서도 아동보호체계를 그룹홈 위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동그룹홈은 퇴보를 거듭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룹홈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비정상과 차별’로 규정하는데 이의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 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룹홈협의회 회장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뵈었고, 죽을 힘 다해 아동보호체계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처럼 힘없고 표 없는 대상은 찢절매며 애가 타지만 늘 마지막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갖게 된 희망과 환호는 잦아들고 분노를 머금은 두려운 눈을 들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살피는 일만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동들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 실질적인 힘을 쏟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마음착한 사람들이나 사회복지사가 그 책임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일에 나서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동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아동전문 국회의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구를 갖지 않고, 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아동의 권익보호와 환경개선만을 책임지고 일하다가, 밝아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임기를 마치는 비례국회의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동을 사랑한다며 아동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좋은 환경은 무엇입

니까?

아동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은 좋은 어른이 아동들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어도 거기에 좋은 어른이 없다면, 아동의 성장환경은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쯤 부족한 환경에서라도 좋은 어른이 함께 있으면 결핍은 도리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눈물겹게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아동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또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아동입니다. 부모를 잃고 애정을 받아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을 함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 좋은 어른들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도저히 함께 있지 못해 떠나야 하는 환경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동에 대한 사랑을 품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자 찾아오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없고, 와서도 너무 실망하고 바로 떠나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결국은 아동그룹홈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다시 대규모 양육체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룹홈이 다 망가진 후에 뒤늦게 다시 살려보겠다고 한다면 이미 이런 그룹홈은 없을 것입니다. 급여를 많이 주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보장하고, 아동의 권익보다는 직업으로서의 복지사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지 않으면 아동보호를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직업이기보다는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내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잃으면서도 살아가는 좋은 어른들이 남아 있을 때 그룹홈을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또 다시 같은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희망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룹홈 현실이나 종사자 처우, 젊은 복지사의 기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과 바른 성장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늘 우리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주시는 남인순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미래와 아동을 위해 힘들여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아는 우리 그룹홈 가족들은 남인순 의원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내빈들과 여러 고마운 분들께도 우리 그룹홈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동그룹홈의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해주시는 정익중 교수님과 진행과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자리임에도 나오셔서 애써주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사업과 이인옥 과장님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그룹홈의 사정을 잘 살펴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안정선

축사



안녕하십니까.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허승조입니다.

2018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저희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17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연구는 2008년과 2014년에 실시했던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 조사와 2017년 현재를 비교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이 이전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입양, 위탁가정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되어 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일주재단의 이번 후원이 지난 10년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주소를 역사적으로 재조망해볼 수 있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무는 숲과 함께 자라야 한다.”는 저희 일주재단 설립자인 일주 이임용 회장의 말씀처럼 아이는 사회와 함께 자라야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주재단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튼튼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주학을꽃화재단 이사장 허충조

축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정책세미나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남인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발전과 지원육성을 위해 힘써 오신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님과 그룹홈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그룹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복지수요의 양적, 질적 증대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및 정서적 안정, 사회화에 최적화된 보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규모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화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00년 그룹홈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003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그룹홈이 아동생활시설과 함께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룹홈은 양적·질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 된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종사자의 자격기준, 지도, 감독, 평가 등 규제는 타 아동생활시설과 같지만 양육비지원, 종사자급여,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동생활시설과 큰 격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종사자의 처우가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현장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직률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홈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할 때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하여 ‘어머니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우리가 지향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세미나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그룹홈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상목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승환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과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노동 가치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만큼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과 2014년에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2017년 실태를 비교하여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실태를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점과제로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설 유형이 다르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다면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여

성가족부 소관 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 협회는 각 단위와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생산 및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거주시설 3교대제 도입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쉼과 경력단절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 제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서 아동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계신 아동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충환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양호승입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신 남인순 의원님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족해체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회적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룹홈은 기존의 양육시설과 차별화된 가정에 가까운 시설로서,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2014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에 이어 계속되는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그룹홈의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그룹홈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그룹홈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호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이자, 국내 요보호 아동복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그룹홈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원가족으로 복귀하고, 자립·정착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봄으로써 요보호아동의 지원체계를 더 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그룹홈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세미나의 결론이 그룹홈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아동 단체 협의회 회장 양호웅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입니다.

태양 아래 나무들은 진하게 나뭇잎을 입고 우리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는 6월입니다.

오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중심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사회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공동생활가정들의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아동복지협회는 1952년 설립 이래 약 70여 년간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복지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는 또 다른 유형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해 아동복지예산의 중앙환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아동복지 보호체계로부터 퇴소하거나 보호 종결되는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산적해 있는 아동복지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기준 요보호 아동의 수는 3만 명이 넘고, 매년 퇴소하는 아동이 5천 명을 넘는다는 통계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호하고, 책임져야하는 아동이 많은 반면, 그들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는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소 아동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주거문제인데, LH공사 전세주택 또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아동 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보호 아동이 시설 등의 보호에서 벗어나 퇴소한 후의 심리·정서적 지지, 일상생활 유지능력의 함양 등을 위한 과도기적 지지체계 마련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퇴소 아동들의 막막한 자립실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방안과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 지지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매우 시급한 해결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협회와 함께 많은 아동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그 외 아동보호체계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아동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장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발전적 방안 마련을 넘어 향후 아동복지의 변화와 발전을 담보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님과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기관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정찬



〈주제발표 1〉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II.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현황

1. 발전과정
2. 공동생활가정의 일반적인 현황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III.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 분석결과

1. 공동생활가정 운영환경 실태
2. 아동청소년 이용자에 관한 사항
3.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욕구

IV.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분석결과

1.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일반 현황
2. 공동생활가정 입소 전 아동청소년의 양육 실태
3.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상황
4. 아동청소년 자신에 대한 사항
5. 공동생활가정 생활
6.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발전을 위한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
3.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지원
4.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가 논의되면서 1995년 3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이 결정되어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의거하면,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그룹홈과 가정위탁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룹홈과 가정위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에 그룹홈과 가정위탁이 법제화되었다.

2004년 7월 그룹홈이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4항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될 당시 전국에 그룹홈은 104개소였으며 그 뒤 매년 40~50개소씩 증가하여 2016년 510개소되었다. 아동복지시설로서 그룹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이 이루어진지 10년이 지났고, 개소 수 기준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과 가정위탁은 계속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룹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은 종사자들의 기대만큼 증가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간 그룹홈과 종사자,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는데, 첫 번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08년 조사(정익중 책임, 조사 148개소 / 아동 384명 응답)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본 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2012년에 실태조사(김철진 책임, 조사 161개소, 아동 조사 안함)를 실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14년에 조사(정익중 책임, 조사 265개소 / 종사자 530명, 아동 498명 응답)를 실시하였다.

공동생활가정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법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신고 된 397개소 중 2010년 1월 기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33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시설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395개소를 그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3차 평가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기관은 전수평가를 원칙으로 총 410개 시설이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그룹홈 종사자의 소진, 직무만족도, 그룹홈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과 어려움을 살펴볼 수 없으며 이러한 조사는 2014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룹홈의 발전적인 방향을 실제적인 구성원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매년 인건비만 3%로 내외로 상향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시설운영비는 2008년 월 23만원에서 2016년 기준 월 24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되고 있어 물가와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운영자의 부담을 커

지고 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방식이 아직 대형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만 치우쳐 있어 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형태인 그룹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만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그룹홈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그룹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대형시설 편향의 아동배치 및 예산편성의 오래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유엔의 권고 사항과는 역행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청소년에게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의 가정형태를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장차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룹홈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룹홈이 발전하도록 대안을 모색하여 아동복지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조사는 2014년 그룹홈 실태조사(정익중 책임)과 비교하여 현재 그룹홈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룹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어 전체 344개소 그룹홈(시설장344명, 종사자618명 아동630명 응답)이 참여하였기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그룹홈 관련 실태조사 중 가장 응답수가 많아 대표성이 높고 일반화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룹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룹홈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상과 보호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그룹홈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룹홈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대리 보호체계와 관련된 타 시설과의 차이를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는 지난 10년간 그룹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룹홈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원가족 복귀 및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더 필요한 지 살펴봄으로써 요보호 아동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 조사를 통해 그룹홈 운영주체 구성, 지역별 변화추이, 주요 프로그램 내용,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인지, 퇴소한 아동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그룹홈 운영 전반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룹홈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 학력, 근로시간, 급여, 직무만족도, 소진 등을 살펴보고 특히 직무만족도와 소진이 아동 양육 및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룹홈 아동들의 연령, 거주기간, 입소이전 학대경험 유무, 그룹홈 생활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만족도,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우울, 스트레스 등을 살펴보고, 그룹홈 입소 이후 또래와 학교생활에는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있는 아동들의 실제적인 모습과 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그룹홈에서 지원해야할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과정

본 조사를 위하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그룹홈 협의회 실무진들과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2차례회의를 통해 조사의 필요성, 방법,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1차례 회의를 통해 기간 보고되었던 그룹홈 관련 실태조사결과, 2010년과 2013년, 2016년 평가결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은 2014년과 현재의 비교가 필요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였다.

설문지는 운영자용, 종사자용, 아동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동용은 한 기관 당 응답할 수 있는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하여 1개소 당 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룹홈에 따라 응답할 수 있는 연령의 아동이 없는 그룹홈(영유아전담)도 있어 이 경우에는 운영자용, 종사자용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에 시설로 신고 된 아동공동생활 가정 510개소 중에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가입된 415개(2017년 6월 기준) 그룹홈의 운영자, 종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연구를 위해 415개 그룹홈에 IRB 승인이 완료된 2017년 11월14일 직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중 설문지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반송된 곳, 설문지를 분실한 곳 등에 추가로 2차 발송을 하였고, 1월에는 회수된 설문지를 정리하고,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배포 대상이었던 415개소 중 344개소(82.8%)가 응답하여 회수되었고, 운영자용(344명)과 종사자용(618명)이 작성하였으며, 아동용은 630명이 응답하였다.

<표 1-1> 설문지별 회수비율

구분	배포	회수	회수율(%)
시설장	415	344	82.8
종사자	830	618	74.5
아동	830	630	75.9

<표 1-2> 지역별 설문지회수비율

구분	배포	회수	회수율(%)
서울	57	47	82.4
부산	24	21	87.5
대구	14	11	78.5
인천	12	10	83.3
광주	29	21	72.4
대전	16	9	56.2
울산	8	8	100.0
경기	91	77	84.6
강원	17	15	88.2
충북	22	20	90.9
충남·세종 (세종 1개소)	22	19	86.3
전북	40	30	75.0
전남	27	23	85.1
경남	20	20	100.0
경북	12	10	83.3
제주	4	3	75.0
합계	415	344	82.8

II.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현황

1. 발전과정

1963년 한국SOS마을이 설립되면서 고아원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규모 양육 시설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SOS마을은 당시 각 단위가 이모와 아동 9명 정도의 소가정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각 소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집단 마을 형태로서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과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설립된 ‘언니의집’이 그룹홈 형태의 교호시설로서 설립되었으며, 비행아동을 위한 그룹홈으로 ‘사랑의 집 연성원’이 1976년 설립되었다(이상순, 1997). 그러나 이 당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던 대형시설의 소(小)숙사 개념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그룹홈이라 할 수 없다.

1970년 말부터 민간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규모 양육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던 상황에서 민간이 할 수 있었던 방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던지, 아니면 따로 집을 구하여 가정형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여기저기에 이름 없이 아동들을 보호한 이들이 있었지만, 이름을 가지고 공동생활가정을 꾸린 것은 1975년 가톨릭 다미안사회복지회에서 서울 응암동에 부모가 버린 요보호아동을 위한 ‘테레사의 집’을 열어 여자 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78년에 신림동에 ‘예수그리스도의 집’을 열어 남자 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두 집은 보호 아동의 숫자가 10-30명 정도로 지금의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성남만남의집’ ‘나눔의집’ ‘살레시오 광명나눔의집’ 등이 생겼다. 특히 1985년 광명시 철산동에 설립된 ‘나눔의집’은 중간의 집(halfway house)을 표방하여 가출이나 범법 등으로 가정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하며 적절한 보호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집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의 아동청소년그룹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동청소년그룹홈의 시초는 1987년에 서울 성북구에 설립된 ‘은총의 집’을 들 수 있는데, 소규모아동보호에 관심이 있던 일부 천주교 평신도들이 ‘작은자매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적으로 아동들을 돌보았다. 이곳에서는 7명의 여자 아동과 이모 2-3명이 함께 기거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늘어나면 시설을 늘리지 않고 분가하는 방식으로 작은 가정을 유지하였다. ‘은총의 집’은 나중에 당시의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그룹홈 설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수차례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그룹홈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여자 아동들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함께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해 함께 살기에는 다른 여자 아동들이 불편해하

고, 대책 없이 떼어놓기에는 형제자매들의 함께 살 권리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주변에 남자집을 설립하기로 하여 1988년에 ‘요셉의집’을 설립하였다. 90년대 이후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정해체의 가속화로 인하여 그룹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1993년에 성남에 은행골우리집, 1994년에 안산에 들꽃피는마을 등이 생겨났다. 1995년 말 27개소 363명을 보호하게 되고, IMF 이후 경제적 이유로 가정해체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양육이 거부된 요보호아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아동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가 커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1995년 3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서 아동그룹홈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1996년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아동분야사업안내, 2018). 이에 2004년 7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면서 그룹홈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법적 근거(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갖게 되었다. 2004년 104개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476개소, 2016년에는 510개소로 증가하였다. 2010년 1차 평가, 2013년 2차 평가, 2016년 3차 평가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자격에 대한 강화, 시설 규모나 운영관련 지침이 강화되면서 증가 추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표2-1> 그룹홈 시설 개소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고 시설수		104	154	213	276	348	397	416	460	489	480	476	480	510
지원 시설수	20	32	60	120	176	248	290	348	348	416	416	416	448	448

자료: 보건복지부(2018)

〈표2-2〉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시설 수	종사자 수	정 원	수 용 인 원		
				계	남	여
서 울	60	171	411	312	147	165
부 산	35	106	244	176	97	79
대 구	15	46	99	80	53	27
인 천	16	48	112	90	47	43
광 주	28	88	195	169	84	85
대 전	17	53	117	101	56	45
울 산	8	23	53	44	35	9
세 종	1	3	7	5	0	5
경 기	129	386	890	741	402	339
강 원	23	71	158	124	46	78
충 북	27	85	188	135	63	72
충 남	25	74	175	126	66	60
전 북	46	131	310	234	115	119
전 남	36	102	251	187	109	78
경 북	13	40	88	70	38	32
경 남	26	71	182	137	78	59
제 주	5	16	33	27	8	19
합 계	510	1,514	3,513	2,758	1,444	1,314

자료: 보건복지부(2017b)

〈표2-3〉 공동생활가정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설 수	276	348	397	416	460	489	480	476	480	510
보호인원	1,368	1,664	1,993	2,127	2,241	2,438	2,481	2,588	2,636	2,758

자료: 보건복지부(2018)

2. 공동생활가정의 일반적인 현황

1) 공동생활가정 아동 현황

2017년 말 기준 공동생활가정 이용아동의 현황은 초등학교 878명(31.9%), 중학교 701명(25.4%), 고등학교 613명(22.2%), 미취학 428명(1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생이 가장 많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초등학교 840명(34.5%), 중학교 645명(26.5%), 고등학교 529명(21.7%), 미취학 255명(10.5%)이었던 것과 비슷하였다. 또한,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영아부터 만 18세가 대부분이지만, 20세 이상의 청소년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립준비를 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기타 연령이 2012년에는 169명으로 6.8%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138명(5.0%)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그룹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들이 한 그룹홈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원가정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곧 자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2-4〉 공동생활가정 아동 현황

구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계
빈도	428	878	701	613	101	37	2,758
%	15.5	31.9	25.4	22.2	3.7	1.3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8)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현황

2013년 1월 이전 개소기관과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0일 기준 정부지원금을 받은 2016년 공동생활가정 평가기관인 총 410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설장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4.4%)이 남성(25.6%)에 비해 3배 정도로 많았고, 종사자 현황에서도 종사자의 성별 역시 여성(83.9%)이 남성(16.1%)에 비해 약 4배정도 많았다. 또한 시설장은 407명, 종사자는 685명으로 종사자가 시설장에 비해 278명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법인운영 그룹홈에서 1인 시설장이 한 개 이상의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수가 시설장에 비해 많은 경우와 정부에서 지원은 되지 않으나 그룹홈에서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추가 인력을 보충한 경우 등으로 인해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장 1인과, 종사자 1인의 형태 보다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2-5〉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현황

구분	시설장			종사자		
계	계	남	여	계	남	여
빈도	407	104	303	685	110	575
%	100%	25.6%	74.4%	100%	16.1%	83.9%

(※410개소 중 시설장 무응답 3개소, 종사자 무응답 1개소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6a)

3) 공동생활가정 지역분포 현황

2017년 기준 전국에 510개소의 그룹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489개소에 비해 21개소가 추가 설치되었다. 그룹홈 종사자 수는 2017년 1,514명으로 2012년 1,023명보다 491명이 많아 32.4%가 증가하였다. 그룹홈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는 129개소의 그룹홈이 설치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서울로 60개소의 그룹홈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경기도의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넓고 아동의 숫자도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표에서 아동 수 대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룹홈 1개소당 평균 보호 아동 수는 5.4명(2012년 4.9명)으로 정원 7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종사자 1명당 아동 1.8명(2012년 2.4명)을 보호양육하고 있고, 이는 아동별로 개별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가 보호되어도 아동들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2-6〉 그룹홈 지역 분포 및 종사자 수, 수용인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시설 수	종사자 수	정 원	수 용 인 원		
				계	남	여
서 울	60	171	411	312	147	165
부 산	35	106	244	176	97	79
대 구	15	46	99	80	53	27
인 천	16	48	112	90	47	43
광 주	28	88	195	169	84	85
대 전	17	53	117	101	56	45
울 산	8	23	53	44	35	9
세 종	1	3	7	5	0	5
경 기	129	386	890	741	402	339
강 원	23	71	158	124	46	78
충 북	27	85	188	135	63	72
충 남	25	74	175	126	66	60
전 북	46	131	310	234	115	119
전 남	36	102	251	187	109	78
경 북	13	40	88	70	38	32
경 남	26	71	182	137	78	59
제 주	5	16	33	27	8	19
합 계	510	1,514	3,513	2,758	1,444	1,314

자료: 보건복지부(2017b)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2004년 32개소에 대한 정부 국비가 215백만 원이 지원된 이후, 2016년에는 정부로부터 448개소가 12,30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2004년과 비교하여 그룹홈 시설은 92.8%, 예산은 98.2%가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대리보호체계로서 그룹홈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격려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본예산에서 복권기금운영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 예산 중 종사자 1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 연 19,607,000원에서 2015년 20,195,000원으로 588,000원(2.9%)이 소폭 인상되었고, 2016년 연 21,919,000원에서 2017년 22,554,000원으로 635,000원(2.8%)이 인상되었다. 그룹홈 예산의 소폭 증가는 있었으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그룹홈 종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2-7〉 최근 5년 공동생활가정 예산지원 개소 현황

(단위: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치개소	460	489	480	476	480	510
지원개소	348	416	416	416	448	448

자료: 보건복지부(2018)

〈표 2-8〉 최근 5년 인건비 지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세부 사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액	지원 인원	지원 액	지원 인원	지원 액	지원 인원	지원 액	지원 인원	지원 액	지원 인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7,407	832	8,623	1,031	10,780	1,292	12,308	1,292	14,106	1,398
	1인당 평균지원 19,607		1인당 평균지원 20,195천원		1인당 평균지원 21,919천원		1인당 평균지원 22,554천원		1인당 평균지원 24,942천원	

〈표 2-9〉 연도별 그룹홈 예산지원현황

년도	시설 개소	지원 개소	인건비 (시설장/보육사)	시설운영비	총예산(국비)	증가액
2005	154	60	15,373천원 /인.연	192천원/개소.월	424백만원	
2006	213	120(▲60)	16,142천원 /인.연	202천원/개소.월	890백만원	▲466백만원
2007	276	176(▲56)	16,949천원 /인.연	261천원/개소.월	2,607백만원	▲1,717백만원
2008	348	248(▲72)	17,454천원 /인.연	230천원/개소.월	3,737백만원	▲1,130백만원
2009	397	290(▲42)	17,978천원 /인.연	230천원/세대.월	4,491백만원	▲754백만원
2010	416	348(▲58)	17,978천원 /인.연	230천원/개소.월	5,467백만원	▲898백만원
2011	460	348(-)	18,517천원 /인.연	230천원/개소.월	5,775백만원	▲386백만원
2012	489	416(▲68)	18,517천원 /인.연	230천원/개소.월	6,913백만원	▲1,138백만원
2013	480	416(-)	19,073천원 /인.연	240천원/개소.월	7,357백만원	▲345백만원
2014	476	416(-)	19,607천원 /인.연	240천원/개소.월	7,407백만원	▲148백만원
2015	480	448(▲32)	20,195천원 /인.연	240천원/개소.월	8,623백만원	▲1,216백만원
2016	510	448(-)	21,919천원 /인.연	240천원/개소.월	10,780백만원	▲3,685백만원
2017	-	448(-)	22,554천원 /인.연	280천원/개소.월	12,308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b, 2017a)

최근 2015-16년까지 예산 지원 개소 수는 동결되었으며 인건비는 2011년에서 2012년에는 동결되었다가,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냉난방비, 교육비 등은 2006년 202,000원에서 2016년 240,000원으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인상 폭도 따라가지 못해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나 외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그룹홈 운영난과 종사자의 소진이 높아지고 있다.

〈표2-10〉 시도별 그룹홈 예산지원 현황(설치기준 2016년/ 지원기준 2018년)

시도	설치현황	지원현황	시도	설치현황	지원현황	
서울	60	61	강원	23	19	
부산	35	28	충북	27	18	
대구	15	13	충남	25	21	
인천	16	13	전북	46	41	
광주	28	26	전남	36	30	
대전	17	15	경북	13	9	
울산	8	6	경남	26	24	
세종	1	1	제주	5	3	
경기	129	119	합계	510	448	447
						미배정 1곳

※ 신규 18개 배정은 제외됨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지원 그룹홈 수가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충북, 부산, 전남, 전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서울시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Ⅲ.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 분석결과

1. 공동생활가정 운영환경 실태

2017년에 본 연구 실태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모두 344개소이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148개소와, 2014년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265개소와 비교하면 약 1.3배에서 2.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그룹홈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실태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또한 증가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운영주체

본 연구조사에서는 각 그룹홈 구성원 중 시설장과 종사자가 모두 응답하였으며 운영 주체에 대한 특성은 <표3-1>과 같다. 운영주체 중에서는 개인이 235개소 68.5%로 가장 많았으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24.0%, 종교시설 또는 단체가 5.3%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복지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임의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2014년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49.6%에서 67.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014년에 비해 58개소가 늘어나 그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개인 운영 그룹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신고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룹홈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신고제의 여파로 정부의 그룹홈 시설 자격요건 중 개인 운영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그룹홈 시설에 상응하는 행정 전담 부서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그룹홈 운영상의 관리와 그룹홈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룹홈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면 개신교가 56.8%, 가톨릭이 26.0%로, 전체의 82.8%가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교 5.6%, 원불교 0.3% 기타 0.9%, 종교적 배경이 없는 기관이 10.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교적 배경에서 기독교의 비율은 2008년 85.5%에서 2014년 84.1%, 2017년 82.8%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종교적 배경이 없는 기관은 2005년 2.2%에서 2017년에는 10.4%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룹홈의 절대적인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적 배경이 없는 그룹홈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 의해 그룹홈이 운영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그룹홈의 아동청소년들이 종교에서의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3-1〉 운영주체의 특성

항 목		2017		2014		2008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운영주체	개인	235	68.5	177	67.3	67	49.6	37	40.7
	사회복지법인	42	12.3	29	11.0	28	20.7	14	15.4
	재단법인	15	4.4	17	6.5	10	7.4	11	12.1
	사단법인	25	7.3	28	10.6	10	7.4	13	14.3
	시민사회단체	1	.3	0	0	1	.7	1	1.1
	사회복지단체	0	0	1	.4	1	.7	1	1.1
	종교법인_단체	18	5.3	6	2.3	13	9.6	14	15.4
	비영리단체	6	1.7	5	1.9	3	2.2	0	0
	기타	1	.3	0	0	2	1.5	0	0
	합계	343	100.0	263	100.0	135	100.0	91	100.0
종교적 배경	가톨릭	88	26.0	69	26.1	38	29.0	5	5.5
	개신교	192	56.8	153	58.0	74	56.5	40	44.0
	불교	19	5.6	12	4.5	5	3.8	44	48.4
	원불교	1	.3	1	.4	0	0	0	0
	기타	3	.9	2	.8	1	.8	0	0
	무교	35	10.4	27	10.2	13	9.9	2	2.2
	합계	338	100.0	265	100.0	131	100.0	91	100.0

2) 지역적인 분포

그룹홈의 지역적인 분포는 〈표3-2〉와 같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대도시 40.4%와 중소도시 40.0%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비슷한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소재지의 경우 19.6%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전체적인 그룹홈 개소수가 증가하였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2014년 43.2%에서 2017년 40.4%로 감소한 반면, 오히려 중소도시는 2014년 37.5%에서 2017년 40.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읍면소재지의 경우 19.3%에서 19.6%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대도시에 가장 많은 그룹홈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설치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소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여 그룹홈 역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룹홈의 지역별 분포는 지역 내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지역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방임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아동·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2008)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확대가 요구된다.

〈표3-2〉 지역분포

항목		2017		2014		2008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분포	대도시	138	40.4	114	43.2	60	43.8	39	42.9
	중소도시	137	40.0	99	37.5	50	36.5	39	42.9
	읍면소재지	67	19.6	51	19.3	27	19.7	13	14.3
	합계	342	100.0	264	100.0	137	100.0	91	100.0

3) 주거 및 소유 형태

그룹홈의 주거 및 소유 형태는 〈표3-3〉과 같다. 먼저, 주거 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는 아파트가 31.8%, 다세대 가구가 15.1%, 빌라가 7.0%, 복합건물이 5.0%, 기타가 0.3%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 아파트는 2005년 실태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율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합쳤을 때 그 비중은 72.6%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운영자들이 그룹홈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복합건물이나 다세대가구의 비중을 줄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물의 소유형태는 운영자 개인이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법인 또는 단체소유로 18.4%로 나타났고, 월세 14.9%, 정부지원 10.5%, 전세 10.2%, 무상대여 9.1%, 기타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실태조사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운영자 개인이 그룹홈을 소유하는 형태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세의 경우는 반대로 크게 줄어든 결과이다.

2005년 실태조사 이후 운영자 개인이 그룹홈을 소유하는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거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LH나 SH와 같은 정부지원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월세로 운영되거나 무상대여 형태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나 지원기준의 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3-3〉 주거 및 소유형태

항목		2017		2014		2008		2005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거 형태	단독주택	140	40.8	118	44.7	62	45.9	54	60.0
	다세대다가구	52	15.1	48	18.2	12	8.9	19	21.1
	아파트	109	31.8	60	22.7	26	19.3	9	10.0
	빌라	24	7.0	20	7.6	15	11.1	0	0
	복합건물	17	5.0	16	6.1	17	12.6	0	0
	기타	1	.3	2	.8	3	2.2	8	8.9
	합계	343	100.0	264	100.0	135	100.0	90	100.0
소유 형태	운영자 개인	111	32.5	78	29.7	33	24.4	15	17.4
	법인/단체	63	18.4	47	17.9	33	24.4	32	37.2
	전세	35	10.2	60	22.8	19	14.1	15	17.4
	월세	51	14.9	38	14.4	10	7.4	9	10.5
	무상대여	31	9.1	24	9.1	8	5.9	6	7.0
	정부지원	36	10.5	16	6.1	30	22.2	0	0
	기타	15	4.4	0	0	2	1.5	9	10.5
	합계	342	100.0	265	100.0	135	100.0	86	100.0

4)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그룹홈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로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현황과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미지원 시설이 2008년 23.4%에서 2014년 10.2%, 2017년 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4〉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

항목		빈도	백분율
국가보조금 지원여부	지원	324	94.5
	미지원	19	5.5
	합계	343	100.0

5) 자원 동원: 후원자 현황

후원자 현황에 대한 응답자 수는 2014년 86명에 비해 2017년 32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후원자 현황의 분포는 2014년과 2017년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0명 이하가 5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1-50명 이하가 19.7%, 11-20명 이하가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이 많은 관계로 후원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10명 이하의 후원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홈에 대한 연 평균 후원금을 살펴보면, 연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6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조사와 비슷하였다. 그 다음 순위로는 5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를 통해 연평균 후원금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후원자 현황

항목		2017년		2014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후원자 현황	10명 이하	178	54.8	42	48.8
	11-20명 이하	60	18.5	15	17.4
	21-50명 이하	64	19.7	17	19.8
	51-100명 이하	8	2.5	6	7.0
	100명 이상	15	4.6	6	7.0
	합계	325	100.0	86	100.0
연 평균 후원금	50만원 미만	37	12.1	30	13.0
	51만원 - 100만원 미만	33	10.7	14	6.1
	101만원 - 150만원 미만	12	3.9	13	5.7
	151만원 - 200만원 미만	21	6.8	14	6.1
	200만원 이상	204	66.4	159	69.1
	합계	307	100.0	230	100.0

6) 공동생활가정 운영환경 실태에 대한 소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고 신고시설로 운영이 활성화된 그룹홈은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보호, 교육지원, 그리고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양육기관이다(김동희, 2011).

2017년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룹홈 운영주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개인(68.5%)이 운영주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기독교적 배경(82.8%)을 지니고 있었다. 2014년 이후 중소도시에 그룹홈이 확대 설치되면서 대도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 2014년 조사와 달리, 2017년 조사에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그룹홈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에는 여전히

그룹홈의 설치가 미흡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은 영세농이 대부분이고 결손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의 아동이 많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봉옥, 2005). 농산어촌 지역의 그룹홈 시설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를 농산어촌의 아동 인구수가 도시에 비해 적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그룹홈의 균형 있는 배치가 요구된다.

한편 그룹홈의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룹홈의 실천 철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룹홈의 보호에서 중요한 점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운영자 개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액의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요보호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조금 이외에 국가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그룹홈 시설에 대한 재원마련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요보호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그룹홈의 연평균 후원금을 살펴보면 2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바로 아래 순위인 연 평균 50만원 미만인 것을 볼 때 후원금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10인 이상의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그룹홈 운영자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후원자 결성의 제도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정책에서 그룹홈 보호의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보건복지부, 2017a), 이는 아동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원액의 규모 역시 그룹홈에 더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이용자에 관한 사항

1) 입소한 아동청소년 현황

2017년과 2014년 그룹홈에 입소한 성별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3-6〉 입소 아동청소년 성별 현황

년도	빈도	계	남	여	7세 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7	빈도	1981	1090	891	317	215	102	584	314	270	485	252	233	464	248	216	131	61	70
	%	100	55	45	100	67.8	32.2	100	53.7	46.3	100	52.0	48.0	100	53.4	46.6	100	46.6	53.4
2014	빈도	1494	858	636	141	89	52	439	262	177	413	231	182	393	228	165	108	48	60
	%	100	57.4	42.6	100	63.1	36.9	100	60.0	40.0	100	56.0	44.0	100	58.0	42.0	100	44.4	55.6

성별에 따른 입소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입소자가 55%로 여자 입소아동청소년 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7세 이하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아가 더 많이 입소했으며, 기타의 경우 여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소아동을 학령기별 분포도로 나눠보면 초등학생이 전체 입소아동 중에서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은 24.5%, 고등학생은 23.4%, 기타는 6.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초등학교 자녀의 그룹홈 입소율이 높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14년 실태조사에는 남자 입소아동이 57.4%, 여자 입소아동이 42.6%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근소하게나마 남자 아동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보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14년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7〉 입소 아동청소년 현황

년도	빈도	계	남	여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2017	빈도	1981	1090	891	317	584	485	464	131
	%	100	55	45	16.0	29.5	24.5	23.4	6.6
2014	빈도	1494	858	636	141	439	413	393	108
	%	100	57.4	42.6	9.4	29.4	27.6	26.3	7.2

2) 운영되는 중점 프로그램 및 교육 현황

현재 그룹홈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점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은 〈표3-8〉과 같이 나타났다.¹⁾ 1순위로 실시하고 있는 중점 프로그램으로는 인성지도가 50.9%로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학습지도가 25.4%, 진로지도 5.9%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자립지원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점 교육 현황도 2014년도와 비슷하게 1순위로 생활예절이 72.0%, 특기적성이 16.1%로 나타나 입소아동청소년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45.9%, 생활예절교육이 23.7% 등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취업교육, 기타교육의 경우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홈에 입소하는 원인이 학대(10.4%)보다는 빈곤(38.4%)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것도 간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3-8〉 순위별 중점 프로그램 및 교육

		2017						2014					
항목		1순위		2순위		종합 점수	종합 순위	1순위		2순위		종합 점수	종합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점 프로그램	학습지도	87	25.4	69	20.5	243	2	54	20.5	78	29.9	186	2
	인성지도	174	50.9	45	13.4	393	1	148	56.1	39	14.9	335	1

1) 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종합점수를 매겼다. 1순위에는 2배, 2순위에는 1배를 곱하여 1순위와 2순위 점수를 합한 점수가 종합 점수이다. 종합점수를 근거로 종합순위를 매겼다. 이하 순위별로 조사한 자료는 모두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했으며 3순위까지 있을 경우, 1순위에는 3배, 2순위에는 2배, 3순위에는 1배를 곱하여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매겼다.

	대인관계	7	2.0	21	6.2	35	6	3	1.1	13	5.0	19	7
	진로지도	20	5.9	49	14.5	89	5	19	7.2	37	14.2	75	4
	자립지원	18	5.3	79	23.4	115	3	17	6.4	49	18.8	83	3
	원가족 복귀지원	7	2.0	11	3.3	25	7	9	3.4	7	2.7	25	6
	문화여가	20	5.9	56	16.6	96	4	8	3.0	37	14.2	53	5
	기타	9	2.6	7	2.1	25	7	6	2.3	1	.4	13	8
	합계	342	100	337	100			264	100	261	100		
		2017						2014					
항목		1순위		2순위		종합 점수	종합 순위	1순위		2순위		종합 점수	종합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점 교육	생활예절	188	72.0	46	23.7	422	1	186	70.5	33	12.7	405	1
	특기적성	42	16.1	89	45.9	173	2	37	14.0	99	38.1	173	2
	성교육	6	2.3	12	6.2	24	4	4	1.5	17	6.5	25	6
	인권교육	13	5.0	18	9.3	44	3	18	6.8	37	14.2	73	3
	취업교육	1	0.4	14	7.2	16	7	5	1.9	35	13.5	45	5
	비행예방	4	1.5	9	4.6	17	6	11	4.2	29	11.2	51	4
	기타	7	2.7	6	3.1	20	5	3	1.1	10	3.8	16	7
	합계	261	100	194	100			264	100	260	100		

3) 생활상의 문제

그룹홈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그룹홈 아동들의 생활상의 문제는 1순위에서는 진로/자립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습부진과 정서불안이 각각 19.6%, 19.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대인관계가 12.5%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진로/자립이 26.3%, 학습부진이 21.7%로 나타났다.

2005년, 2008년,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학습부진이 아동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진로/자립’이 1순위를 차지하였고 정서불안과 학습부진이 비슷한 수준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룹홈에서 성장해서 독립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서불안은 2순위로 여전히 높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 부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룹홈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그룹홈 입소 아동청소년들의 진로, 학습,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의 방임과 유기, 가족해체로 인한 상처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내재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습부진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능력 지도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임은주와 최승숙(2015)에 따르면 학습부진을 겪는 초등학생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낙관성, 정서조절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습부진을 겪을수록 위와 같은 심리·정서적 요소들이 더욱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상록·김은경·윤희선(2015)에 따르면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업성적과 학습습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룹홈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기관에 입소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시기에 맞는 학습부진 및 심리·정서적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되기 쉬우므로 더욱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기를 앞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와 자립에 대한 불안으로 정서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진로와 자립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그룹홈 종사자가 인지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

항목		2017						2014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종사자가 인지하는 아동청소년 들의 문제	학습부진	66	19.6	70	21.7	202	2	85	32.9	67	26.6	237	1
	정서불안	65	19.3	36	11.1	166	3	63	24.4	28	11.1	154	3
	진로/자립	99	29.5	85	26.3	283	1	68	26.4	80	31.7	216	2
	우울증	5	1.5	6	1.9	16	9	4	1.6	6	2.4	14	8
	학교부적응	20	6.0	22	6.8	62	6	2	.8	6	2.4	10	9
	가출	-	-	2	0.6	2	11	1	.4	2	0.8	4	11
	대인관계	42	12.5	51	15.8	135	4	14	5.4	22	8.7	50	4
	비행	2	0.6	3	1.0	7	10	5	1.9	7	2.8	17	6
	이성문제	4	1.2	13	4.0	21	8	2	.8	6	2.4	10	9

	원가족 갈등	24	7.1	30	9.3	78	5	10	3.9	20	7.9	40	5
	기타	9	2.7	5	1.5	23	7	4	1.6	8	3.2	16	7
	합계	336	100	323	100			258	100	252	100		

4) 그룹홈 생활의 장점

그룹홈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종사자가 생각하는 그룹홈 생활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원가족의 폭력으로부터 차단되는 것(25.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주거 공간이 확보되는 것(22.6%),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22.4%)으로 응답하였다. 2순위에서는 식사/주거 공간이 확보되는 것과 교육기회가 많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표 3-10〉 그룹홈 종사자가 생각하는 그룹홈 생활의 장점

		2017						2014					
항목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룹홈 생활 장점	문화체험/여가 활동	36	10.6	60	17.8	132	3	34	12.9	37	14.0	105	4
	입소자끼리의 우애	4	1.1	6	1.8	14	7	4	1.5	9	3.4	17	8
	관심/사랑 받음	76	22.4	49	14.5	201	2	81	30.7	36	13.6	198	1
	역할모델만남	18	5.3	21	6.2	57	6	22	8.3	13	4.9	57	6
	장래희망생김	17	5.0	39	11.5	73	5	18	6.8	43	16.2	79	5
	식사/주거 공간	77	22.6	68	20.1	222	1	19	7.2	18	6.8	56	7
	원가족의 폭력 차단	86	25.3	29	8.6	201	2	61	23.1	37	14.0	159	2
	교육기회 많음	24	7.1	61	18.0	109	4	25	9.5	65	24.6	115	3
	기타	2	0.6	5	1.5	9	8	-	-	6	2.3	6	9
	합계	340	100	338	100			264	100	258	100		

5) 그룹홈 생활의 어려운 점

그룹홈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 운영자와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해 보았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인지한 아동들의 그룹홈 생활의 어려운 점은 부모나 친척을 그리워하는 것(30.4%)과 입소 아동의 집단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26.2%)였으며, 입소 아동들은 집단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35.3%)를 그룹홈 생활의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하였고 2위로는 부모나 친척을 그리워하는 것(23.9%)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과 입소아동의 응답에서 ‘입소 아동의 집단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1, 2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그룹홈 내에서 입소 아동들이 겪는 스트레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계속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사실은 그룹홈이 더 가정화하고 더 개별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룹홈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아동들이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사회 적응력 등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동들이 기관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학교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두려움을 갖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입소 아동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 고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소 초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초기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이나 마니또, 짝짓기(peer-pairing) 프로그램 등으로 해소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칭찬 릴레이, 감사일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 아동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결핍과 외로움의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표 3-11〉 그룹홈 생활 힘든 점 비교조사, 운영자와 입소 아동청소년

항목		2017						2014					
		1순위		2순위		종합 점 수	종합 순 위	1순위		2순위		종합 점 수	종합 순 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운영자가 생각하는 그룹홈 생활 힘든 점	집단생활 스트레스	88	26.2	51	15.9	227	3	51	19.8	45	18.0	147	3
	부모/친척 그리움	102	30.4	74	23.0	278	1	86	33.3	54	21.6	226	1
	교사들의	10	3.0	11	3.4	31	6	-	-	6	2.4	6	10

	꾸지람												
	입소자들의 괴롭힘	4	1.2	7	2.2	15	9	2	.8	3	1.2	7	9
	그룹홈 적응	13	3.9	17	5.3	43	5	12	4.7	15	6.0	39	5
	그룹홈 내의 대인관계	-	-	-	-	-	-	9	3.5	16	6.4	34	6
	외부인들 놀림/무시	23	6.9	36	11.2	82	4	19	7.4	26	10.4	64	4
	자립/진로 불안	85	25.4	101	31.5	271	2	68	26.4	65	26.0	201	2
	고민상담부재	5	1.5	16	5.0	26	7	4	1.6	14	5.6	22	7
	기타	5	1.5	8	2.5	18	8	7	2.7	6	2.4	20	8
	합계	335	100	321	100			251	97.5	244	97.6		
항목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1순위		2순위		총 합 점 수	총 합 순 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그룹홈 생활 힘든 점	집단생활 스트레스	199	35.3	94	21.9	492	1	203	42.6	104	29.1	510	1
	부모/친척 그리움	135	23.9	83	19.4	353	2	133	27.9	61	17.1	327	2
	교사들의 꾸지람	18	3.2	35	8.2	71	7	8	1.7	16	4.5	32	9
	입소자들의 괴롭힘	13	2.3	12	2.8	38	9	7	1.5	8	2.2	22	10
	그룹홈 적응	25	4.4	47	11	97	5	18	3.8	24	6.7	60	7
	그룹홈 내의 대인관계	-	-	-	-	-	-	13	2.7	39	11.0	65	6
	외부인들 놀림/무시	37	6.6	55	12.9	129	4	32	6.7	32	9.0	96	3
	자립/진로 불안	21	3.7	15	3.5	57	8	16	3.4	13	3.6	45	8
	고민상담부재	20	3.6	41	9.6	81	6	18	3.8	32	9.0	68	5
	기타	96	17	46	10.7	238	3	28	5.9	28	7.8	84	4
	합계	564	100	428	100			476	100	357	100		

6) 퇴소아동 지원서비스 사항

그룹홈에서 퇴소 시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대략 주택비용, 자립지원금, 학비, 직업훈련, 취업, 상담, 지속적 관계 제공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운영자 자신의 평가를 조사해 보았다.

첫째, 주택비용 제공 부문에 있어서는 못함과 전혀 못함이 13%를 차지하고 있고 87% 정도는 매우 잘하거나 잘함,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매우 잘하거나 잘함, 보통이 70.3%를 차지하였던 2014년 실태조사 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에서 지급하는 시설퇴소아동 1인당 300~500만원의 자립지원정착금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는 주택을 얻을 보증금조차 되지 않는 적은 비용이다. 따라서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정에 맞는 제도와 지원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비 지원 부분은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64.4%, 보통이 27.8%이며 7.9%만이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입소 아동청소년의 학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 지원 부분은 48.7%가 잘한다고 응답하였고, 39.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12.2%의 응답자가 못하거나 전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87.8% 정도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취업 지원 부분 역시 85.9%의 응답자가 잘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상담의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91% 정도가 매우 잘 하거나 잘 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관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95.4% 정도의 응답자가 잘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유형의 시설들 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표3-12〉 퇴소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2017		2014	
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택비용	매우 잘함	78	32.8	39	17.8
	잘함	74	31.1	48	21.9
	보통	55	23.1	67	30.6
	못함	22	9.2	48	21.9
	전혀 못함	9	3.8	17	7.8

	합계	238	100	219	100
자립지원금	매우 잘함	82	34.9	43	19.4
	잘함	84	35.7	75	33.8
	보통	56	23.8	69	31.1
	못함	6	2.6	26	11.7
	전혀 못함	7	3	9	4.1
	합계	235	100	222	100
학비	매우 잘함	68	29.6	34	15.5
	잘함	80	34.8	86	39.1
	보통	64	27.8	64	29.1
	못함	13	5.7	29	13.2
	전혀 못함	5	2.2	7	3.2
	합계	230	100	220	100
직업훈련	매우 잘함	22	9.6	22	10.3
	잘함	90	39.1	76	35.7
	보통	90	39.1	72	33.8
	못함	21	9.1	38	17.8
	전혀 못함	7	3.1	5	2.3
	합계	230	100	213	100
취업	매우 잘함	27	12.0	23	10.7
	잘함	74	32.7	61	28.5
	보통	93	41.2	84	39.3
	못함	24	10.6	38	17.8
	전혀 못함	8	3.5	8	3.7
	합계	226	100	214	100
상담	매우 잘함	61	26.0	60	26.5
	잘함	106	45.3	115	50.9
	보통	46	19.7	40	17.7
	못함	17	7.3	8	3.5

	전혀 못함	4	1.7	3	1.3
	합계	234	100	226	100
지속적 관계	매우 잘함	84	35.3	66	29.3
	잘함	96	40.3	104	46.2
	보통	47	19.8	42	18.7
	못함	7	2.9	11	4.9
	전혀 못함	4	1.7	2	.9
	합계	238	100	225	100

7)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소결

그룹홈 아동청소년에 대해 살펴보면, 남자아동(55%)이 여자아동(45%)보다 다소 많았고 초등학생(29.5%), 중학생(24.5%), 고등학생(23.4%), 그리고 기타(6.6%)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영되는 중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현황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인성지도, 학습지도가 중점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점교육은 생활예절, 특기적성, 그리고 인권교육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발달상의 단계에서 볼 때 생활습관과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주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구축된 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의 성취와 발달적 측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지언·정익중 외, 2014). 생활상의 문제 중 진로 및 자립 문제가 이번 년도의 조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중점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인성지도, 학습지도와 더불어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강화되어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점교육 내용을 보면 인권교육이 3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34%, 교사는 24%, 부모는 77%가 ‘인권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청소년들은 빈곤 및 실직, 학대, 미혼모 등에 의해 발생한 요보호아동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해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본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원가족들과 그룹홈의 종사자들, 교사들도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시급하며, 이

를 위해서는 그룹홈 내 운영자들,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 시간을 제공하거나, 정부나 정책기관의 관계자들과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자립 후 실질적 생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욕구

2017년 본 조사에 참여한 그룹홈에서의 시설종사자수는 시설 당 3명이 71.7%로 가장 많았고, 2명(19.5%), 4명(5.6%)의 순이었다. 이는 2014년 당시 2명(75.7%), 3명(14.4%), 1명(8.0%) 순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상근자는 2014년 2명이 61.3%였으나 2017년에는 3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비상근자는 2014년 1명이 92.0%였으나 2017년 0명이 48.7%로 가장 많고 1명과 2명이 28기관(24.3%)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표3-13〉 그룹홈 총 종사자 수 및 상근, 비상근 수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총 종사자 수	1명	9	2.7	21	8.0
	2명	66	19.5	199	75.7
	3명	243	71.7	38	14.4
	4명	19	5.6	2	0.8
	5명	1	0.3	1	0.4
	6명	0	0.0	1	0.4
	7명	1	0.3	1	0.4
	합계	339	100.0	263	100.0
상근	0명	3	0.9	4	1.5
	1명	91	27.2	89	34.4
	2명	79	23.7	159	61.3
	3명	155	46.4	9	3.5
	4명	6	1.8	1	0.4
	6명	0	0	1	0.4
	합계	334	100.0	259	100.0
비상근	0명	56	48.7	0	0
	1명	28	24.3	80	92.0
	2명	28	24.3	6	6.9
	3명	3	2.6	0	0
	4명	0	0	1	1.1
	합계	115	100.0	87	100.0

1) 시설장의 일반적인 현황 및 욕구

가. 일반적인 현황: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3-14〉을 통해 보듯이 시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 시설장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20.0%, 여자 80.0%로 여성의 비율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연령은 50대가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0대가 23.8%, 30대가 12.5%, 60대가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 졸업 이상이 96.5%로 2014년의 96.5%와 똑같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9.7%로 미혼 27.0%로 기혼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88.7%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개신교가 56.8%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톨릭(26.0%), 불교(5.6%) 순이었다. 시설장의 사회복지 근무 연수는 6-10년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현 시설에서의 근무연수는 6-10년이 42.5%로 가장 많았다.

근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2014-2017년을 비교해보면, 2014년에는 21.3%가 매우만족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2017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69.8%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2014년 불만족한다는 응답률 78.7%였으나 2017년에는 30.2%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 근무연수는 2014년 6-10년이 42.9%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에는 6-10년이 41.4%, 11-20년이 42.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 시설 근무연수는 2014년 2-5년이 46.8%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6-10년 근무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7년으로 조사연도 변화에 따른 응답자 변화로 생각된다.

〈표 3-14〉 시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단위 : 명, %)

항목		2017		2014	
		빈도	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68	20.0	58	22.0
	여	272	80.0	20.6	78.0
	합계	340	100.0	78.6	100.0
연령	20대	4	1.2	8	3.1
	30대	42	12.5	39	15.4
	40대	80	23.8	78	30.7

	50대	168	50.0	103	40.6
	60대 이상	42	12.5	26	10.2
	합계	336	100.0	254	100.0
학력	고졸	12	3.5	9	3.5
	대졸	236	69.4	179	69.4
	석사 졸	74	21.8	62	24.0
	박사과정 이상	18	5.3	8	3.1
	합계	340	100.0	258	100.0
종교	가톨릭	88	26.0	69	26.1
	개신교	192	56.8	153	58.0
	불교	19	5.6	12	4.5
	원불교	1	0.3	1	0.4
	종교 없음	35	10.4	27	10.2
	기타종교	3	0.9	2	0.8
	합계	338	100.0	264	100.0
결혼여부	기혼	235	69.7	169	65.0
	미혼	91	27.0	80	30.8
	기타	11	3.3	11	4.2
	합계	337	100.0	260	100.0
근무만족도	매우 만족	27	8.2	4	1.5
	만족	204	61.6	52	19.8
	불만족	83	25.1	102	38.8
	매우 불만족	17	5.1	105	39.9
	합계	331	100.0	263	100.0
사회복지 근무연수	2년 이하	4	1.2	13	5.0
	3-5년	23	6.8	75	28.7
	6-10년	139	41.4	112	42.9
	11-20년	142	42.3	53	20.3
	21년 이상	28	8.3	8	3.1
	합계	336	100.0	261	100.0
현 시설근무 연수	1년 이하	40	11.8	29	10.9
	2-5년	105	31.0	124	46.8
	6-10년	139	41.0	86	32.5

	11-20년	50	14.7	24	9.1
	21년 이상	5	1.5	2	0.8
	합계	339	100.0	265	100.0

나. 일반적인 현황: 근무조건

<표3-15>는 시설장의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현황을 보여준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증가로 2017년 150-20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6.6%이다. 4대 보험 가입율도 2017년 97.0%로 2014년 보험가입율(91.0%)보다 약 6-7% 증가하여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6년 이후 인건비 등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설장들의 급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급여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만족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설장은 13.0%인 반면, 불만족·매우불만족으로 응답한 시설장은 전체의 87.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만족 14.1%, 불만족 85.8%)과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하고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일 평균 근로시간은 17시간 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이하가 35.5%, 11-16시간이 27.8%였다. 주 평균 근로일수는 일주일 중 7일 근무한다는 응답이 49.7%로 약 절반 가까운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 5일근무가 24.2%, 주 6일근무가 20.8%로 나타났다. 시설장들이 여전히 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 역시 근무만족도를 낮게 나타내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회변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그룹홈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3-15> 시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II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월 평균 급여	100만원 미만	3	0.9	19	8.0
	100-150만원 미만	14	4.4	38	16.0

	150-200만원 미만	186	58.1	150	63.0
	200만 원 이상	117	36.6	31	13.0
	합계	320	100.0	238	100.0
4대보험	가입	323	97.0	232	91.0
	미가입	10	3.0	23	9.0
	합계	333	100.0	255	100.0
급여 만족도	매우 만족	1	0.3	3	1.1
	만족	42	12.7	34	13.0
	불만족	190	57.2	96	36.8
	매우 불만족	99	29.8	128	49.0
	합계	332	100.0	261	100.0
일 평균근로시간	10시간 이하	116	35.5	58	22.0
	11-16시간	91	27.8	85	32.2
	17시간 이상	120	36.7	121	45.8
	합계	327	100.0	264	100.0
주 평균근로일수	1일	0	0.0	1	0.4
	2일	2	0.6	0	0
	3일	4	1.2	2	0.9
	4일	11	3.4	18	7.7
	5일	78	24.2	30	12.8
	6일	67	20.8	43	18.3
	7일	160	49.7	141	60
	합계	322	100.0	235	100.0

다. 일에 대한 어려움

<표3-16>은 시설장들이 인지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만족 및 소진에 대한 통계결과이다. 2017년 직무만족의 평균은 2.52(SD=.2983), 소진의 평균은 2.14(SD=.3952)로 최대값이 4점인 것을 생각해보면 둘 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2014년 직무만족의 평균이 2.50(SD=.3383), 소진의 평균이 2.15(SD=.3773)인 것과 비교해보면, 직무만

족은 2014년에 비해 2017년 소폭 상승했고 소진은 줄어들었다.

또한 직무만족과 소진을 비교해보면, 2014년, 2017년 모두 직무만족이 소진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즉, 시설장들은 업무에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많이 소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장들의 직무만족도는 더 높이고 소진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3-16〉 시설장의 직무만족 · 소진

항목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직무만족	341	2.52	.2983	263	2.50	.3383
소진	341	2.14	.3952	263	2.15	.3773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소진이 높음

라.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조사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자금 마련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1위)과 정부재정지원(2위), 운영자금 마련(3위)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여전히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으로는 그룹홈 주거 마련, 내부시설 등 물품 구입 지원,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 그룹홈에 올 수 있도록 인력지원, 인건비 지원, 종사자들의 인권, 정서지원 및 스트레스 완화 방안 마련, 지자체담당자의 그룹홈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표 3-17〉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	운영자금 마련	81	24.3	3	68	26.4	2
	전문 인력	50	15.0	7	45	17.4	3
	아동보호/지도개발	41	12.3	9	31	12.0	4

	종사자 처우 개선	300	89.8	1	95	36.8	1
	시설 증개축/이전	53	15.9	6	4	1.6	6
	시설 개보수	45	13.5	8	7	2.7	5
	후원관리/발굴	78	23.4	4	3	1.2	7
	정부의 행정지원	32	9.6	10	2	0.8	9
	정부의 재정지원	158	47.3	2	3	1.2	8
	아동입소/배치자율권	56	16.8	5	0	0	10
	기타	10	3.0	11	0	0	11

* 2014년 :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여 1순위 응답자료 제시함

* 2017년 :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3개를 선택하도록 함

2) 종사자의 일반적인 현황 및 욕구

가. 일반적인 현황: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표 3-18>과 같다. 먼저 2017년 성비를 살펴보면 여자가 83.3%, 남자가 16.7%로 앞서 살펴본 시설장과 같이 여성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을 보면 30대가 4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30.4%), 40대(27.8%)의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55.3%)과 미혼(40.9%)의 비율이 비슷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85.2%로 가장 많고, 대학원석사 졸업은 7.5%, 고등학교 졸업이 6.2%로 이 둘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64.6%,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30.0%로 전체응답자의 94.6%로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3.6%로 뒤를 이었다. 현 시설에서의 근무연수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근무기간은 1-3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1년 미만(20.1%), 3-5년 미만(12.5%)이었다. 2014년에 1년-3년 미만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근무자의 이직율이나 퇴사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03	16.7	40	15.2

	여	512	83.3	224	84.8
	합계	615	100.0	264	100.0
연령	20대	123	20.4	65	24.5
	30대	109	18.1		
	40대	172	28.5	54	20.4
	50대	188	31.2	92	34.7
	60대 이상	11	1.8	54	20.4
	합계	619	100.0	265	100.0
학력	고졸	38	6.2	27	10.3
	대졸	520	85.2	205	79.2
	석사 졸	46	7.5	24	9.3
	박사과정 이상	6	1.0	3	1.2
	합계	610	100.0	259	100.0
결혼여부	기혼	335	55.3	141	54.0
	미혼	248	40.9	113	43.3
	기타	23	3.8	7	2.7
	합계	606	100.0	261	100.0
전체 종사자 자격증	1급 사회복지사	183	30.0	22	13.9
	2급 사회복지사	395	64.6	64	40.5
	교사	6	1.0	3	1.9
	보육교사	22	3.6	8	5.1
	청소년지도사	-	-	35	22.2
	기타	5	0.8	26	16.5
	합계	611	100.0	158	100.0
현 시설근무 연수	1년 미만	119	20.1	2	0.9
	1-3년 미만	296	50.0	148	69.5
	3-5년 미만	74	12.5	54	25.4
	5년 이상	103	17.4	9	4.2
	합계	619	100.0	213	100.0

나. 일반적인 현황: 근무조건

〈표3-19〉은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현황을 보여준다. 월평균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이 79.0%로 가장 많았는데, 2014년 53.6%와 비교하면 150-200만원미만을 받는 근무자들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가입이 98.7%로 앞서 살펴본 시설장과 같이 종사자의 대부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종사자들의 81.3%가 근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4년 82.8%에 비해 다소 감소한 비율이나, 대체적으로 80.0% 이상의 높은 근무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급여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27.2%,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2.7%로 불만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의 일평균근로 시간은 2017년 9-17시간이 47.3%로 나타났는데, 2014년 8시간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73.9%로 많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그룹홈 종사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 평균근로 일수는 2017년에 주 5일 근무가 45.5%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는 2014년 주6일(31.0%)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던 것과 비교된다. 즉, 일평균 근로시간은 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일주일에 근무하는 일수는 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3-19〉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II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월평균 급여	100만 원 미만	1	0.2	38	14.3
	100-150만원 미만	57	10.0	78	29.4
	150-200만원 미만	451	79.0	142	53.6
	200만 원 이상	62	10.9	7	2.6
	합계	571	100.0	265	100.0
4대 보험	가입	589	98.7	239	94.5
	미가입	8	1.3	14	5.5
	합계	597	100.0	253	100.0
근무만족도	매우 만족	74	12.4	41	16.0
	만족	412	68.9	171	66.8
	불만족	99	16.6	40	15.6

	매우 불만족	13	2.2	4	1.6
	합계	598	100.0	256	100.0
급여만족도	매우 만족	15	2.5	5	2.0
	만족	146	24.7	81	32.3
	불만족	308	52.2	123	49.0
	매우 불만족	121	20.5	42	16.7
	합계	1,067	100.0	251	100.0
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이하	208	36.0	181	73.9
	9-17시간	273	47.3	4	1.6
	18시간 이상	96	16.6	60	24.5
	합계	577	100.0	245	100.0
주 평균 근로일수	1일	0	0.0	1	0.4
	2일	4	0.7	0	0
	3일	89	15.7	3	1.2
	4일	72	12.7	33	13.6
	5일	258	45.5	74	30.6
	6일	83	14.6	75	31.0
	7일	61	10.8	56	23.1
	합계	567	100.0	242	100.0

다. 일에 대한 어려움

〈표3-20〉는 종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만족 및 소진에 대한 통계결과이다. 2017년 직무만족의 평균은 2.65(SD=.3365), 소진의 평균은 2.17(SD=.3940)로 최대값이 4점인 것을 생각해볼 때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2014년 직무만족의 평균이 2.67(SD=.3503), 소진의 평균이 2.15(SD=.3489)인 것과 비교해보면, 직무만족은 2014년에 비해 2017년 소폭 하락했고, 소진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시설장들의 일에 대한 직무만족·소진’에 대한 통계결과와 반대 결과로 나타나 주목된다. 즉, 지난 3년 사이에 시설장들은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소진이 줄어든 반면, 종사자들은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소진이 증가한 것이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소진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3-20〉 종사자의 직무만족·소진

항목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직무만족	615	2.65	.3365	261	2.67	.3503
소진	607	2.17	.3940	261	2.15	.3489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소진이 높음

라.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을 1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표3-21), 그 결과 2017년 보수체계의 개선(70.7%)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2014년에도 1순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된 것으로 당시에 응답자의 39.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그 필요성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2017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재충전의 기회(11.3%), 근무시간 개선(8.3%)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사자의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재충전의 기회 부족과 업무과중에 의한 종사자의 소진이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전문성 강화 5.3%와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1.8%, 슈퍼비전 제공 0.9% 등 종사자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업무 과중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2017년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인상(사회복지사 호봉제에 맞도록 임금체계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강도, 노동시간 완화, 종사자 수 충원, 3교대로 개편,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마련, 그룹홈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표3-21〉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순위	빈도	백분율	순위
가장 시급한 상황	근무시간 개선	36	8.3	3	78	30.4	2
	보수 체계의 개선	307	70.7	1	101	39.3	1
	전문성 강화	23	5.3	4	30	11.7	3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8	1.8	5	6	2.3	6
	슈퍼비전 제공	4	0.9	7	8	3.1	5
	재충전의 기회	49	11.3	2	32	12.5	4
	기타	7	1.6	6	2	0.8	7

* 시급한 사항을 하나 선택하도록 함.

3) 그룹홈 운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 검증

그룹홈 운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7년도에는 성별, 결혼여부, 학력, 사회복지근무연수, 소재지, 국가보조금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일평균근로시간과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그룹홈 운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고 운영주체가 기타인 경우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조건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운영자의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68	2.599	.311	-1.380	58	2.51	.472	1.345
	여성	270	2.681	.466		205	2.42	.444	
	N	338				263			
결혼여부	기혼	233	2.699	.476	1.915	169	2.420	.458	-.646
	미혼	91	2.594	.343		79	2.461	.459	
	N	324				248			
학력	고졸	12	2.539	.359	.525	9	2.568	.417	.509
	대졸	234	2.672	.490		178	2.426	.421	
	대학원이상	92	2.672	.288		70	2.440	.532	
	N	338				257			
일평균 근로시간	10시간미만	75	2.526	.327	-3.218*	34	2.750	.538	-4.67
	10시간 이상	250	2.712	.466	*	206	2.386	.399	1***
	N	325				240			
사회복지 근무연수	10년 미만	131	2.693	.495	.845	173	2.441	.443	-.075
	10년 이상	206	2.652	.403		88	2.437	.471	
	N	337				261			

소재지	대도시	136	2.691	.467	1.097	114	2.395	.394	2.197
	중·소도시	137	2.680	.456		98	2.433	.437	
	읍·면 소재지	67	2.567	.337		51	2.566	.569	
	N	340				263			
운영주체	개인	233	2.713	.475	2.862**	176	2.377	.456	3.596
	기타	108	2.568	.330		86	2.585	.406	***
	N	341				262			
국고보조 금	지원받음	322	2.667	.449	-.061	237	2.444	.449	.228
	지원받지 않음	19	2.673	.217		26	2.423	.478	
	N	341				263			

4) 그룹홈 운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검증

그룹홈 운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소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7년도에는 성별, 결혼여부, 학력, 일평균근로 시간, 소재지, 운영주체, 국가보조금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그룹홈 운영자의 소진차이로 나타난 분석결과에서 어느 하나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 달리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근무연수에 따라 운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3-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운영자의 소진 차이

구분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68	2.918	0.402	1.343	58	2.51	.472	1.345
	여성	270	2.846	0.393		205	2.42	.444	
	N		338				263		
결혼여부	기혼	233	2.853	0.384	-0.78	169	2.420	.458	-.646
	미혼	91	2.857	0.436		79	2.461	.459	
	N		324				248		
학력	고졸	12	2.949	0.395	1.394	9	2.568	.417	.509
	대졸	234	2.836	0.390		178	2.426	.421	
	대학원이상	92	2.907	0.411		70	2.440	.532	
	N		338				257		

일평균 근로시간	10시간미만	75	2.868	0.413	.317	34	2.750	.538	-4.67 1***
	10시간 이상	250	2.851	0.386		206	2.386	.399	
	N	325				240			
사회복지 근무연수	10년 미만	131	2.789	0.422	-2.52 2*	173	2.441	.443	-.075
	10년 이상	206	2.899	0.371		88	2.437	.471	
	N	337				261			
소재지	대도시	136	2.844	0.425	1.214	114	2.395	.394	2.197
	중·소도시	137	2.838	0.363		98	2.433	.437	
	읍·면 소재지	67	2.924	0.397		51	2.566	.569	
	N	340				263			
운영주체	개인	233	2.845	0.393	-.874	176	2.377	.456	3.596 ***
	기타	108	2.885	0.401		86	2.585	.406	
	N	341				262			
국고보조 금	지원받음	322	2.852	0.400	-1.05 6	237	2.444	.449	.228
	지원받지 않음	19	2.950	0.296		26	2.423	.478	
	N	341				263			

p<.01, *p<.001

4) 그룹홈 운영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룹홈 운영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14년도에 직무만족도와 시설근무 년 수가 낮으면 소진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에 반해 2017년도에는 직무만족도가 낮으면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도 그룹홈 운영자의 소진의 차이에는 운영자의 시설근무 년 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24〉 운영자 소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2017 (N=309)			2014 (N=237)		
	B	β	t	B	β	t
상수	3.658		15.410***	4.141		14.951***
일평균 근로시간	.038	.082	1.463	-.068	-.095	-.008
직무만족도	-.303	-.338	-6.128***	-.546	-.423	-1.566***
성별	-.031	-.031	-.578	.135	.106	1.853
학력 대졸	-.083	-.095	-.679	-.117	-.105	-.915
학력 대학원 이상	-.019	-.022	-.154	-.058	-.049	-.422
결혼여부	.042	.047	.873	-.055	-.051	-.913
4대 보험 가입여부	-.069	-.039	-.708	.145	.085	1.507
시설근무 년 수	.034	.075	1.347	-.075	-.118	-2.040*
F	6.130***			11.876***		
R ²	.141			.294		
Adj. R ²	.118			.269		

*p<.05, ***p<.001

※기준변수: 성별-여성, 학력-고졸, 결혼여부-미혼, 4대보험 가입여부-미가입

5) 그룹홈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검증

〈표 3-2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종사자의 소진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종사자 소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력, 결혼여부, 현 시설 근무 년 수, 일평균 근로시간을 t검증, ANOVA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도에는 학력에 따른 집단별 소진에서만 유일한 차이가 존재하여 종사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2017년도에는 집단 별 종사자의 소진은 학력, 결혼여부, 현 시설 근무 년 수, 일평균 근로시간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인 경우 소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종사자의 소진 차이

구분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103	2.932	0.448	2.674**	40	2.098	.480	-1.724
	여자	503	2.806	0.379		221	2.236	.463	
	N	606				261			
학력	고졸	38	2.854	0.317	.082	27	2.158	.448	3.266*
	대졸	520	2.830	0.396		202	2.200	.435	
	대학원 이상	52	2.822	0.418		27	2.433	.662	
	N	610				256			
결혼여부	기혼	331	2.853	0.394	1.205	139	2.183	.434	-1.095
	미혼	243	2.813	0.390		112	2.249	.519	
	N	574				251			
근무 연수	3년 이하	432	2.846	0.400	1.803	99	2.203	.491	.301
	3년 이상	175	2.782	0.375		153	2.222	.460	
	N	607				252			
일평균 근무시간	8시간 이하	12	2.975	0.422	1.309	179	2.197	.462	1.124
	8시간 이상	560	2.824	0.396		64	2.275	.512	
	N	572				243			

*p<.05, **p<.01

6) 종사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사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14년도 종사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종사자들은 소진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2017년도에는 직무 만족도가 낮을 때, 종사자가 남자일 때, 기혼일 때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7> 종사자 소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2017 (N=532)			2014 (N=243)		
	B	β	t	B	β	t
상수	4.649		24.265***	4.864		6.147***
일평균 근로시간	-.014	-.026	-.693	-.015	-.020	-.008

직무만족도	-.640	-.556	-15.113** *	-.546	-.423	-1.799
성별	.085	.084	2.294*	-.451	-.303	-1.140
학력 대졸	.017	.016	.295	.724	-.396	1.476
학력 대학원 이상	.044	.032	.602	.752	-.591	2.288*
결혼여부	.059	.074	2.007*	-.230	-.155	-.835
4대 보험 가입여부	-.222	-.055	-1.532	-.055	-.048	-.172
시설근무년수	-.028	-.033	-.904	-.078	-.083	-.439
F	1.240			2.304		
R ²	.019			.535		
Adj. R ²	.004			.303		

*p<.05, ***p<.001

※기준변수: 성별-여성, 학력-고졸, 결혼여부-미혼, 4대보험 가입여부-미가입

Ⅳ.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분석결과

1.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일반 현황

1)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4-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2014년에 남자 아동 51.4%, 여자아동 48.6%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던 것에 비하여 2017년에는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이 각각 50%로 비슷한 성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학령기 아동이 3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학령기 아동이 33.9%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38.8%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초등학생과 성인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거주기간을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21.2%,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6%, 1년 미만이 12.20%, 10년 이상이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 1년-3년 미만이 29.9%로 가장 많고, 5년-10년 미만이 28.8%, 3년-5년 미만이 27.3%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2017년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자가 2014년에는 1.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2%로 많은 증가율을 보여 장기 거주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그룹홈 아동의 일반적인 현황 (단위: 명, %)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11	50.0	253	51.4
	여자	310	50.0	239	48.6
	합계	621	100	492	100
학교급	성인	33	5.3	16	3.2
	고등학생	246	39.4	183	37.3
	중학생	212	33.9	189	38.5
	초등학생	134	21.4	103	21
	합계	625	100	491	100
그룹홈 생활기 간	1년 미만	74	12.2	58	12.7
	1년 - 3년 미만	129	21.2	136	29.9

	3년 - 5년 미만	119	19.6	124	27.3
	5년 - 10년 미만	213	35	131	28.8
	10년 이상	73	12	6	1.3
	합계	608	100	455	100.0

2. 공동생활가정 입소 전 아동청소년의 양육 실태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입소 전 동거인, 현재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척, 입소 전 부모님 상황, 입소 전 학대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대부분 빈곤과 가정의 해체로 인해 입소하지만 점점 학대의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는 견해와 미국의 그룹홈의 경우 학대로 인한 입소가 많다는 점 등 비교 분석을 위해 조사하게 되었다.

1) 입소 전 동거인

그룹홈 입소 전 동거인 조사에서는 복수응답으로 진행하여 전체 응답이 1,036건이 되었다. 입소 전 아버지와 살았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 2005년, 2008년, 2014년 조사에서도 아버지와 살았다는 응답이 각각 46.8%, 58.3%, 29.5%, 30.9%로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27.7%로 친아버지와 살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친어머니와 살았다는 응답이 16.8%로 뒤를 이었다. 여전히 부모의 양육의 부담이나 양육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입소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타 시설에 살다 들어온 경우는 15.6%, 형제/자매와 함께 살았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났다. 친아버지 혹은 친어머니와 살았다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줄어들고 타 시설이나 형제자매와 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2〉 입소 전 동거인 (단위: 명, %)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입소 전 동거인	친부	287	27.7	245	30.9
	친모	174	16.8	129	15.9
	친조부/친조모	91	8.8	84	10.6
	외조부/외조모	35	3.4	26	3.3
	외삼촌/이모	16	1.5	18	2.3
	삼촌/고모	36	3.5	32	4.1

	형제/자매	141	13.6	100	12.6
	계모/계부	54	5.2	33	4.2
	타 시설	162	15.6	95	12.0
	기타	40	3.9	32	4.1
합계		1,036	100.0	794	100.0

2) 현재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척

그룹홈 입소 아동의 현재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척의 수를 조사하였으며 복수로 응답하게 하여 전체 합계가 1,997건이 되었다. 조사 결과, 친모가 1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부 18.9%, 형제/자매 15.0%의 순이었다. 2014년에 현재 생존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한 결과 친부가 2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모가 17.6%로 나타난 것과는 반대로 2017년에는 친모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3〉 현재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척 (단위: 명, %)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재 알고 있는 가족 및 친척 ²⁾	친부	377	18.9	336	20.5
	친모	386	19.3	289	17.6
	친조부/친조모	197	9.9	155	9.5
	외조부/외조모	165	8.3	132	8.1
	외삼촌/이모	161	8.1	156	9.5
	삼촌/고모	208	10.4	199	12.1
	형제/자매	300	15.0	253	15.5
	계모/계부	89	4.4	65	4.0
	타 시설	66	3.3	40	2.4
	기타	48	2.4	13	0.8
합계		1,997	100	1,638	100

2) 2014년에는 현재 생존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함.

3) 입소 전 상황(부모님 상태)

그룹홈 입소 전 부모님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18.6%로 나타나 2014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이나 이웃집에서 거주 13.1%, 친형제와 떨어져서 거주 8.7%, 가출 7.8%, 이 외에도 부모님의 실직 7.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렵고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입소 전 상황(부모님 상태)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 상황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이웃집에 거주	278	13.1	242	13.8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이웃집 전전하며 거주	156	7.3	158	9.0
	친형제와 떨어져서 거주	186	8.7	137	7.8
	부모님 중 한명 사망	128	6.0	111	6.4
	부모님 모두 사망	40	1.9	31	1.8
	이혼(별거)	396	18.6	312	17.8
	실직	164	7.7	139	7.9
	사업실패, 카드빚, 경제적 빈곤	141	6.6	125	7.1
	교도소 수감	63	3.0	48	2.7
	알코올 중독	148	7.0	132	7.6
	가출	166	7.8	127	7.2
	질병	89	4.2	71	4.1
	약물 중독	23	1.1	18	1.0
	아버지의 어머니 구타	147	7.0	102	5.8
합계		2,125	100	1,753	100.0

4) 그룹홈 입소 전 학대받은 경험

입소 전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68.0%가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 입소 전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6.8%였던 것에 비하여 입소 전 학대 경험이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입소 전 학대받은 경험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룹홈 입소 전 학대받은 경험	있다	413	68.0	131	36.8
	없다	194	32.0	225	63.2
	합계	607	100.0	356	100.0

(1) 입소 전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

학대경험을 크게 보호자의 구타, 성폭력, 흥기사용, 과도한 꾸짖음과 같은 언어·신체폭력과 물리적, 의료적, 공교육, 윤리교육, 학교생활의 방임 및 부적절한 의식주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14년부터 물리적, 의료적, 학교생활 방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먼저, 보호자의 구타는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58.9%로 나타났고, 구타가 있는 경우 일주일에 1-2번이 16.9%, 한 달에 1-2번은 9.4%, 1년에 1-2번은 8.5%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93.8%로 가장 많았고, 있었다는 응답은 1년에 1-2번과 일주일에 1-2번이 각각 2.2%, 한 달에 1-2번이 1.2%로 조사되었다.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 달에 1-2번이나 일주일에 1-2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흥기를 사용한 폭력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6.5%로 가장 높았고 1년에 1-2번이 4.8%, 일주일에 1-2번은 4.2%로 나타나 2014년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보호자의 과도한 꾸짖음의 경우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93.8%, 있었다는 응답은 일주일에 1-2번과 1년에 1-2번이 각각 2.2%, 한 달에 1-2번은 1.2%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일주일에 1-2번 과도한 꾸짖음을 하는 경우가 5%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방임을 묻는 질문에서는 집을 비우거나 아동을 혼자 집에 두는 물리적 방임의 경우 45.3% 정도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방임했다는 응답은 25.7%로 뒤를 이어 2014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적 방임의 경우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0.6%로 2014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 외에 1년에 1-2번 방임한다는 응답이 10.2%, 일주일에 1-2이라는 응답이 3.0% 등 의료적 방임을 하는 경우가 모두 증가하였다. 공교육 방임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3.0%로 가장 많았고, 윤리교육 방임에 있어서도 역시 방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1.7%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방임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71.1%였으며, 10.0%가 일주일에 1-2번 방임한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방임이 ‘전혀 없었음’의 비율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공교육이나 윤리교육 등 교육 측면의 방임에서 아동을 방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아동을 혼자 집에 두는 물리적 방임이나 의료적 방임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식주를 얼마나 부적절하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72.4%가 ‘전혀 없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일주일에 1-2번 12.7%의 정도로 나타났다.

〈표 4-6〉 입소 전 보호자의 학대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구타	전혀 없었음	355	58.9	273	56.3
	1년에1-2번	51	8.5	70	14.4
	2-3개월에1-2번	38	6.3	22	4.5
	한 달에1-2번	57	9.4	41	8.5
	일주일에1-2번	102	16.9	79	16.3
	합계	603	100.0	485	100.0
보호자의 성폭력	전혀 없었음	563	93.8	458	95.0
	1년에1-2번	13	2.2	14	2.9
	2-3개월에1-2번	4	0.6	4	0.8
	한 달에1-2번	7	1.2	2	0.4
	일주일에1-2번	13	2.2	4	0.8
	합계	600	100.0	482	100.0
보호자의 흥기사용	전혀 없었음	521	86.5	414	85.7
	1년에1-2번	29	4.8	27	5.6
	2-3개월에1-2번	14	2.3	11	2.3
	한 달에1-2번	13	2.2	12	2.5
	일주일에1-2번	25	4.2	19	3.9
	합계	602	100.0	483	100.0
보호자의 과도한 꾸짖음	전혀 없었음	397	66.2	321	66.2
	1년에1-2번	47	7.8	48	9.9
	2-3개월에1-2번	21	3.5	31	6.4
	한 달에1-2번	44	7.3	37	7.6
	일주일에1-2번	91	15.2	48	9.9
	합계	600	100.0	485	100.0

물리적 방임	전혀 없었음	273	45.3	224	46.6
	1년에1-2번	63	10.5	49	10.2
	2-3개월에1-2번	45	7.5	38	7.9
	한 달에1-2번	66	11.0	54	11.2
	일주일에1-2번	155	25.7	116	24.1
	합계	602	100.0	481	100.0
의료적 방임	전혀 없었음	483	80.6	420	87.0
	1년에1-2번	61	10.2	32	6.6
	2-3개월에1-2번	20	3.4	14	2.9
	한 달에1-2번	17	2.8	10	2.1
	일주일에1-2번	18	3.0	7	1.4
	합계	599	100.0	483	100.0
공교육에서의 방임	전혀 없었음	492	83.0	395	82.5
	1년에1-2번	30	5.1	27	5.6
	2-3개월에1-2번	21	3.5	13	2.7
	한 달에1-2번	18	3.0	8	1.7
	일주일에1-2번	32	5.4	36	7.5
	합계	593	100.0	479	100.0
윤리교육에 있어서의 방임	전혀 없었음	541	91.7	439	91.8
	1년에1-2번	21	3.6	14	2.9
	2-3개월에1-2번	2	0.3	7	1.5
	한 달에1-2번	10	1.7	7	1.5
	일주일에1-2번	16	2.7	11	2.3
	합계	590	100.0	478	100.0
학교생활에 대한 방임	전혀 없었음	421	71.1	349	72.6
	1년에1-2번	49	8.3	41	8.5
	2-3개월에1-2번	31	5.2	24	5.0
	한 달에1-2번	32	5.4	21	4.4
	일주일에1-2번	59	10.0	46	9.6
	합계	592	100.0	481	100.0

부적절한 의식주	전혀 없었음	434	72.4	347	72.0
	1년에1-2번	33	5.5	39	8.1
	2-3개월에1-2번	19	3.2	25	5.2
	한 달에1-2번	37	6.2	19	3.9
	일주일에1-2번	76	12.7	51	10.6
	합계	599	100.0	482	10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정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t=-3.516$, $p<0.001$)과 거주기간($F=2.744$,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서 차이가 없던 2014년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령(학력)에서는 중학생에 해당되는 만13세 이상 15세 이하가 합계 16.76점($SD=8.02$)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학대를 가장 자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만19세 이상(성인/대학생)에서 합계 16.75점($SD=9.24$)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보고에서 만 19세 이상이 학대를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한편, 2014년에 고등학생 다음으로 학대를 많이 받았던 초등학생 및 미취학에 해당하는 만12세 이하가 2017년에는 합계 16.19점($SD=6.99$)으로 가장 학대를 적게 받았다고 하였다.

거주기간에 따른 학대정도를 살펴보면, 2년 1개월 이상 4년 미만에서 합계 17.68점($SD=8.13$)으로 학대를 가장 자주 받고, 8년 1개월 이상에서 합계 14.78($SD=7.84$)로 학대를 받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검정을 통해 거주기간 별 학대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744$, $p<0.05$), 2년 이하(a), 2년 1개월 이상 4년 이하(b)에 따른 학대정도는 8년 1개월 이상(e)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대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2014년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1방 인원은 2명이 합계 17.14점($SD=8.50$)으로 학대를 가장 자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대정도 차이

구분	2017				2014			
	빈도	합계	표준편차	t/F	빈도	합계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0 1	15. 44	6.9 2	-3. 516 ***	24 0	16. 25	7.2 3	.289
	여자	29 8	17. 66	8.4 5		22 9	16. 07	6.9 0	
연령 (학력)	만19세 이상 (성인/대학 생)	32	16. 75	9.2 4	.14 7	16	14. 38	4.4 9	.941
	만16세-18 세 (고등학생)	23 6	16. 58	8.0 3		17 6	16. 69	7.3 1	
	만15세-13 세 (중학생)	20 5	16. 76	8.0 2		17 6	15. 71	6.9 1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미취학)	13 0	16. 19	6.9 9		10 3	16. 41	7.2 8	
거주 기간	2년 이하 (a)	15 1	17. 55	7.6 2	2.7 44* (a, b>e)	15 1	18. 13	7.8 1	5.47 7** * (a>d ,e)
	2년1개월-4 년 (b)	13 2	17. 68	8.1 3		12 6	15. 87	6.1 7	
	4년1개월-6 년 (c)	11 5	16. 09	7.8 0		90	15. 77	6.3 5	
	6년1개월-8 년 (d)	81	16. 48	7.7 7		56	14. 36	6.8 0	
	8년1개월 이상 (e)	10 7	14. 78	7.8 4		48	13. 79	7.2 6	
1방 인원	1명	72	15. 97	7.1 3	.87 6	46	17. 04	8.5 1	.518
	2명	29 9	17. 14	8.5 0		22 5	16. 30	7.2 0	
	3명	18 5	15. 89	7.2 2		13 8	16. 31	6.9 9	
	4명	34	16. 67	7.4 2		38	14. 84	5.5 4	
	5명이상	9	15. 77	3.9 6		13	16. 46	6.7 7	

*p<.05, **p<.01, ***p<.001

3.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상황

그룹홈에서의 상황을 다음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방 별 입소 수와 그룹홈 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그룹홈 생활 만족도, 그룹홈 입소 후 학교나 학원에서의 경험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방 별 입소 수

한 방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조사에서는 2명이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11명(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사용하는 경우는 191명(30.8%), 1명은 75명(12.1%)으로 나타났다. 즉, 한 방에서 평균 2.35명(SD=.853)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평균 2.4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방 평균 인원이 약 0.12명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방 거주인원이 많아 독립적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8〉 방 별 입소 수

항목		2017		2014		200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별 입소 수	1명	75	12.1	47	9.7	26	6.8
	2명	311	50.1	235	48.7	183	48.2
	3명	191	30.8	147	30.4	105	27.6
	4명	35	5.6	40	8.3	47	12.4
	5명	6	1.0	11	2.3	13	3.4
	6명	2	.3	2	.4	5	1.3
	7명	-	-	-	-	1	.3
	8명	1	.2	-	-	-	-
	9명	-	-	1	.2	-	-
	합계	621	100.0	483	100.0	380	100.0

2) 순위별 그룹홈 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복수로 응답하게 하여 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그룹홈 생활의 좋은 점으로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문화체험과 여가활동 206명(33.0%), 관심과 사랑받음이 107명(17.1%)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식사/주거공간이 좋음 122명(19.7%),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이 113명(18.3%) 순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기회 많음 100명(16.2%), 장래희망 생김 93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의 경우에도 1순위에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29.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과 사랑받음이 20.7%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 역시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이 18.7%로 가장 높았고, 식사/주거공간이 좋음이 17.5%로 뒤를 이었다.

그룹홈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입소 아동청소년들은 1순위로 집단생활 스트레스를 꼽았다 (35.3%). 그 다음으로 부모/친척그리움이 135명(23.9%)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도 역시 집단 생활 스트레스(22.0%)와 부모/친척그리움(19.4%)을 그룹홈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도 어려운 점의 1순위와 2순위 모두 집단생활 스트레스(45.3%/26.6%), 부모/친척그리움(29.7%/15.6%)이 가장 높았다. 종합 빈도는 1순위*2, 2순위*1로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한 합계이며 이에 근거하여 종합순위를 매겼다.

<표 4-9> 그룹홈 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항목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종합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룹홈의 좋은 점	문화체험/여가활동	206	33.0	113	18.3	525	1
	입소자끼리의 우애	35	5.6	40	6.5	110	7
	관심/사랑 받음	107	17.1	62	10.0	276	3
	역할모델만남	18	2.9	20	3.2	56	8
	장래희망생김	62	9.9	93	15.0	217	4
	식사/주거공간	99	15.8	122	19.7	320	2
	원가족의 폭력 차단	45	7.2	53	8.6	143	6
	교육기회 많음	41	6.6	100	16.2	182	5
	기타	12	1.9	16	2.6	40	9

	합계	62 5	100. 0	61 9	100. 0		
항목		1순위		2순위		총 합 빈 도	총 합 순 위
		빈 도	백분 율	빈 도	백분 율		
그룹홈의 어려운 점	집단생활스트레스	19 9	35.3	94	22.0	49 2	1
	부모/친척그리움	13 5	23.9	83	19.4	35 3	2
	교사들의 꾸지람	18	3.2	35	8.2	71	7
	입소자들의 괴롭힘	13	2.3	12	2.8	38	9
	그룹홈 적응	25	4.4	47	11.0	97	5
	그룹홈 대인관계	37	6.6	55	12.9	12 9	4
	외부인들 놀림/무시	21	3.7	15	3.5	57	8
	자립/진로불안	20	3.5	41	9.6	81	6
	고민상담자 부재	96	17.0	46	10.7	23 8	3
	기타	0	0	0	0	0	10
	합계	56 4	100. 0	42 8	100. 0		

3) 그룹홈 생활 만족부분

(1) 그룹홈 생활 부문별 만족

그룹홈 생활만족도를 전반적 생활만족과 부문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반적 생활만족은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389명(62.3%), 227명(36.4%)으로 98.7% 정도의 아동이 그룹홈에서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높은 부분은 음식제공 부분(99.1%),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외출의 자유 부분(13.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의복이 97.3%, 교사들의 애정과 관심이 96.6%, 교사들과의 관계가 96.5%, 진

학프로그램 94.5%, 아동들 간의 관계 93.9%. 취업프로그램 93.3%, 여가시간 92.6%, 용돈 88.8%, 외출의 자유 86.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제공 부분에서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의 자유 부분에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그룹홈 생활 부문별 만족도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반적 생활만족	매우 만족	389	62.3	311	63.1
	만족	227	36.4	178	36.1
	불만족	7	1.1	4	.8
	매우 불만족	1	.1	0	0
	합계	624	100.0	493	100.0
음식	매우 만족	453	72.2	342	69.4
	만족	164	26.2	150	30.4
	불만족	8	1.2	1	.2
	매우 불만족	2	.3	0	0
의복	매우 만족	392	62.6	282	57.3
	만족	217	34.7	189	38.4
	불만족	16	2.6	20	4.1
	매우 불만족	1	.2	1	.2
여가시간	매우 만족	338	54.3	259	52.5
	만족	238	38.3	192	38.9
	불만족	39	6.3	37	7.5
	매우 불만족	7	1.1	5	1.0
용돈	매우 만족	317	50.8	251	51.2
	만족	237	38.0	204	41.6
	불만족	61	9.8	31	6.3
	매우 불만족	9	1.4	4	.8
아동들 간의 관계	매우 만족	293	46.9	238	48.3
	만족	294	47.0	232	47.1
	불만족	33	5.3	21	4.3
	매우 불만족	5	.8	2	.4
외출의 자유	매우 만족	281	45.0	205	41.7

	만족	257	41.1	210	42.7
	불만족	72	11.5	68	13.8
	매우 불만족	15	2.4	9	1.8
교사들과의 관계	매우 만족	363	58.2	298	60.7
	만족	239	38.3	188	38.3
	불만족	20	3.2	5	1.0
	매우 불만족	2	.3	0	0
공부환경	매우 만족	365	58.3	302	61.4
	만족	231	36.9	180	36.6
	불만족	23	3.7	10	2.0
	매우 불만족	7	1.1	0	0
교사들의 애정과 관심	매우 만족	379	60.8	303	62.0
	만족	223	35.8	179	36.6
	불만족	18	2.9	7	1.4
	매우 불만족	3	.5	0	0
취업프로그램	매우 만족	301	49.6	206	43.6
	만족	265	43.7	236	50.0
	불만족	38	6.3	27	5.7
	매우 불만족	3	.5	3	.6
진학프로그램	매우 만족	320	52.5	214	45.2
	만족	256	42.0	239	50.5
	불만족	28	4.6	17	3.6
	매우 불만족	5	.8	3	.6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생활만족도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16.62점(SD=5.04), 여자 16.40점(SD=4.80)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F=5.713$,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분석결과 만16-18세가 평균 17.23점(SD=5.01)으로 만 12세 이하(15.22점, SD=4.41)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2년 이하 17.18점(SD=5.32), 2년1개월-4년 16.96점(SD=4.72), 6년1개월-8년 16.16점(SD=4.96), 8년1개월 이상 15.94점(SD=4.90), 4년1개월-6년 15.84점(SD=4.31)으로 나타나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

방 인원 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1명 16.71점(SD=4.94), 2명 16.37점(SD=4.77), 3명 16.08점(SD=4.91), 4명 18.94점(SD=5.01), 5명 이상 19.4점(SD=6.50)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F=3.458, p<0.01)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분석결과 1방인원이 4명인 경우가 2명 혹은 3명인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16-18세가 17.47점(SD=4.63)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 만 12세 이하가 15.35점(SD=4.72)으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구분		2017				2014			
		빈 도	합 계	표 준 편 차	t/ F	빈 도	합 계	표 준 편 차	t/ F
성별	남자	31 0	16. 62	5.0 4	.56 8	23 3	16. 76	4.8 5	.58 3
	여자	30 9	16. 40	4.8 0		22 3	16. 50	4.5 8	
연령	만19세 이상(a)	33	15. 27	4.5 6	5.7 13 ** (b >d)	16	17. 19	4.1 3	4.2 47 ** (b >d)
	만16-18세(b)	24 6	17. 23	5.0 1		17 5	17. 47	4.6 3	
	만13-15세(c)	21 1	16. 67	5.0 0		17 8	16. 48	4.7 5	
	만12세 이하(d)	13 4	15. 22	4.4 1		89 35	15. 35	4.7 2	
거주 기간	2년 이하	15 4	17. 18	5.3 2	2.0 61	14 4	16. 93	4.6 9	.41 7
	2년1개월-4 년	13 4	16. 96	4.7 2		12 2	16. 49	4.8 7	
	4년1개월-6 년	11 6	15. 84	4.3 1		88	16. 92	4.7 1	
	6년1개월-8 년	86	16. 16	4.9 6		55	16. 45	4.8 0	
	8년1개월 이상	11 6	15. 94	4.9 0		49 10	16. 10	4.5 6	
1방 인원	1명(a)	75	16. 71	4.9 4	3.4 58 **	44	15. 75	3.7 2	.60 0
	2명(b)	31	16.	4.7		20	16.	4.9	

		0	37	7	(d > b, c)	7	90	8	
	3명(c)	19	16.	4.9		14	16.	4.7	
		0	08	1		3	72	1	
	4명(d)	35	18.	5.0		39	16.	4.8	
			94	1			46	2	
	5명이상(e)	9	19.	6.5		14	16.	4.0	
			4	0			14	5	

*p<.05, **p<.01, ***p<.001

4)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경험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10.0%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경험

항목		빈도	백분율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경험	있다	62	10.0
	없다	561	90.0
	합계	623	100.0

5)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이유

입소 전 가출 이유를 크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학교 가기가 싫어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룹홈의 규칙(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그룹홈의 어른들(보호자)과 사이가 나빠서, 그룹홈에 나만의 공간(사생활 존중)이 없어서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중복응답을 포함하였다. 가출 이유로는 ‘학교 가기가 싫어서’가 20.0%로 나타나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그룹홈의 어른들(보호자)과 사이가 나빠서’가 17.1%,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가 15.7%, ‘그룹홈의 규칙(규율)이 너무 엄격해서’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그룹홈 생활기간 내 가출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그룹홈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2	2.9

생활 기간 내 가출 이유	학교 가기가 싫어서	14	20.0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11	15.7
	그룹홈의 규칙(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10	14.3
	그룹홈의 어른들(보호자)과 사이가 나빠서	12	17.1
	그룹홈의 다른 아동들과 사이가 나빠서	3	4.3
	그룹홈에 나만의 공간(사생활 존중)이 없어서	4	5.7
	기타	14	20.0
	합계	70	100.0

6) 그룹홈 생활 공개대상

본인이 그룹홈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까지 공개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4-14>에 서처럼 56.7% 정도가 모든 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야기하 기 꺼리거나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2008년, 2014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에 는 52.6%, 2014년에는 54.6%였던 반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비율은 각각 45.4%, 43.2%로 나 타났다.

<표 4-14> 그룹홈 생활 공개대상

항목		2017		2014		2008	
		빈도	백분 율	빈도	백분 율	빈도	백분 율
그 룹 홈 생 활 공 개 대 상	모든 사람 대상	54	8.6	61	12.4	52	13.7
	친한 친구	301	48.1	207	42.2	148	38.9
	이야기 꺼림	100	16.0	85	17.3	50	13.2
	절대로 하지 않 음	171	27.3	138	28.1	114	30.0
	기타	-	-	-	-	16	4.2
	합계	626	100. 0	491	100. 0	380	100. 0

7) 그룹홈 입소 후 학교/학원에서 경험한 일

그룹홈 입소한 후에 학교나 학원에서 경험한 일을 일상적인 언어폭력 부분(놀림, 따돌림,

뒷담화/ 협박이나 위협)과 신체적 폭력(강탈, 신체폭력)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변화 부분을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부분에서는 70~80%정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는 전혀 없는 경우가 90%내외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부분은 전혀 없음이 2014년에는 70~80%, 2008년에는 대체로 60~70%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아동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협박이나 위협은 전혀 없다는 비율이 95.8%로 매우 높았으며, 강탈이나 신체폭력도 대부분의 그룹홈 생활 아동이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온 이후에 학업 성적이 매우 좋아지거나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70.6%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좋아진 비율이 2014년에는 73.1%, 2008년의 경우에도 74%로 나타나 안정된 양육환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심이 학업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그룹홈 입소 후 학교/학원에서 경험한 일

항목		2017		2014		200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포래들의 놀림	전혀 없음	490	78.7	368	75.4	234	62.1
	한 번	47	7.5	58	11.9	66	17.5
	2-3번	52	8.3	37	7.6	37	9.8
	네 번 이상	34	5.5	25	5.1	40	10.6
	합계	623	100.0	488	100.0	377	100.0
포래들의 따돌림	전혀 없음	531	85.2	415	85.0	288	76.2
	한 번	47	7.5	37	7.6	53	14.0
	2-3번	31	5.0	23	4.7	28	7.4
	네 번 이상	14	2.2	13	2.7	9	2.4
	합계	623	100.0	488	100.0	378	100.0
포래들의 뒷담화	전혀 없음	518	83.3	391	80.1	266	70.6
	한 번	58	9.3	61	12.5	64	17.0
	2-3번	27	4.3	24	4.9	33	8.8
	네 번 이상	19	3.1	12	2.5	14	3.7
	합계	622	100.0	488	100.0	377	100.0
포래들의 협박/위협	전혀 없음	597	95.8	459	94.6	344	91.5
	한 번	14	2.2	13	2.7	19	5.1
	2-3번	4	.6	9	1.9	10	2.7
	네 번 이상	8	1.3	4	.8	3	.8

	합계	623	100.0	485	100.0	376	100.0
또래들의 강탈	전혀 없음	605	97.3	473	96.9	350	93.1
	한 번	11	1.8	10	2.0	19	5.1
	2-3번	4	.6	4	.8	6	1.6
	네 번 이상	2	.3	1	.2	1	.3
	합계	622	100.0	488	100.0	376	100.0
또래들의 신체폭력	전혀 없음	580	93.2	437	89.7	306	81.2
	한 번	20	3.2	31	6.4	42	11.1
	2-3번	13	2.1	10	2.1	17	4.5
	네 번 이상	9	1.5	9	1.8	12	3.2
	합계	622	100.0	487	100.0	377	100.0
학업성적변화	매우 좋아짐	133	21.3	105	21.3	85	22.5
	좋아짐	308	49.3	255	51.8	194	51.5
	변화 없음	170	27.2	120	24.4	80	21.2
	나빠짐	12	1.9	11	2.2	14	3.7
	매우 나빠짐	2	.3	1	.2	4	1.1
	합계	625	100.0	492	100.0	377	100.0

8) 연락하는 친족 여부 및 연락하는 친척의 범위

연락하는 친족여부의 비율(71.1%)은 2008년 조사(73.3%), 2014년 조사(80.0%)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05년 조사에서 43.7%만이 친족과 연락한다는 결과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으며 연락비율이 일정수준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룹홈에서 원가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락이 오가는 친족의 범위는 복수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백분율은 438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친부와 연락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253명(58.0%)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188명(43.0%), 형제자매 130명(29.7%), 삼촌/고모 95명(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조사에서도 친부(43.0%), 친모(30.7%), 형제자매(22.5%), 삼촌/고모(18.3%)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락빈도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이 126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109명(2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달에 한 번 이상과 일 년에 한두 번이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79명(18.1%), 기타 43명(9.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4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2.9%, 32.1%로 가장 높았지만, 점차 그 응답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일 년에 한두 번(23.4%)이라고 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08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두 번째였다는 데서 조사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16〉 연락하는 친족 및 연락빈도

항목		2017		2014		200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락하는 친족여부	있다	443	71.1	389	80.0	269	73.3
	없다	180	28.9	97	20.0	98	26.7
	합계	623	100.0	486	100.0	367	100.0
연락오가는 친척의 범위	친부	253	58.0	214	43.0	163	44.4
	친모	188	43.0	153	30.7	105	28.6
	친조부/친조모	67	15.3	61	12.2	65	17.7
	외조부/외조모	51	11.7	38	7.6	38	10.4
	외삼촌/이모	65	14.9	60	12.0	38	10.4
	삼촌/고모	95	21.7	91	18.3	64	17.4
	형제자매	130	29.7	112	22.5	60	16.3
	계모/계부	40	9.1	21	4.2	13	3.5
	기타	25	5.7	15	3.0	24	6.5
연락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09	25.0	87	23.1	73	26.1
	한 달에 한 번 이상	126	28.9	121	32.1	92	32.9
	두 달에 한 번 이상	79	18.1	62	16.4	41	14.6
	일 년에 한두 번	79	18.1	88	23.4	38	13.6
	기타	43	9.9	19	5.0	36	12.9
	합계	436	100.0	377	100.0	280	100.0

4. 아동청소년 자신에 대한 사항

그룹홈 아동청소년들 자신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룹홈 아동청소년들 자신에 관한 조사사항으로는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 감당’,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우울정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차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 감당

그룹홈 아동들에게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17>과 같다.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 역할감을 잘 해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6%,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10.1%, 잘 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잘 해낼 것이라는 응답과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85.7%로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 감당

항목		2017		201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래 부모 또는 남편/아내로서의 역할감당에 대한 생각	잘 해낼 것	349	56.1	304	62.7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것	184	29.6	155	32.0
	결혼을 하지 않을 것	63	10.1	-	-
	잘 하지 못할 것	26	4.2	26	5.4
	합계	622	100.0	485	10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t=2.929$, $P<0.01$), 연령($F=3.959$, $P<0.01$), 거주기간($F=4.44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사후 검정한 결과, 만 16-18세의 평균 30.57($SD=5.65$)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평균 32.59점(SD=5.35)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연령의 아동일수록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주기간의 경우 6년1개월-8년이 32.86점(SD=6.17)으로 가장 높았으며, 8년1개월 이상이 32.07점(SD=6.1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F=4.443, P<0.01)은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2014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F=4.860, P<0.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구분		2017				2014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05	31.76	5.17	2.929**	244	21.57	3.00	-1.059
	여자	302	30.40	6.19		233	21.87	3.22	
연령	만19세 이상 (a)	31	31.16	6.31	3.959**	15	22.20	2.54	4.860** (b<d)
	만16-18세 (b)	245	30.57	5.65		181	21.09	3.00	
	만15-13세 (c)	206	30.71	5.86		183	21.86	3.29	
	만12세 이하 (d)	129	32.59	5.35		99	22.48	2.84	
거주기간	2년 이하	122	29.31	6.14	4.443**	153	21.48	3.13	1.252
	2년1개월-4년	93	31.01	5.47		126	22.03	3.10	
	4년1개월-6년	73	31.30	5.33		85	22.11	3.38	
	6년1개월-8년	56	32.86	6.17		63	21.37	2.91	
	8년1개월	55	32.07	6.16		51	21.07	2.70	

	이상		07	6			35	6	
1방 인원	1명	71	32. 05	5.1 0	2.1 64	46	21. 76	3.4 4	.49 4
	2명	30 6	31. 08	5.8 1		22 8	21. 82	2.9 4	
	3명	18 6	30. 87	5.8 4		14 3	21. 49	3.1 3	
	4명	35	31. 29	4.7 6		38	22. 21	3.0 3	
	5명 이상	9	26. 33	5.4 0		12	21. 83	3.8 6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우울정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우울정도는 성별($t=-6.67$, $P<0.001$)과 거주기간($F=3.451$, $P<0.01$)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17.33점($SD=4.38$)으로 남자 15.27점($SD= 3.09$)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한 경향이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008년과 2014년의 경우에도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14년에는 여자가 16.81점($SD=4.11$)으로 남자 15.63점($SD= 3.23$)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거주기간이 낮을수록 우울/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그룹홈 생활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안/우울정도 차이

구분		2017				2014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t/ F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t/ F
성별	남자	30 0	15. 27	3.0 9	-6. 67	25 2	15. 63	3.2 3	-3. 530
	여자	30 5	17. 33	4.3 8	** *	22 9	16. 81	4.1 1	** *
연령	만19세	32	16.	3.2	1.1	16	18.	6.2	2.9

	이상 (a)		22	0	62		38	2	44 * (a> c, d)
	만16-18세 (b)	24 5	16. 29	4.4 2		18 2	16. 48	3.6 7	
	만15-13세 (c)	20 3	16. 62	3.8 5		18 3	15. 91	3.7 2	
	만12세 이하 (d)	12 9	15. 80	3.6 5		10 1	15. 80	3.1 7	
거주 기간	2년 이하	11 8	17. 69	5.1 2	3.4 51 **	15 4	16. 88	4.1 2	2.2 51
	2년1개월-4 년	92	16. 49	3.8 2		12 3	16. 11	3.5 2	
	4년1개월-6 년	73	16. 51	4.0 8		90	15. 76	3.0 4	
	6년1개월-8 년	54	15. 69	3.6 0		63	15. 62	4.1 0	
	8년1개월 이상	58	15. 60	3.4 0		52	15. 73	3.3 0	
1방 인원	1명	73	15. 95	3.2 3	1.2 46	47	15. 94	3.0 9	.96 3
	2명	30 4	16. 28	4.1 1		23 1	16. 03	3.5 9	
	3명	18 5	16. 32	3.8 9		14 2	16. 51	4.1 1	
	4명	34	16. 53	3.0 5		38	15. 92	3.4 7	
	5명이상	9	19. 00	5.8 7		13	17. 62	5.1 1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차이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 22.16점(SD=4.59), 여자 23.42점(SD=5.13점)으로 성별(t=-3.19,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의 평균 24.12점(SD=5.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2년 이하가 평균 24.60점(SD=6.25)으로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년1개월-8년이 21.32점(SD=3.10), 8년1개월 이상이 21.47점(SD=3.08)으로 가장 낮았다. 우울/불안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그룹홈 생활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4-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차이

구분		2017				2014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t/ F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t/ F
성별	남자	30 2	22. 16	4.5 9	-3. 19 **	24 9	22. 55	4.1 4	-2. 079 *
	여자	30 4	23. 42	5.1 3		23 2	23. 39	4.7 3	
연령	만19세 이상	33	20. 64	2.4 2	7.6 45 ** *	16	22. 19	3.9 7	.81 0
	만16세-18 세	24 4	22. 09	4.1 2		18 0	22. 82	4.2 4	
	만15세-13 세	20 4	22. 93	4.9 8		18 5	22. 84	4.4 8	
	만12세 이하	12 9	24. 12	5.5 5		10 1	23. 52	4.8 2	
거주기 간	2년 이하	12 3	24. 60	6.2 5	6.6 32 ** *	15 0	23. 83	4.8 5	2.5 56 *
	2년1개월-4 년	90	22. 91	4.0 5		12 6	22. 78	3.8 6	
	4년1개월-6 년	72	23. 76	5.6 4		91	22. 77	4.6 2	
	6년1개월-8 년	56	21. 32	3.1 0		63	22. 08	4.3 8	
	8년1개월 이상	58	21. 47	3.0 8		52	22. 21	4.0 8	
1방 인원	1명	73	22. 47	4.4 2	.52 1	46	22. 20	3.8 7	1.6 94
	2명	30 2	22. 79	5.2 6		22 9	22. 77	4.2 6	
	3명	18 8	22. 79	4.3 4		14 4	23. 37	4.7 7	
	4명	34	23. 73	5.2 8		38	23. 13	4.2 6	
	5명 이상	9	21. 67	4.6 0		14	25. 29	6.6 3	

*p<.05, **p<.01, ***p<.001

5. 공동생활가정 생활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홈에서의 심리적 환경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설 환경은 시설의 물리적 조건보다도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과정적 환경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나 응집력, 상호 인간관계의 질 등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이태수 외, 1997). 본 연구조사에서는 이러한 그룹홈에서의 심리적 환경을 관리·원조·지도라는 양육에 대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김형태(1989)의 연구를 참고하여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그룹홈 내 성원 상호간 태도 및 응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 요령은 <긍정-부정>을 양극으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 가능점수는 44점에서 220점이었으며, 평균은 90.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87.60점으로 나타난 2014년의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체 문항간의 구성 및 내적 신뢰도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심리적 환경상태 측정도구의 구성 및 내적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2017 Cronbach's α	2014 Cronbach's α	2008 Cronbach's α
성취 - 비성취	5	1, 2, 23, 24, 25	.468	.446	.283
개방 - 폐쇄	4	3, 4, 26, 27	.547	.510	.594
친애 - 거부	10	5, 6, 7, 8, 9, 28, 29, 30, 31, 32	.870	.874	.664
자율 - 타율	9	10, 11, 12, 13, 33, 34, 35, 36, 37	.814	.774	.550
성원상호간태도	7	14, 15, 16, 18, 38, 39, 40	.843	.833	.810
성원간 응집력	9	17, 19, 20, 21, 22, 41, 42, 43, 44	.800	.802	.758

* 역문항: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3, 44

1) 『성취-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성취-비성취』에 대한 태도를 <표 4-22>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성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합계는 11.02점(SD=3.22)이며 여성의 합계는 11.20점(SD=2.75)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만 13-15세가 가장 높았으며, 입소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이 5명이상 일 때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성취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소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도 여성의 성취성이 높게 나타났고, 입소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을 때 성취성이 높게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만 16세-18세 학생일수록, 1방 인원이 3명 일수록 성취성이 높게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를 나타냈다.

〈표 4-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 비성취』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6	11.02	3.22	-7.79	247	10.69	2.90	-1.897	184	12.14	3.01	.875
	여성	308	11.20	2.75		235	11.16	2.58		194	11.87	2.98	
연령	만19세 이상	33	10.70	3.10	.242	16	10.88	2.68	.278	12	10.75	2.83	.987
	만16-18세	245	11.13	2.96		178	11.07	2.77		72	12.31	2.86	
	만15-13세	208	11.14	2.94		185	10.89	2.73		165	11.94	3.13	
	만12세 이하	132	11.03	3.17		105	10.78	2.81		126	12.03	2.90	
거주기간	2년 이하	123	11.92	3.03	6.08** *	155	11.31	3.01	1.245	200	12.08	2.90	3.465
	2년1개월-4년	92	11.11	3.05		126	10.91	2.74		70	10.92	3.13	
	4년1개월-6년	71	10.87	2.70		90	10.66	2.62		38	12.92	2.96	
	6년1개월-8년	57	10.46	2.76		62	10.63	2.28		34	12.47	2.99	
	8년1개월 이상	58	9.79	2.85		51	10.67	2.70		27	11.88	2.90	
1방 인원	1명	75	11.13	3.09	1.541	46	10.54	2.98	.454	25	12.24	2.78	.180
	2명	305	10.94	2.89		228	10.83	2.67		182	11.88	3.02	
	3명	190	11.	3.1		145	11.	2.7		104	12.	3.1	

			14	5			10	3			03	9	
	4명	35	11.83	2.86		40	10.93	3.30		44	11.97	2.84	
	5명 이상	9	12.89	2.67		14	10.64	2.17		19	12.36	2.56	

*p<.05, **p<.01, ***p<.001

2) 『개방 - 폐쇄』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개방 - 폐쇄』에 대한 태도를 <표 4-23>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성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합계는 9.05점(SD=3.09)이며 여성의 합계는 9.06점(SD=2.84)으로 나타나 여성의 개방성이 조금 높았다. 또한 연령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만 12세 이하일수록,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이 4명 일 때 개방성의 평균이 높았다. 특히 거주기간과 1방 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14년 조사에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을 때 개방성이 높게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남성의 개방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있어서는 만 15-13세가 가장 높으며, 1방 인원이 3명일 경우 개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를 나타냈다.

<표 4-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방 - 폐쇄』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3	9.05	3.09	-0.13	245	8.94	2.73	1.357	185	9.74	2.94	-0.856
	여성	304	9.06	2.84		238	8.61	2.60		194	9.98	2.72	
연령	만19세 이상	33	8.00	2.45	1.86	16	8.13	2.31	.810	12	8.75	2.80	1.404
	만16-18세	240	8.96	2.88		177	8.79	2.59		72	9.50	2.83	
	만15-13세	206	9.20	3.09		187	8.96	2.78		166	9.93	2.87	
	만12세	131	9.25	2.99		105	8.57	2.64		126	10.12	2.79	

	이하												
거주 기간	2년 이하	120	9.9 6	3.1 4	4.4 0 **	155	9.0 3	2.6 9	.77 9	200	9.9 5	2.8 9	.56 9
	2년1 개월- 4년	92	9.2 4	2.8 1		125	8.8 6	2.9 3		70	9.6 4	2.6 0	
	4년1 개월- 6년	70	8.7 0	2.7 9		92	8.4 9	2.6 6		38	10. 18	2.4 9	
	6년1 개월- 8년	57	8.6 8	3.0 1		62	8.6 9	2.2 1		34	9.9 4	2.9 7	
	8년1 개월 이상	58	8.2 6	2.7 6		51	8.5 1	2.4 4		27	9.2 9	2.5 5	
1방 인원	1명	74	8.4 3	2.8 4	3.5 5**	45	8.1 6	2.9 5	1.2 12	25	10. 44	2.5 5	.74 0
	2명	303	8.9 3	2.8 7		229	8.7 2	2.5 5		183	9.6 3	2.9 0	
	3명	186	9.1 3	3.0 5		146	9.1 2	2.7 3		104	10. 01	2.8 8	
	4명	34	10. 51	3.1 6		40	8.7 1	2.3 3		44	9.8 8	2.9 0	
	5명 이상	9	10. 44	2.5 1		12	8.8 0	2.6 8		19	10. 31	2.0 8	

*p<.05, **p<.01, ***p<.001

3) 『친애 - 거부』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친애 - 거부』에 대한 태도를 <표 4-24>에서 보면 남성의 합계는 18.79점(SD=6.67)이며 여성의 합계는 17.51점(SD=5.92)으로 남성의 친애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만 16-18세에서,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이 5명 이상 일 때 친애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거주기간과 1방 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친애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있어서는 만 16-18세가 가장 높으며, 거주기간이 2년 이하로 짧을수록 친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1방 인원은 3명 일 때 친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애 - 거부』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4	18.79	6.67	2.51*	248	18.66	6.23	2.311*	185	20.51	6.58	-.259
	여성	306	17.51	5.92		235	17.40	5.78		194	20.69	6.69	
연령	만19세 이상	33	15.85	5.02	1.969	16	15.25	2.65	2.527	12	20.75	6.47	1.562
	만16-18세	244	18.55	6.42		177	18.74	5.93		72	20.38	6.31	
	만15-13세	207	17.88	6.48		188	18.12	6.36		166	21.45	7.00	
	만12세 이하	130	18.38	6.12		104	17.26	5.93		126	19.79	6.21	
거주기간	2년 이하	124	19.61	7.09	4.720*	155	18.42	6.21	.447	200	20.40	6.59	.508
	2년1개월-4년	93	18.84	6.25		126	17.53	6.20		70	20.00	6.31	
	4년1개월-6년	72	16.89	5.89		91	18.19	5.90		38	21.47	5.81	
	6년1개월-8년	56	17.16	5.93		62	18.34	6.07		34	21.41	6.96	
	8년1개월 이상	58	18.08	6.45		51	17.76	5.59		27	21.00	7.96	
1방 인원	1명	75	18.37	6.36	5.838**	46	18.04	7.64	.689	25	22.40	4.94	.814
	2명	305	17.77	6.05		229	17.62	5.46		183	20.13	6.64	
	3명	188	17.71	6.02		145	18.68	6.59		104	20.62	6.62	
	4명	33	22.03	8.07		40	18.38	5.93		44	20.82	7.67	
	5명 이상	9	24.11	6.94		14	17.86	6.01		19	21.63	5.96	

*p<.05, **p<.01, ***p<.001

4)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를 <표4-25>에서 보면 남성의 합계는 18.51점(SD=6.32)이며 여성의 합계는 17.40점(SD=5.45)으로 남성의 자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 만 12세 이하에서, 입소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이 5명 이상 일 때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입소기간, 1방 인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자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입소기간이 2년 이하로 짧을수록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1방 인원은 3명일 때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율 - 타율』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3	18.51	6.32	2.297*	249	18.97	5.47	3.322*	185	21.93	6.04	2.476
	여성	304	17.40	5.45		235	17.35	5.24		194	20.43	5.72	
연령	만19세 이상	33	15.82	7.06	4.856*	16	14.88	4.03	2.486	12	18.50	4.44	3.187
	만16-18세	242	17.49	5.77		177	17.99	5.31		72	19.67	6.17	
	만15-13세	206	17.84	5.94		189	18.43	5.60		166	21.67	5.89	
	만12세 이하	129	19.47	5.64		104	18.66	5.32		126	21.73	5.76	
거주기간	2년 이하	119	19.72	5.61	6.314**	156	18.86	5.91	1.106	200	21.15	6.12	.185
	2년1개월-4년	92	18.97	5.85		125	17.87	5.35		70	21.13	5.92	
	4년1개월-6년	72	17.39	5.90		92	18.35	5.10		38	21.47	4.87	

	6년1 개월- 8년	56	16. 64	5.9 6		63	17. 54	4.8 6		34	21. 74	5.4 9	
	8년1 개월 이상	58	15. 80	5.7 4		50	17. 58	5.2 0		27	20. 52	6.1 0	
1방 인원	1명	75	17. 83	6.4 0	5.6 08* **	46	16. 80	5.6 5	2.6 58	25	21. 96	6.5 2	1.4 12
	2명	302	17. 42	5.5 7		229	17. 72	5.1 5		183	20. 42	5.8 0	
	3명	185	17. 95	6.1 3		147	19. 25	5.8 8		104	21. 61	6.1 9	
	4명	35	21. 51	4.7 7		39	18. 36	4.6 3		44	22. 23	5.7 7	
	5명 이상	9	23. 00	6.4 0		14	18. 50	4.3 6		19	21. 95	5.1 4	

*p<.05, **p<.01, ***p<.001

5) 그룹홈 구성원 상호간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그룹홈 내 구성원 상호간에 대한 태도 차이를 <표 4-26>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합계는 13.76점(SD=5.12)이며 여성의 합계는 13.08점(SD=4.73)으로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만 16-18세에서,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 5명 이상 일 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거주기간과 1방 인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만 16-18세, 입소기간이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은 5명 이상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홈 구성원 상호간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4	13. 76	5.1 2	1.7 21	247	13. 44	4.5 9	1.1 35	185	15. 14	5.1 5	-2. 047
	여성	308	13. 08	4.7 3		237	12. 97	4.4 4		194	16. 25	5.3 6	
연령	만19 세	33	11. 91	3.9 9	1.4 38	16	12. 75	4.3 3	1.8 82	12	15. 42	6.0 1	1.5 16

	이상 만16 -18 세	244	13. 73	5.0 9		179	13. 73	4.5 1		72	15. 69	5.2 7	
	만15 -13 세	208	13. 43	4.8 9		186	13. 23	4.6 5		166	16. 34	5.4 4	
	만12 세 이하	131	13. 22	4.8 6		105	12. 43	4.3 1		126	15. 02	4.9 7	
거주 기간	2년 이하	122	15. 01	5.5 6	6.0 17* **	156	13. 51	4.7 7	.33 4	200	15. 83	5.4 7	.60 3
	2년1 개월- 4년	92	14. 03	4.9 7		125	13. 22	4.7 7		70	15. 29	4.7 9	
	4년1 개월- 6년	73	13. 10	4.3 5		91	13. 18	4.3 5		38	16. 11	4.7 3	
	6년1 개월- 8년	57	12. 70	4.7 1		63	12. 97	3.7 2		34	16. 32	5.6 2	
	8년1 개월 이상	58	11. 52	3.9 5		51	12. 76	4.5 1		27	14. 59	5.6 9	
1방 인원	1명	74	13. 69	5.5 0	3.9 88* *	47	12. 64	4.3 8	2.4 87	25	17. 36	4.9 7	1.1 20
	2명	304	12. 99	4.7 9		231	12. 71	4.3 0		183	15. 22	4.9 9	
	3명	190	13. 41	4.6 2		145	13. 72	4.7 6		104	15. 86	5.4 2	
	4명	35	15. 80	5.8 3		38	14. 08	4.6 3		44	16. 20	6.4 4	
	5명 이상	9	17. 11	4.1 2		14	15. 36	5.8 1		19	15. 79	4.2 6	

*p<.05, **p<.01, ***p<.001

6) 그룹홈 내 성원간의 응집력에 대한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환경 상태 중 그룹홈 내 성원간의 응집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표4-27>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합계는 20.63점(SD=4.68)이며 여성의 합계는 20.83점(SD=6.80)으로 여성이 좀 더 응집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연령에 있어서 만 15-18세에

서, 입소기간에 있어서는 2년 이하로 짧을수록, 1방 인원이 4명 일 때 응집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입소기간과 1방 인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연령에서는 만 16-18세, 입소기간이 2년 이하로 짧을수록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 성별에서는 남성이, 1방 인원은 5명 이상일 때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홈 내 성원간의 응집력에 대한 태도 차이

구분		2017				2014				2008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306	20.63	4.68	-.431	245	18.47	5.41	.576	185	21.49	5.57	-.128
	여성	302	20.83	6.80		235	18.19	5.31		194	21.56	5.89	
연령	만19세 이상	33	19.61	4.05	.758	16	17.56	5.94	2.311	12	21.67	6.80	.782
	만16-18세	244	20.58	4.70		176	19.16	5.31		72	21.60	5.58	
	만15-13세	208	21.16	7.61		187	18.09	5.51		166	22.02	5.77	
	만12세 이하	126	20.72	4.86		103	17.59	4.93		126	20.98	5.61	
거주기간	2년 이하	121	22.02	5.19	3.834*	154	18.79	5.41	.796	200	21.77	6.05	1.270
	2년1개월-4년	91	21.95	9.77		127	18.29	5.81		70	20.99	5.30	
	4년1개월-6년	73	19.68	4.82		89	18.18	5.53		38	22.00	4.79	
	6년1개월-8년	56	20.34	4.42		62	18.53	4.52		34	22.35	6.06	
	8년1개월 이상	58	18.90	4.44		50	17.28	4.62		27	19.56	5.60	
1방	1명	75	20.	4.9	9.1	46	17.	5.8	1.7	25	22.	4.8	1.2

인원			92	1	74* **		57	3	03		80	9	78
	2명	301	20.	4.6		231	18.	5.4		183	21.	5.6	
			27	8			07	7			07	2	
	3명	187	20.	4.5		143	18.	5.1		104	21.	5.7	
			18	9			85	3			26	6	
	4명	35	25.	14.		38	18.	5.2		44	22.	6.4	
			97	47			13	3			14	5	
	5명		24.	5.1		13	21.	5.1		19	23.	5.1	
	이상	9	22	9			31	4			37	9	

*p<.05, **p<.01, ***p<.001

6.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룹홈 입소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그룹홈 거주기간, 연락하는 부모/친척의 여부, 가출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 학교폭력, 생활만족도, 학업성적변화이며, 가출경험과 학대는 입소 전의 경험이며, 학교폭력, 생활만족, 학업성적은 입소 후의 경험이다. 생활만족은 그룹홈에서의 음식, 의복, 여가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합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룹홈 입소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기간, 연락하는 가족여부, 학대경험, 학교폭력 경험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6년 1개월-8년($\beta=.113$, $p<.05$)과 8년 1개월 이상($\beta=.100$, $p<.05$)의 경우 2년 이하인 아동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41$, $p<.001$),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71$, $p<.001$). 또한 학대경험은 적을수록($\beta=-.134$, $p<.01$)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그룹홈 아동의 분석결과에서는 거주기간과 학대, 학교폭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17년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경험과 생활만족의 경우 2014년에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2017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2017			2014		
		B	β	t	B	β	t
성별		.133	.044	1.141	-.017	-.027	-.568
연령	만16- 18세	-.414	-.135	-1.543	-.085	-.133	-1.034
	만13- 15세	-.253	-.080	-.929	-.043	-.067	-.516
	만12세 이하	-.232	-.063	-.803	.000	.000	-.002
거주 기간	2년1개월-4년	.252	.070	1.482	.046	.066	1.181
	4년1개월-6년	.204	.054	1.155	.034	.042	.785
	6년1개월-8년	.482	.113	2.446 *	-.037	-.038	-.711
	8년1개월 이상	.380	.100	2.068 *	-.016	-.016	-.294
연락하는 가족여부		.229	.171	3.574 ***	.062	.079	1.626
가출경험		-.102	-.057	-1.371	-.099	-.139	-2.689 **
학대		-.089	-.134	-3.257 **	.026	.058	1.053
학교폭력		.264	.187	3.938 ***	-.055	-.074	-1.484
생활만족		-.031	-.024	-.578	.176	.241	4.757 ***
학업성적 변화		-.003	-.003	-.066	.014	.033	.661
F		6.233			4.128		
adj. R ²		.109			.096		

*p<.05, **p<.01, ***p<.001

※기준변수: 성별-여자, 연령-만19세 이상, 거주기간-2년 이하

2)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룹홈 입소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연락하는 가족여부, 학교폭력 경험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13$, $p < .01$), 연령의 경우 만 16-18세($\beta = -.290$, $p < .01$), 만13-15세($\beta = -.316$, $p < .001$)와 만 12세 이하($\beta = -.268$, $p < .01$)의 아동이 만 19세 이상에 비해 우울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02$, $p < .05$), 입소 후 학교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7$, $p < .001$). 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연락하는 가족여부의 경우 2017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 학대, 생활만족은 2014년에는 그룹홈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2017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9〉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2017			2014		
		B	β	t	B	β	t
성별		-.369	-.113	-2.867 **	-.093	-.160	-3.445 **
연령	만16- 18세	-.971	-.290	-3.268 **	-.123	-.205	-1.720
	만13- 15세	-1.086	-.316	-3.600 ***	-.150	-.250	-2.079 *
	만12세 이하	-1.076	-.268	-3.361 **	-.160	-.217	-2.100 *
거주기간	2년1개월-4년	.089	.022	.470	-.050	-.076	-1.405
	4년1개월-6년	.000	.000	-.002	-.076	-.103	-1.980 *
	6년1개월-8년	.306	.065	1.399	-.046	-.050	-.985
	8년1개월 이상	-.094	-.023	-.460	-.046	-.048	-.917
연락하는 가족여부		.150	.102	2.108 *	.052	.071	1.520
가출경험		-.070	-.036	-.849	.047	.070	1.409
학대		-.057	-.079	-1.887	.071	.163	3.123 **
학교폭력		.272	.177	3.667 ***	.134	.191	3.968 ***
생활만족		-.072	-.051	-1.216	-.079	-.115	-2.373 *
학업성적 변화		.057	.041	.992	.004	.010	.218
F		6.956			6.956		
adj. R ²		.168			.168		

*p<.05, **p<.01, ***p<.001

※기준변수: 성별-여자, 연령-만19세 이상, 거주기간-2년 이하

3)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연락하는 가족여부, 가출경험, 학대경험, 학교폭력경험, 생활만족이 그룹홈 입소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3$, $p < .05$),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5$, $p < .001$). 입소 전 부모(보호자)로부터 학

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186$, $p<.001$), 입소 후 학교폭력의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beta=.292$, $p<.001$). 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97$, $p<.05$). 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연락하는 가족여부와 생활만족의 경우 2017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2017			2014		
		B	β	t	B	β	t
성별		-.161	-.093	-2.567 *	-.066	-.147	-3.166 **
연령	만16- 18세	.191	.108	1.320	.046	.101	.843
	만13- 15세	.090	.049	.612	.053	.115	.951
	만12세 이하	.178	.083	1.142	.094	.167	1.614
거주기간	2년1개월-4년	.057	.027	.616	-.042	-.083	-1.528
	4년1개월-6년	.110	.050	1.151	-.029	-.051	-.972
	6년1개월-8년	.085	.034	.802	-.029	-.042	-.802
	8년1개월 이상	.135	.061	1.354	-.011	-.015	-.285
연락하는 가족여부		.159	.205	4.593 ***	.033	.059	1.250
가출경험		-.090	-.086	-2.241 *	.086	.168	3.347 **
학대		.072	.186	4.863 ***	.046	.139	2.650 **
학교폭력		.240	.292	6.612 ***	.116	.211	4.396 ***
생활만족		-.073	-.097	-2.547 *	-.037	-.070	-1.431
학업성적 변화		-.046	-.063	-1.658	-.015	-.050	-1.035
F		6.695			6.695		
adj. R ²		.162			.162		

* $p<.05$, ** $p<.01$, *** $p<.001$

※기준변수: 성별-여자, 연령-만19세 이상, 거주기간-2년 이하

V.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발전을 위한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의 일반적 현황,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종사자의 실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석 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그룹홈의 재정지원의 증가로 국가보조금 지원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여전히 그룹홈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산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농산어촌의 아동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학내나 방임의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아동·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2008)가 있는 만큼 농산어촌 지역에 그룹홈 설치 욕구가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룹홈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실태 등을 살펴보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그룹홈 운영의 중요 핵심이다. 그런데 운영자를 대상으로 아동이 그룹홈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지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부모 및 친척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입소 아동이 답한 그룹홈 생활의 힘든 점은 ‘집단생활 스트레스’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룹홈의 물리적 환경은 집이지만, 그룹홈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집단생활에 따른 어려움이기 때문에 실제 그룹홈 운영도 일반가정처럼 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특히, 그룹홈의 운영주체가 개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그룹홈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그룹홈 종사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종사자의 소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2014년에는 학력이 주요 변수였으나 2017년도에는 근무연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그룹홈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시설장은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종사자는 81%가 근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급여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설장은 13.0%(불만족 87.0%)인 반면, 종사자는 시설장보다는 다소 높은 27.2%(불만족 72.7%)만이 급여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시설장들은 ‘종사자 처우개선(1위)’, 종사자는 ‘보수체계의 개선(1순위)’을 꼽고 있어 시설장과 종사자는 일에 대한 근무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급여만족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그룹홈 종사자의 자격증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과 1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룹홈 종사자의 자격증으로는 2급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의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자격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룹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룹홈 아동에게 ‘연락하는 친족이 있다’는 항목에 2014년 80%보다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2017년에 71.1%가 친족과 연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은 하고 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질적인 측면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리 및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연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룹홈 아동에게 제공되는 중점 프로그램 순위에서 ‘원가족 복귀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순위(7위)를 차지해 원가족 복귀지원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원가족 복귀지원 프로그램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원가족 복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아동의 원가족이라도 폭력적이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아동에게 위협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가족 복귀에 더욱 신중한 고려와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그룹홈에 입소한 후 학교나 학원에서 폭력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구들에게 그룹홈 거주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기에 사회에서의 낙인감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그룹홈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룹홈에서의 생활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이 원래 살던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룹홈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정 가정처럼 좋은 환경인지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룹홈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이 ‘집단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는 소규모이지만, 운영은 시설처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홈 내에서 입소 아동들이 겪는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그룹홈 입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그룹홈에서의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고 있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아존중감과 별개로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겠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게 됨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아동이 가정의 기관에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기제(불안, 우울, 공격성) 등에 대한 개인별 지도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하여야 한다.

2.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그룹홈이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그룹홈의 정체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룹홈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결과는 이전 2014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전에 제안된 내용들이 거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화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도록 한다.

1) 그룹홈의 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립

정부는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근거만 제정했을 뿐 시설에 준하는 지원에는 매우 인색했고 이로 인해 그룹홈 종사자들은 <표 5-1>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대표적인 예는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종사자 인건비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낮은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평가는 시설의 일유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과 관리의 부조화가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룹홈 또는 소수의 아동만 보호하려는 그룹홈의 경우 가정위탁과 ‘효율성’ 측면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룹홈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 5-1>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비교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예산	일반예산, 사회복지예산	복권기금예산, 일자리 창출예산
시설	시설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전액 국가지원	설치와 유지보수 전액 자부담
아동	아동보호 소요액 전액 지원	일반수급자 지정만 하고 이것도 자의적 지정문제와 주거비 제한 등 차별 존재
	• 자립요원 기준적용 배치 (아동 12,821명/자립요원 234명)	• 자립요원 미 배치 (아동 2,636명/자립요원 0명)
종사자 급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지원	노동시간이나 강도가 그룹홈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직급제 없이 기재부가 매년 자의적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 책정
근무 여건	8시간 본인 분담업무	행정, 회계, 식사준비, 빨래, 청소, 외부업무 등 야간 취침까지 함께 업무
운영	• 운영비 전액지원	• 비정상적 운영비 지원(31만원/월)

관리	점검, 감사, 평가 등	시설과 동일한 내용의 관리·감독

출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2018). 2018년 아동그룹홈 현황과 개선요구 현안. 내부 자료.

만약 아직도 그룹홈이 시설이 아닌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이는 가정위탁과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정위탁을 만들고 기존 그룹홈과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7명이 아닌 소수(3~4명) 아동을 보호하며 가정이라는 인식하에 종사자 가족과 함께 기거하며 운영하기를 원하는 그룹홈의 경우 가정위탁의 한 형태인 전문가정위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반대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면 보호아동의 지원금도 일반기초생활수급비로 해결하기 보단 아동양육비 기준안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외보호 유형별로 보호단가 산출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그룹홈 아동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로 지정하여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생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설로 규정해 놓고 보장시설이 아닌 일반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설내 종사자 가족이 거주해야 하거나 개인별 수급비를 받고 싶다면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고, 시설로서 가족거주 제한이나 그룹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로서 지정을 받으면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룹홈은 시설이지만 대형양육시설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과 집과 같은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공공성의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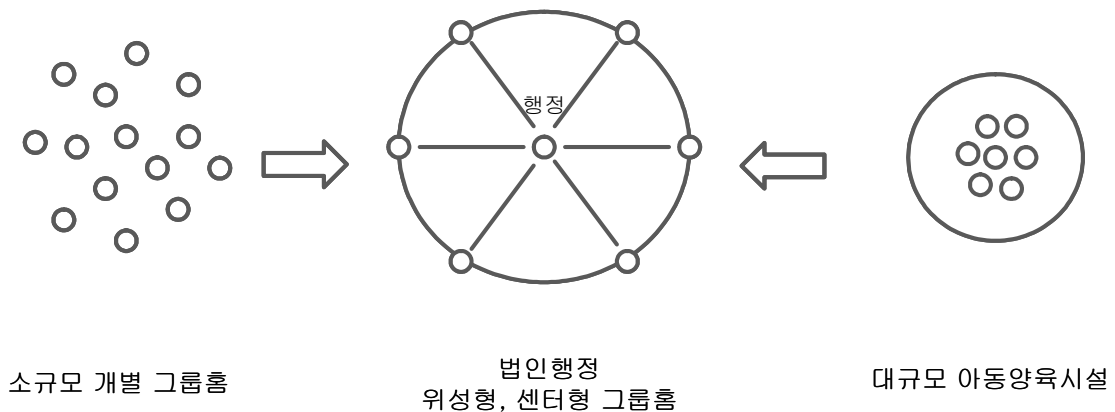
2014년은 그 이전 조사인 2008년에 비해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의 비율이 49.6%에서 67.3%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68.5%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 운영주체가 개인인 그룹홈보다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형 그룹홈을 지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개인보다 법인형이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형의 운영이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법인형이 하나의 그룹홈을 운영하기 보다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개인 그룹홈 몇 개소를 지역별로 묶어 법인화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그룹홈은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도 센터 중심으로 하여 행정과 교육, 돌봄이 분리되어 최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행정과 교육, 자립지원 기능을 맡고, 각각의 위성형 그룹홈에서는 돌봄에만 집중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그룹홈에 적정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시설별 서비스 수준이 다르므로 조속하게 그룹홈 서비스 기준 제정되고 업무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그룹홈이 아동학대 쉼터(그룹홈), 일반그룹홈, 사법형그룹홈 등 각기 다른 지원체계 속에 혼재되어 있다. 아동학대 쉼터(그룹홈)은 정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종사자 배치 기준과 인건비 기준 등이 일반그룹홈과 상이하다. 또한 사법형 그룹홈은 공식화된 그룹홈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법적 처분받는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운영비도 법무부(법원)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유형별 지원과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3) 시설보호의 방향성

미지원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지만, 미지원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지원 그룹홈의 신고를 받아주고 미지원 그룹홈으로 신규발생한 아동청소년을 배치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지원 그룹홈은 신고도 받지 말고 아동청소년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법인형 그룹홈에 아동을 우선 배치하고 만약 정원을 넘게 되면 그 법인에서 또 다른 그룹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센터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그룹홈의 운영방식에 따라 센터형과 개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기관에서 2개소 이상의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을 센터형 그룹홈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광수, 2013). 센터형 그룹홈은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 운영을 통해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배치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재교육을 받기가 용이하므로 소진을 예방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학습 등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종사자들 서로에게 상호지도감독의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형태로서 전문성의 제고 측면에 매우 유리하다. 센터형 그룹홈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중앙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시설장과 사무국의 행정요원을 배치하고 각 그룹홈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보육사 2인을 배치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과 사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홈은 가정형이라고는 하지만 개인형 1개 시설로서 효율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였고, 대형 아동양육시설은 소숙사형태로 변환하고 있지만 가정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림처럼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의 분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그룹홈은 법인형을 중심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룹홈을 위성형태로 갖는 센터형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수립되면 소규모 개별 그룹홈은 조직화되고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분화되어 센터형 그룹홈 형태로만 남게 되고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정익중, 2014, 201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설 중심 가정외아동보호의 방향

3.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천적 지원

1)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에 따라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는 요보호 아동의 운명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겨져 있으므로 아동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 가족과 아동을 분리해야 할 때 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되도록 ‘배치 기준’ 개발이 급선무이고 또한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보호가 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가정 위탁,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배치원칙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한 번 배치되면 18세가 될 때까지 그 보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정도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오정수, 정익중, 2017). 특히 아동입양에서 15세 이상 아동의 의사표시권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외 보호 배치에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만 10세 이상 또는 아동의 의사표시 능력에 따를 수 있도록 그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2) 자립지원 강화

2014년 조사에서 그룹홈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그룹홈 아동들의 생활상의 문제 1순위로 학습부진(32.9%), 2순위가 진로 및 자립(26.4%)로 나타났는데, 이번 2017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진로 및 자립(29.5%), 2순위가 학습부진(19.6%)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룹홈 퇴소아동들에 대

한 자립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의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에 있어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항목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지자체들이 그룹홈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자립지원대책이 강화되어 빈곤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아동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해 거점별로 자립형 그룹홈을 운영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자립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점형이나 센터형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면 3~4개 그룹홈 가운데 하나의 그룹홈은 자립형 그룹홈을 운영하여 자립을 앞둔 아동들의 자립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아동양육시설과는 다르게 그룹홈은 자립전담인력을 전혀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자립정착금도 지방별로 다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 30명 이상 1명(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가정위탁의 경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명,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각 1명으로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에는 자립전담요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아동들도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수를 감안하여 아동비율에 따라 최소 40명의 자립전담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규모에 따라 혹은 센터형에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전문가를 자립전담요원이나 순회 직원으로 배치하고, 이들에 의해 그룹홈을 퇴소하기 이전부터 발달단계에 맞추어 자립준비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별자립계획을 준비하고 연령별로 적절한 맞춤형 자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정익중, 2007). 이러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가정외보호 유형별 차별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원가정 관계 및 회복 지원확대

그룹홈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원가족이 회복되어 건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개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결핍과 외로움의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며, 아동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그룹홈, 시설 등 가정외보호의 목적은 원가정 등 가정환경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물리적인 안전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보호와 치료,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을 근거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에서 친부·친모 등 연고자가 있는 아동이 전체의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김통원 외, 2005). 그러나 친부모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그룹홈 실태조사에서는 그룹홈에 입소한 이후에 친족과 연락하는 정도가 71.1%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5년, 2008년 조사와 비교하여 원가족과의 방문횟수 및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가 생존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그룹홈처럼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통합되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정익중, 2007).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아동 지지망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적응 및 자립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신혜령, 2004). 불가피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그룹홈 생활기간 동안에도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가지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친가정과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요청된다. 강제적인 부모 책임감 부여 및 친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아동이 장기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정이 필요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할 때도 엄격한 심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가정외보호제도의 목적이 원가족 복귀와 자립인 점을 생각할 때 가능한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장기보호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구의 판정(심의)이 필요하고 또한 원가족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런 절차(심의)없이 아동을 원가족으로 보내야 한다. 그룹홈 입소 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68%나 되기 때문에 원가족 복귀가 과연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위하는 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배치는 물론 6개월에 1회 이상의 모니터링, 원가족 복귀 가능여부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오정수,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외보호 배치는 물론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과정도 쉽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경계선 지적 기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사이에 IQ 70-85사이에 속하는 범주를 말하는데, 낮은 지능을 가지면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하는 아동을 말한다(박현숙·최현기, 2014). 아마도 그룹홈 아동들의 상당수는 이에 포함되리라 판단된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은 모든 인지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기능과 최하위 수준의 학습성취도 특히 정보처리, 독해력, 셈하기와 같은 사고력 영역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였다(정희정·이재연, 2008). 이들은 주로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둔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취급받으며 대부분 제 학년에서 요구되는 학습수준을 습득하지 못하여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 당하는 사회적 부적응 문제도 함께 겪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을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아동을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과도하고 무리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육방법은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실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그룹홈에 입소하면 경계선 지적기능 문제를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지치료가 필요

한 경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된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의 학대, 방임과 유기, 가족 해체로 인한 상처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내재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현재 개별 그룹홈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그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4.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1) 일반예산으로의 환원

그룹홈 사업의 수행주체는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수행주체와 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다름에 따라 사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없다. 복권기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입양, 공동생활가정 등인데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선 일반예산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

2) 인력의 기본적인 처우 보장

시설의 운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개인이나 후원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확대, LH 지원 등 정부 지원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시설 지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 문제로 신규 유입이 정체되면서 시설장이 고령화되고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2014년 50.8%에서 2017년 62.5%로 증가하고 있고, 30대 이하의 경우 2014년 18.4%에서 2017년 13.7%로 감소하고 있다.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전문인력의 신규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 510개소 1,514명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직급, 근무연수, 야간 및 시간외근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인건비만을 지원 받으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오고 있다.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 1인 인건비 지원은 24,942,000원(퇴직금 및 기관 부담사회보험료 포함, 실급여는 167만원 내외)이다. 현재 그룹홈 종사자 처우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시설장과 보육사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룹홈 운영비 문제 또한 아동의 보호단가가 산출되면 그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사자 처우는 최소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처우는 동일해야 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을 그룹홈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룹홈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러한 소진은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처럼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정익중, 이경림, 이정은, 2010). 또한 기본적인 신분보장이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유인하기도, 이들의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기도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실무자는 종사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이 70.1%로 나타나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의 잦은 변경은 아동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기 쉽다(정익중, 이경림, 이정은, 2010; 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아동복지의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그룹홈아동의 장래는 그룹홈 실무자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룹홈의 아동청소년들은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일반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에게는 한없는 사랑 이외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아동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보호의 주체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룹홈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인건비는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은 현행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호봉, 제 수당, 4대 보험료 등이 책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급여 수준에 대한 대대적인 인상이 시급히 요구된다.

물론 우수인력 확보 등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1인의 인건비(연 22,554천원)와 월 24만원의 운영비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운영비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전달되기 어렵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성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그룹홈의 확대·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재정적 환경이 열악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이 그들의 열의와 헌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룹홈의 숫자를 단순 확대하기보다 각 그룹홈에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더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중앙지원단의 설립

그룹홈이 시설 간 편차를 줄이고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빨리 중앙지원단을 신설하여 데이터 구축,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중장기계획의 수

립, 전국적 단위의 이용아동의 현황 파악, 실무자 교육 및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익중 외, 2008; 정익중, 2014). 중앙지원단에서는 그룹홈의 기초 자료들을 DB를 통해 정리하고 적절한 평가틀과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며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그룹홈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중앙지원단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회 구조로는 제대로 된 지원단 역할을 하기 어렵다.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작동하기 어렵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이 각각 중앙지원단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하나의 중앙지원단을 만들고 이를 통해 DB구축,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침 개선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그룹홈의 대변자로서 정부의 그룹홈 관련 정책결정과정이거나 집행, 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나 결정자 등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조직으로서 그룹홈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감시 및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도 주요 압력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앙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인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로비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7).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
- 김광수(2013).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광수·조순실(2006). 아동그룹홈 실태비교연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김동희(2011). 시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정경희(2009).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47, 58-70.
- 김지연·이경상(2013).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원 외 (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 김형태(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최현기(2014).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a). 201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보건복지부(2016b). 2016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b). 2017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6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2018).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 신혜령(2004). 아동복지시설의 쟁점과 과제. 2004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오봉욱(2005).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경험이 농촌지역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7(1), 61-86.
- 오정수·정익중(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이상록·김은경·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상순(1997).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집단가정 운영. 제1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이지언·정익중·백종림·Batzolboo Byambaakhuu (2014).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25-155.
- 이태수·노혜련·함철호·김광수 (2001).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꽃동네 사회복지연구소.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5, 169-206.
- 임은주·최승숙 (2015). 초등학교 일반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의 탄력성 연구. 학습장애연구, 12(1), 47-68.
- 장영인 역(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서울: 인간과 복지.

- 정익중(2007).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프로그램과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13, 35-52.
- 정익중 외(2008). 아동청소년그룹홈 실태조사연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정익중(2014). 2014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정익중(2017).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책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익중 · 이경림 · 이정은(2010).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23-46.
- 정익중 · 이정은 · 이상균(2011).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사의 소진과 이직이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137-163.
- 정희정 · 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2018). 2018년 아동그룹홈 현황과 개선요구 현안. 내부자료.

〈주제발표 2〉

떠밀려 표류하는
그룹홈청소년의
살아내는 삶 이야기

박현정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홍나미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떠밀려 표류하는 그룹홈청소년의 살아내는 삶 이야기

: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I. 서론

아동복지법 3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형태로 가정외보호 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요보호아동은 4,592명이었으며, 이들은 양육시설에 1,400명 이상, 그룹홈에 500명, 가정위탁으로 1,200명 이상이 배치되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최근 실시된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이상정 외, 2017)에 의하면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1-4차 조사에 걸쳐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아동복지법 제52조),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특성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규모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룹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그룹홈은 가정외보호의 중요한 체계로 제시되면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종사자들은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이 잦은 편인데, 2014년도 그룹홈 실태조사(2014)에 의하면 그룹홈 실무자의 종사기간이 3년 미만인 비율이 70.4%로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자들의 소진과 잦은 이직과 변경은 거주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룹홈에 입소하기 전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가족해체 등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거나 원가족과의 분리에 따른 불안 등으로 안전한 관계경험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더욱 더 깊은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익중, 이경림, 이정은, 2010).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룹홈에 거주하는 당사자 청소년이 그룹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룹홈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로는 그룹홈 아동의 시설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손경숙, 변상해, 2007; 김형태, 2012; 김정화, 정익중, 2015; 안은미 외, 2016), 자립에 관한 연구(김예성, 이경상, 2015; 황정화, 박수지, 2017), 가정외보호 시설의 운영성과와 만족도 연구(정익중 외, 2012; 이상정 외, 2017)등이 있다. 그룹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적연구 접근은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나침반이 되고 있지만, 그룹홈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홈청소년의 경험을 담아내기 위한 질적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연구(김선민, 조순실, 2010), 그룹홈청소년의 설문조사 경험(양은별, 정익중, 2013), 그룹홈 시설장의 청소년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송승민 외, 2015)가 전부이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가정외보호시설을 옮겨 다닌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룹홈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 입소 경험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생애사건인 동시에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환점의 생애사건이다. 시설을 옮겨 다녔던 청소년들은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성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가정외보호시설 유형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위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한 가정외보호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 지냈던 과정을 시설 전원경험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그룹홈청소년이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원가족과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된 후 그룹홈에 입소되어 그룹홈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지냈던 시간들, 생활하고 있던 시설을 떠나 새로운 시설로 진입하며 겪었던 경험들을 일화로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일화들이 그룹홈청소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며 삶의 경험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룹홈청소년을 이해하고자 한다.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룹홈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은 어떠하며, 관련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그룹홈청소년은 대리위탁양육이나 일반가정위탁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알코올중독, 청소년 본인의 장기입원, 가정폭력, 성폭행, 성희롱 피해 경험 등 부정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외, 2012). 이혼, 학대와 같은 가족해체를 겪으면서 원가족과의 갈등을 지닌 채 입소한 청소년들은 입소 이후에도 사회적 위축 및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정선옥, 2002), 학교적응 뿐 아니라 시설 적응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손경숙, 변상해, 2007; 정원철, 이화명, 2014). 부모가 생존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시설 입소를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지지와 사랑이 철회되었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구차순 외, 2011; 이순형 외, 2001).

그동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시설, 그룹홈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이들이 취약하거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이라는 결핍 관점 및 병리적 관점이 주를 이루어왔다(김진숙, 2009; Whiting, 2000). 이로 인해 그룹홈청소년은 그들을 향한 편견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룹홈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낙인감은 가정의 보호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았으며(정연정, 김상곤, 2009), 그룹홈의 운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2).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외보호체계로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그룹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 비율과 규모 면에서 아동양육시설보다는 작고 가정위탁보다는 큰 그룹홈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규정을 따르며 지역사회 내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상적 외, 2017).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룹홈의 운영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학교와 관계 형성, 지역내 자원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18).

그동안 그룹홈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시설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는 시설또래관계, 시설직원관계, 피학대경험, 입소연령, 가족연락빈도, 시설내 형제, 부모결혼불화, 연령 등으로 밝혀졌으며(정원철, 이화명, 2014), 학교적응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낙인감, 사회적지지, 탄력성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김형태, 2012; 김수정, 김영미, 이화명, 2013; 안은미 외, 2016). 무엇보다 시설또래와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이상정 외, 2017). 그룹홈청소년들을 둘러싼 주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는 원가족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외보호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요한 자원이 되어 이들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정, 김영미, 이화명, 2013; Collins et al., 2010).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준비는 퇴소와 함께 시작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희망수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수준, 자아존중감, 시설선생님과 친구와의 애착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김예성, 이경상, 2015; 황정하, 박수지, 2017).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그룹홈청소년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룹홈청소년을 지원을 제공받아야 하는 취약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룹홈청소년들이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을 수용해 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들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질적 연구를 통한 그룹홈청소년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선민, 조순실(2010)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은 연구하였는데, 그룹홈청소년이 학대와 방임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또래와 어른들과 능동적인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된 그룹홈에서 거주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인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룹홈에 적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다른 보호유형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이나 자료조사는 없는 형편이다. 아동복지체계 내에서의 잦은 배치변화는 부적응 문제의 위험을 심각하게 증가시키게 된다(Ryan et al., 2008).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가정외보호시설에 배치되는 일부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보이지만(정익중, 2014), 한 보호유형에서 다른 보호유형으로 전원되어 배치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에 가정외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여러 가지 보호유형을 경험한 청소년 즉 보육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전원되었거나 그룹홈에서 그룹홈으로 전원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삶의 주체자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밀도있게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다. 연구참여자는 (사)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회의 협조를 얻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총 4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그룹홈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모든 연구참여자와 2회의 만남을 통해 1-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절차 등을 인터뷰 시작 전에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에 입소하였으며, 보육원이나 그룹홈에서 현재의 그룹홈으로 전원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4명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자 청소년이 거주하는 그룹홈 종사자와의 비공식 면접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성별	나이	학년	그룹홈 입소요인	현그룹홈 거주기간	첫소 연령	다른시설 거주경험

D	여	16	중3	- 미혼모 자녀 - 보육원에서 문제행동으로 전원	2년	1세	보육원 1-14세 그룹홈 14-15세 그룹홈 15-16세
E	여	18	고2	- 친부의 사망 이후 입소 - 이전 그룹홈의 과도한 훈육 (학대신고)건으로 전원	4년	9세	그룹홈 9-15세 그룹홈 16-19세
F	남	13	초6	- 조현병 부모의 돌봄 부재 - 전원이유 불명확	1년	11세	그룹홈 11-12세 그룹홈 12-13세
G	여	19	고3	- 친모의 교통사고, 친부의 알코 올 문제로 방임 - 보육원 원장의 구속(학대)으로 그룹홈으로 전원	6년	7세	보육원 7~11세 보육원 11~12세 그룹홈 13-19세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Clandinin과 Connelly(2008)의 내러티브 탐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여성,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 그리고 주류에서 탐구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탐구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은 인간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유기체라고 말한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storying)와 다시이야기하기(restorying)을 통해 경험한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과거 경험된 삶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경험되는 삶의 총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8). 즉,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의 조각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어져 우리로 하여금 삶을 조망하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염지숙,1999). 그룹홈청소년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룹홈에 맡겨지고, 시설을 옮겨 갈 수밖에 없었던 외부 상황들, 그룹홈에서 지내는 삶의 모습, 그 과정에서 성장하며 겪는 다양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내러티브 탐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 Clandinin과 Connelly(1998)는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라는 연구 방법의 틀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3차원적 공간이란 시간성(연속성), 사회성(상호작용), 장소(상황)를 의미하며, 4가지 방향이란 연구가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outward), 과거지향(backward), 미래지향(forward)으로 전개되는 방향성을 의미하며 장소 안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이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3가지 차원과 4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여자들이 그룹홈 입소 전과 후의 경험이 개인적/내적 조건과 사회적/외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고받은 외부 요소는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08)의 내러티브 탐구방법 수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전체 수행 과정은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기’ 둘째, ‘현장에서 텍스트로’ 셋째,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넷째,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다섯째,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이다. 이 과정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과정과 과정 사이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염지숙, 2003).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자는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을 소개받아 관계 맺기를 시작하였고, ‘현장에서 텍스트로’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시설장과의 심층면담을 계획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다.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심층면담과 현장관찰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즉시 전사 작업을 하였다.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단계에서는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 장소, 문제, 행동, 해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어떠한지 느끼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원가족에서 분리될 당시의 심리적 고통, 그룹홈에 입소하고 살아내는 과정에서 보육사,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룹홈 내부와 외부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3차원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이 내러티브 탐구 경우에는 이야기를 확인하기, 발현된 현상을 파악하기, 맥락적인 재료를 확인하기인데(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 청소년의 내러티브를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자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의미 단위로 묶어 제시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자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의 시작을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Dewey의 경험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가정(assumption)을 연구시작단계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국, 2012). 이러한 경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간 순에 의한 정확한 기억의 회상(recalling)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말하는 경험의 재구성적인 회상(recollecting)의 과정이기 때문이다(Crites, 1971). 현장텍스트 쓰기에 앞서 연구자의 경험을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도 두 명의 청소년과의 일화는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한명은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학교 여학생으로 보육시설에서 살고 있었다. 보육시설로부터 상담 의뢰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담관계에서 들이는 관계 맺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했었다. 어느 날 간식을 사주기 위해 데려간 슈퍼마켓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아이의 슬픈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늘 제공되는 것에만 익숙했던 아이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간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다른 한명은 늦은 밤 상담센터에 불쑥 찾아왔던 유난히 마른 고등학교 여학생이다. 친부의 학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이는 앙상하게 마른 팔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집에서 맞고 있을 동생을 염려하였다. 한 밤중에 머리가 피딱지로 범벅이 되어있는 동생까지 구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로 보내기까지 길고 긴 하루였었다. 친부와 분리되어 시설에 잘 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매가 함께 갔는지, 친부를 미워했지만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잠시 흔들렸던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지 듣지 못한 채였다. 당시 연구자는 당면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접근하였을 뿐, 시설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 있었으며, 관계 맺는 것을 왜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모의 학대로 분리되어 가정외보호시설에 배치되어 살아가는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최근 가정외보호로 그룹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환경과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에 거주하는 당사자 청소년의 목소리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성공적으로 자립한 소수를 통해서만 우리사회에 전달되고 있을 뿐이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가 입소하는지, 그룹홈에서 지내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퇴소와 자립까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발화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인생은 그 장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일 것이다. 이 연구는 그 이후에도 삶을 살아내고 있을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IV. 연구결과

1.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 이야기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중요하게 기억되는 과정 즉, 그룹홈 입소 전 가족의 상황, 입소 초기와 적응하기까지의 경험, 그룹홈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과 원가족의 의미, 전원의 경험, 자립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이 각자 삶의 주체자로 실존하는 모습이 이들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

D는 미혼모의 자녀로 대규모 보육시설에서 14년을 살았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술과 담배, 가출 등 비행문제로 지방 그룹홈으로 전원 되었는데,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보육원 친구들을 잊지 못해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보육원이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오길 원

했던 D의 요청과 폐쇄를 앞두고 있던 기관의 사정으로 현재의 그룹홈으로 전원 되었다. 전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친 성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E는 9살에 친부의 사망으로 그룹홈에 오게 되었다. E의 친모는 친부와 동거하면서 E를 출산한 뒤 사라졌으므로 E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 E가 친부와 살던 시기에는 친부가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처음 입소한 그룹홈이 학대문제로 신고 되면서 현재 그룹홈으로 전원 되었다. 과거 지냈던 그룹홈에서의 경험은 매우 힘들고 부정적인 사건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E의 어린시절을 빼앗아간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그룹홈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열정만 있으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사람으로 함께 살았던 동기, 그룹홈 선생님, 학교선생님과 후원자님들을 꼽았다. 현재 미래희망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현재 미술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F는 조현병으로 병원입원 중에 있는 친부,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모로부터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4 때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었다. 함께 지내 기만을 원하고 교육과 지원을 하지 못하는 친모를 원망하며 친모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였다. 불안정한 친모에게 실망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친모에게 사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원과정에 대해 함구하였으며, 현재 그룹홈에서의 생활을 만족해하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고 싶고, 명문 H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신을 다잡고 있다.

G는 영유아기 때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이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친모의 교통사고 이후 친부의 방임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는데, 그 모습을 견디다 못한 친조부가 물어 물어 G를 7세 때 대규모 보육시설로 보냈다. 보내졌던 보육원마다 폭력과 성추행 등의 문제로 전원 되었고, 현재의 그룹홈에 오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화학공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자립을 위한 주거를 스스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생애 처음 자신을 집을 계약하였다. G가 보육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겨지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부는 G가 퇴소할 즈음에 찾아와서 정부에서 제공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언니는 그룹홈에서 퇴소 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룹홈 퇴소 후 자신의 자립과 가족의 부양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에 대한 의미

본 연구에서는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여 13개의 범주와 5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그룹홈 입소 과정 직전의 상황은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황폐한 늪에서 부유’, ‘몸으로 기억하는 상처’의 범주로 분석하여 ‘원가족의 사지와 같은 상황’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룹홈에서의 삶 이야기는 그룹홈 입소 초기와 적응기로 구분하여 그룹홈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룹홈청소년의 심리적 풍경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룹홈 초기의 과정은 ‘어색하고 낯선 공간’, ‘적응을 위한 몸부림’, ‘울컥울컥 올라오는 고단함’ 범주들을 얻었고, 이 범주들을 통해 ‘온 몸으로 뿌리 내리기’ 주제를 얻었다. 그룹홈 적응기는 청소년의 전원 과정과 현재 그룹홈에서의 생활이 포함된다. 그룹홈청소년의 전원과정은 ‘폭풍같은 시간 속에서 부유’, ‘익숙해지기 위한 몸부림의 반복’, ‘호칭의 의미와 경계’ 범주들로 분석하였고, ‘떠밀려 반복되는 표류’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룹홈 경험은 ‘관계맺음의 이어짐과 틀어짐’, ‘기다림을 통한 평범한 일상’, ‘삼킬 수 없는 원가족의 그리움’의 범주들로 분석하였고, ‘흔들리며 적응하기’ 주제로 도출하였다. 그룹홈에서의 보호가 끝난 뒤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은 사회구조적 풍경을 중심으로 ‘퇴소와 자립의 언저리에서’, ‘보호종료자가 아닌 삶의 주체자로’ 범주로 분석하여 ‘고군분투의 내일을 향해’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도출한 범주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결과

주제	범주
원가족의 死地(사지)와 같은 상황	황폐한 늪에서 浮游(부유)
	몸으로 기억하는 상처
온 몸으로 뿌리 내리기	어색하고 낯선 공간
	적응을 위한 몸부림
	울컥울컥 올라오는 고단함
떠밀려 반복되는 표류	폭풍같은 시간 속에서 浮游(부유)
	익숙해지기 위한 몸부림의 반복
	호칭의 의미와 경계
흔들리며 적응하기	관계맺음의 이어짐과 틀어짐
	기다림을 통한 평범한 일상
	삼킬 수 없는 원가족의 그리움
孤軍奮鬪(고군분투)의 내일을 향해	퇴소와 자립의 언저리에서
	‘보호 종료자’가 아닌 ‘삶의 주체자’로

1) 원가족의 死地(사지)와 같은 상황

연구참여자들이 그룹홈에 입소되기 전 가족상황은 죽음의 땅과 같이 불안정하고 황폐한 상황이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었고, 당시 어

린 연구참여자들은 불안정하고 돌봄이 부재한 가정에서 두려움으로 신체·정신적 문제를 보이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다.

(1) 황폐한 늪에서 浮游(부유)

연구참여자들이 그룹홈이나 보육원에 입소한 첫 연령은 다양하지만 연구참여자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유아기를 가족과 함께 보냈다. 영·유아기는 주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어린 연구참여자들은 불안정한 가족의 경계 안에서 떠밀려 다니며,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겪는다.

엄마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셨는지 안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셨거든요.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E)

어릴 때 아빠랑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집도 많이 옮겨 다니고. 많이 작아지고 나중에는 반찬도 김치랑 밥 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는데, 엄마가 그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연구참여자 G)

(2) 몸으로 기억하는 상처

입소 당시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대와 방임의 경험은 소리 또는 냄새인 감각의 조각으로 몸에서 기억된다. 성장한 뒤에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황과 유사한 소리, 냄새 등을 접할 때마다 연구참여자들은 힘들었던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저랑 언니랑 둘 다 방치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막 먹지도 못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보고, 막 그, 그 어릴 때 그렇게 있다가 (연구참여자 G)

동생을 막 죽이려, 죽이려 들 때도 있었고, 막 술 때문에. 술 냄새. 제가 학교 다녀오면 이불이나 그런데 담배 빵으로 지저저 있고, 그런 게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연구참여자 F)

2) 온 몸으로 뿌리 내리기

(1) 어색하고 낯선 공간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을 통해 학대와 방임의 상황에서 구원받았지만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한다.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을지라도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을 긴장되고 낯선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첫 날에 할아버지가 저희 이렇게 보내고 가려고 할 때, 제가 막 할아버지 잡고 막 울었어요. 발 잡고. 보내지 말라고. 한 번도 안 윤적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G)

(2) 적응을 위한 몸부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에서의 생존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설고 척박한 공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버겁고 힘들었던 환경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쳤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맞을텐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맞을까봐 병원도 못가고 그냥 뒀었어요. 다치고 온 게 뭐라고. (연구참여자 G)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에 물혹 뭔가 생겼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미끄러져서 잘못 그러니까 혼자 넘어져서 그런 식으로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연구참여자 E)

(3) 울컥울컥 올라오는 고단함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입소한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부모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하는 자신의 현재 위치,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존의 물음이 울컥 올라왔던 순간을 아직도 힘들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음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절박함으로 자해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은 무겁고 고단한 과거로 남아있다.

친구 두 명한테 ‘부모님이 안계셔서 시설에 살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다음날부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저를 이제 거지라는,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 때부터 왕따가 시작... (연구참여자 G)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는지부터 엄청 살기, 왜 살기 싫어하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연구참여자 D)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죽는 거를. 실제로 올라갔던 적도 많아요. 혼자 굶고 혼자 멈추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었죠. 왜냐면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저 좀 힘든 거 알아달라고. (연구참여자 G)

3) 떠밀려 반복되는 표류³⁾

전원과정은 폭풍처럼 거세게 연구참여자들을 흔들었다. 전원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불안한 시간이었으며, 인생의 바다에서 부유하며 지낼 수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을 더욱 견고하고 더욱 단단하게 살아내도록 밀어내고 있었다.

(1) 폭풍같은 시간 속에서 浮游(부유)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에 오기 전에 보육원이나 다른 그룹홈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다른 아동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하여 전원이 결정된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보육원이나 그룹홈의 내부적인 문제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신고되어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또 다시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시간을 온 몸으로 견뎌내야 했었다.

저 말 안 듣는다고... 가출 좀 여러 번 했고, 담배도 권하고 술도 권하고... 완전 가판이었죠. (연구참여자 D)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여기로 왔어요, 제 어린 시절을 뺏어간 사람이에요(연구참여자 E)

거긴 정말 다 있었어요. 성추행, 성폭행. 엄청 논란되고 재판 받았는데,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연구참여자 G)

개인적인 문제로 전원이 된 연구참여자는 처음 겪는 전원과정을 수용하지 못해 학교를 무단결석 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전원과정을 다시 한 번 겪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면서 힘들지만 조금씩 자신의 거친 모습을 다듬어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폐쇄되거나 신고되었던 시설에서의 경험은 학대와 방임으로 얼룩진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이후에 또 다시 엄습한 두려운 폭풍의 시간이었다. 두 차례의 보육원 생활에 지친 한 연구참여자는 소규모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에 입소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전원하였으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학교를 안 갔어요. 마음을 못 굳힌 거예요. (연구참여자 D)

3) 국어사전에 의하면, 표류는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해냄’을 의미한다. 백과사전에서는 표류를 ‘선박 등의 물체가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의 모습을 “표류”하는 것으로 은유하였다.

조용히 제가 죽었어요, 성질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니까, 친구들도 더 빨리 사귀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너무 맞으니까 지쳐서. 좀 작은 데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룹홈이라는 곳이 있대요. 좀 소규모로 생활하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거밖에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G)

한번 저랑 크게 부딪혔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딱... 그러니까 애가 지 할 거는 딱 하는 애예요 (연구참여자 G 시설장)

(2) 익숙해지기 위한 몸부림의 반복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폭력과 상처로 인해 또 다시 새로운 시설로 옮겨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시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또 다시 낮은 상황이 될까봐 두렵지만,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몸부림 칠 수밖에 없었다. 익숙해지는 데 일 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과거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룹홈에서 살아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다.

2학년 때 와가지고 거의 2학년 말 즈음에 이제 정을 붙여가지고... (연구참여자 D)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전 일이면 그냥 저는 연연 안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저는 현재가 제일 중요 (연구참여자 F)

(3) 호칭의 의미와 경계

무엇보다 그룹홈에서의 호칭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 같았다. 그룹홈의 규칙에 따라 시설장과 보육사를 엄마, 이모(삼촌), 또는 선생님으로 불렀다. 그룹홈의 규칙과 보육사의 특성에 따라 호칭을 다르게 불러야 했는데,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도 하고 멀게 유지할 수도 있는 호칭에 여전히 민감하였다.

예전 집에서는 이모로 불렀는데 그룹홈에서는 애들을 이모나 엄마로 부르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으로 부르게 하라고 (연구참여자 G)

엄마도 아닌데 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 아무리 좋아도 선생님이 엄마가 될 수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E)

이모라고 부르면 뭔가 좀 가족이 생긴 것 같잖아요. 보통 그룹홈에 오는 애들 보면 뭐 이혼을 하셨거나, 웬만해서 뭐 형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 돌아가셨거나, 버려졌거나 어쨌든 다 가정의 좋지 않아서 온 애들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떨어진 느낌이라서. (연구참여자 G)

4) 흔들리며 적응하기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살고 있는 그룹홈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끈끈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상호의존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향한 관심과 지원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때 안전함을 느꼈고, 마음의 힘을 채울 수 있었다. 그룹홈 구성원 중의 한명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때로는 거칠게 반항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무심한 비교와 일관되지 못한 양육방식에 상처받기도 하면서 나이트를 늘리고 있었다.

(1) 관계맺음의 이어짐과 틀어짐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로와 지지가 되지 않는다. 부모의 병이나 가난보다 정서적 고립이 힘들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장과 보육사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함께 머물렀던 순간을 눈부신 찰나로 기억하고 있었다.

애기도 잘 들어주고, 말 안들을 때 혼나긴 하는데 잘해주셨어요. (연구참여자 D)

(자해하면) 혼내면서도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시고, 제가 이제 좋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말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같이 자기도 하고 밤새 애기도 하면서 (연구참여자 G)

이러한 이어짐의 관계는 시설장과 보육사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언니와 함께 취미와 불평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장되었고, 그룹홈 구성원 뿐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후원자와의 관계로도 변했다.

약간 이런 건 마음에 안들고 이런 건 마음에 들고 그런 게. 그런 게 뭔가 맞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노래 듣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연구참여자 D)

친구 부모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예요. 지금도 여기 지원해주시고 계세요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은 안전한 관계경험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생활교사의 작은 비난이나 꾸지람 하나하나가 모두 상처로 다가왔다. 보육사의 최애아동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

만 뜻대로 되지 못할 때는 무력해져 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보육사가 바뀔 때마다 규칙이 바뀌는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의 안전감을 거세게 흔들었다.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성공할 수 없어’ 말로 찢러요 (연구참여자 G)

쌤이 언니 편이라는 걸. 오냐오냐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또 맞춰서 생활해야. (연구참여자 D)

항상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규칙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항상 다시 적응하는 거.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 (연구참여자 G)

(2) 기다림을 통한 평범한 일상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그룹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그룹홈 사람들과 의논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니며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였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가고, 학원가고,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씻고 자요. (연구참여자 F)

대학진학, 미술입시로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E)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연구참여자들이 그룹홈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룹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속앓이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장악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버틸 수도 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 변화의 시간을 기다려준 선생님들의 보살핌과 그룹홈의 일관성 있고 탄력적인 규칙은 평범하지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말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사람, 감정 기복 있는 애들이 맘에 안들지만, 신경 안쓰고 지내요(연구참여자 E)

많은 식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친하지 않아도 같이 사니까 마음도 교감되고 하는 식구들(연구참여자 F)

여기 규칙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못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연구참여자 D).

(5) 삼킬 수 없는 원가족의 그리움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의 구성원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였고, 편하고 친숙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원가족의 그리움을 삼키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어도 원가족을 애뜻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궁금해 하였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다가서려고 노력하였다. 부모의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절망적이었다고 호소했던 연구참여자도 부모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두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랑 피가 섞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한 번도 못 가져 본 거에 대한 궁금증(연구참여자 E)

저한테는 핏줄이 언니랑 아빠밖에 없고, 약간 이해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생각을 해보고(연구참여자 G)

(가족과) 좋았던 때도 있었죠. 가끔 있었어요. 맨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와라, 다시 와라’ 해놓고 또 다시 위태위태하고. 집안이 절망적이고 거기에 살면 제가 제대로 앞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연구참여자 F)

4) 고균분투의 내일을 향해

(1) 퇴소와 자립의 언저리에서

그룹홈청소년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만18세에 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퇴소의 다른 이름은 자립이다. 시설장과 보육사로부터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립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연하기에 두렵고 낯설기만 하다.

자립하면 웬지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차가운 물로, 찬물로 씻어야 될 것 같아서 찬물로 씻어야지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맨날 연습했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도 (연구참여자 D)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 그룹홈에 왔던 연구참여자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원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이제는 성인으로서의 몫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회에 내보내지지만, 경제능력이 없는 친부와 지적장애 언니를 둔 연구참여자는 자립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어쩔 땐 짐 같구요, 어쩔 땐 가족이구요. 나중에 제가 아빠를 데리고 살아야 하고(연구참여자 G).

언니(지적장애3급)는 저랑 살고 싶어해요. 언니를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살게 된다면 외박을 할 수도 없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언니를 밥을 차려줘야 되고, 언니를 씻겨줘야 할 수도 있고(연구참여자 G)

(3) ‘보호종료자’가 아닌 ‘삶의 주체자’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립은 낯선 용어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에서 자립해 나간 형, 언니가 그룹홈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모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앞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대학생이 된 언니는 규칙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언니로서의 권위라고 해야 되나,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은 그룹홈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힘들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의 한 장면으로 가지고 있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며, 보육사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엔 이미 높은 자존감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쌓이고 있었다.

저는 장래희망이라기보다 꿈이 있어요. H대.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거든요.(연구참여자 F)

자서전 써서 책으로 내려면, 제가 이걸 어떻게든 버티고.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설에서 자란 애들은 다 깡패가 되고 제대로 못산다.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저는 그거를 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연구참여자 G)

감사한 분들 많이 만났고, 저를 잘 키워주시고 계시니까 진짜 감사하죠. 제가 필요할 때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E)

그룹홈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바라보는 연구참여자, 이제 곧 퇴소를 앞둔 한 연구참여자가 대학생활을 위해 외부 장학금을 직접 찾아나서는 모습은 주어지는 지원에만 의존하는 ‘보호종료자’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삶을 헤쳐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유롭고 통금 시간도 되게 넓고,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열정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세요(연구참여자 E)

저희 학교에는 그런 장학금이 없고요. 외부에서 좀 찾아보려구요. (연구참여자 G)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원 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들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룹홈에서 지내는 삶과 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연구 질문은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은 어떠하며, 관련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었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그룹홈청소년이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내러티브탐구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그룹홈 거주기간과 연령이 다양하며 시설을 옮겨 다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삶과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그룹홈청소년은 입소 과정 직전 돌봄이 부재한 ‘원가족의 사지와 같은 상황’에서 온몸으로 트라우마를 겪어내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입소 초기의 과정은 긴장되고 낯선 공간으로 남아있었으며, 생존을 위한 적응을 위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온 몸으로 버티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전원과정은 폭풍처럼 거세게 그룹홈청소년들을 흔들었고, 거대한 인생의 바다에 부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아픈 시간이었다. 한편, 이러한 부유의 시간은 거친 모습을 다듬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 구성원들과 이어짐과 틀어짐 관계를 반복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 흔들리며 적응하고 있는 그룹홈청소년에게 원가족은 삼킬 수 없는 그리움이었으며 절망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동시에 그룹홈청소년은 퇴소와 자립의 언저리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자기 존재를 구체화하였다.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그룹홈청소년의 삶에 대해 이해된 바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홈청소년의 입소과정에 대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식적 행정절차에 의해 입소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발견한 이들의 개별적인 정보망을 통해 시설에 입소되었다. 당연히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나 치료적 개입이 들어 설 여지가 없었다. 최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받으며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배치가 되고 있지만, 배치과정에 좀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즉,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가정외보호체계에 진입할 때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 대한 면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와 방임, 가족의 해체 등 부정적 경험이 높은 아동에게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은 또 다른 부정적 스트레스 경험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치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므로 현재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이 해당 아동을 조사, 검토하여 대리양육이나 위탁보호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아동평가를 위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배치 및 연계,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정내용과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된 배치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룹홈에 배치된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적응 기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분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인큐베이터 기간을 정하여 그룹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치과정에서 작성된 아동의 심리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초기적응과정인 이 시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개입이 조속히 연결되고,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체계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심리치료 경비는 담당 그룹홈에서 개별적으로 감수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원되어 그룹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시설장과 보육사는 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다루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룹홈에서 먼저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함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원가족으로부터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학대와 방임에 노출된 아동들은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때 문제 행동은 증상일 뿐 이들의 핵심 정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깊이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낀 기억이 없는 사람의 뇌에서는 사람의 친절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으므로(Nelsona, Pankseppb, 1998), 이들은 보육사와 또래 구성원들의 관심과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룹홈청소년들의 시행착오를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에 처음 배치되는 보호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전원되어 배치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인큐베이터 과정은 필요하다. 보호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불안정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안정되지 못한 공간을 떠나 쉼터 등을 거쳐 새로운 거주 시설로 옮겨 다녀야 하는 경험은 익숙해 질 수 없는 과정이다. 이들이 그룹홈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심정, 재경험되는 불안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겪었던 부정적 경험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발견하고 알아차려준다면 그룹홈

청소년의 살아내는 과정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와 그룹홈청소년의 관계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룹홈청소년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룹홈의 시설장·보육사와 청소년의 관계는 또래 친구관계를 포함하여 폭넓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이 양육 받은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시설장이나 보육사들도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양육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을 것이다. 양육자들이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풀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 할 때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보육사들과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했고, 일방향적인 관계에 상처 받기도 하였다. 반면, 일관된 규칙과 합리적으로 결정된 규율에는 수긍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가 그룹홈 아동·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일관성있는 태도로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보육사들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별로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홈 아동·청소년들과 개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지원하고,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해야 한다. 규칙이나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며, 관계를 유지하는데는 자애로운 양육태도가 요청된다. 관계에서 갈등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사들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요청되며, 필요에 따라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장과 보육사들은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물리적인 ‘연령’에 해당하는 행동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들이 부정적 경험을 겪었던 시간과 과정을 우선적으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청소년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지만, 이들의 내면아이는 여전히 그 아픈 시간에 머물러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 때문에 더 이상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룹홈청소년들은 호칭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워 하였다. 호칭은 관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다. 인터뷰 했던 연구참여자 E 시설장은 어떤 호칭을 사용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호칭을 부르느냐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호칭을 비롯한 그룹홈의 방침들은 그룹홈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공유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룹홈청소년들은 보육사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해 규칙이 변경되는 과정을 힘들어 하였고, 전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시설마다 다른 규칙들에 적응하는 과정을 버거워 하였다. 안정된 관계 경험,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는 불안정한 관계의 경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룹홈청소년들이 안정된 관계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교육과 슈퍼비전의 제공과 함께 보육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폭발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야하는 이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근무시간 조정 등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 전원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룹홈 시설장과 보육사의 전문성과 함께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기

관을 표류했던 경험으로 인하여 세상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쌓였던 분노와 불안정한 정서는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청소년의 문제를 시설장이나 보육사 개인의 헌신적 태도로 감싸 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그룹홈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일임한다면, 게다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경우 그룹홈에서는 전원 청소년을 꺼릴 수밖에 없다. 표류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제공과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 및 치료기관이 그룹홈과 연계되어 이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러한 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위원회의 활용이 요청된다.

다섯째, 그룹홈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원가정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친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를 이해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도 그룹홈청소년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들은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의 존재여부, 부모와의 만남 여부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홈청소년의 원가족 만남은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과의 만남이 시설보호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정원철, 이화명, 2014; Jones, 2013)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Fanshel et al., 1990)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부모가 생존한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양육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그룹홈처럼 가족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통합되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정익중, 2014). 가정의 보호를 떠나게 되면 원가족을 만나게 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홈청소년들이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상정 외, 2017). 이러한 접근은 그룹홈청소년들이 미래의 가족을 긍정적인 표상으로 재확인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과 만남을 유지하였던 한 연구참여자는 퇴소 후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주거복지를 기다리며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친부의 문제로 힘들어하였다.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사회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에 부딪힌 것이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으로 분리되었는데, 청소년의 자립 후 다시 이러한 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을 원가족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과정뿐 아니라 동시에 자녀가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동안 원가족이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가족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원가족 복귀계획을 그룹홈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대책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그룹홈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에 관한 것이다. 자립 프로그램은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 그룹홈청소년들에게 자립은 퇴소를 의미하지만 자립은 또 다른 낯선 두려움이지만, 이미 자립하여 살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자립 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룹홈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주 기간 동안 자립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립 프로그램은 퇴소 전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홈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립을 위한 접근들이 그룹홈청소년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위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수행과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구차순, 이승민(2011). 시설보호 아동의 원가족 분리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31-60.
- 김병국(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선민, 조순실(2010).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 연구: 빼돌 혹은 빼박한 선으로 그린 우리집. 한국사회복지학, 62(1), 31-53.
- 김수정, 김영미, 이화명(2013). 아동양육시설 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및 스티그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27-52.
- 김예성, 이경상(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8032.
- 김정화, 정익중(2015). 피는 물보다 진한가?: 주양육자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45, 25-55.
- 김진숙(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형태(2012). 그룹홈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211-234.
- 보건복지부(2017). 요보호아동현황보고 통계정보보고서.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 손경숙, 변상해(2007). 그룹홈청소년의 정서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에 있는 청소년과의 비교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2), 119-152.
- 송승민, 김수지, 김민정, 조인영(2015). 그룹홈 시설장의 청소년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215-251.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은미,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설, 정익중(2016).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4, 145-172.
- 양은별, 정익중(2013).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가?: 그룹홈청소년의 설문조사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43, 29-63.
- 염지숙(2001).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t): 그 방법과 적용. 질적연구학회, 37-45.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119-140.
- 이상정,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설, 정익중(2017).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97-119.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 39(4), 79-89.
- 전준형, 이수현(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5-28.
-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7.
- 정연정, 김상곤(2009). 교육복지실천에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9, 97-123.
- 정원철, 이화명(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 정익중(2014).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연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정익중, 우석진, 강현아, 전종철, 이정애(2012).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linder-Oaxaca 분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4), 107-127.
- 정익중, 이경림, 이정은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1, 205-234.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6).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황정하, 박수지(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19-143.
-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98).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8).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1998). 내러티브 탐구.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옮김. 교육과학사.
- Collins, M. E., Spencer, R., & Ward, R.(2010). Support youth in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Formal and informal connections. *Child Welfare: Journal of Policy, Practice, and Program*, 89(1), 125-143.
- Creswell, J. W.(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학지사.
- Crites, S. (1971).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9(3), 291-31.
- Fanshel, D., Finch, S. J., & Grundy, J. F.(1990). Foster Children in a Life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nes, L.(2013). The family and social networks of recently discharged foster youth.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6(30), 225-242.
- Nelson, E. E. & Panksepp, J.(1998). Brain substrate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ontributions of opioids, oxytocin, and norepinephrine, *Neuroscience & Behavioral Reviews*, 22(3), 437-452.

- Ryan, J. P., Marshall, J. M., Herz, D., & Hernandez, P. M.(2008). Juvenile delinquency in child welfare: Investigating group home effec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9), 1088-1099.
- Whiting, J. B.(2000). The view from down here: Foster children' s stories. *Child and Youth Care Forum*. 29(2), 79-95.



〈토론〉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문

정선욱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7년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결과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심층연구를 통해 본 아동보호정책방향 원고를 중심으로

정선욱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글을 읽고 토론하게 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의 의미가 더 크게 드러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편의 글을 읽었는데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공성 강화 측면의 접근이 필요

- 공공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근 공공성 논의에서는 형식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으로 공공성 차원을 구분함.
- 형식적 공공성은 행위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이나 시장체계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영역을 정부 및 공적기관이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 즉 정부나 공적기관이 행위주체로서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시장이나 민간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
- 형식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동생활가정은 정부가 공공의 재원(보조금)을 투입하고 개인이나 법인 등의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형식적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적용)되어야 함. 또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정부의 당연한 통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및 관리감독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
- 내용적 공공성은 행위주체가 아닌 행위 목적이나 가치에 초점을 둠. 행위 목적

이나 가치에는 민주성/공개성, 투명성, 책임성/효율성/효과성, 공익성, 공정성 등이 있음.

- 책임성: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 민주성: 운영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공공기관,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들과 민주적인 관계 형성
- 투명성: 투명한 조직 운영

○ 내용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동생활가정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책임성 관련).

- 책임성 관련 고려사항: 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다른 보호조치, 특히 시설보호에 대해 갖는 서비스 우위(예, 낙인감 감소, 높은 원가정 복귀, 아동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 측면이 주로 논의됨. 시설보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향후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자체의 서비스 품질 기준(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해당)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책임성이 논의될 필요 있음. ② 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고민: 신고제의 제한점에 대한 인식. 실제 공동생활가정 신고절차를 보면,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 검토(20일, 시군구 아동복지담당 부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관련 사항,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 결재 => 신고증 발급. 개인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③ 법인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고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에 덧붙여 법인의 공공성 실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필요(예: 법인 인증제). ④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용안정성: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⑤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개선: 아동 개개인의 최상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예; 아동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확인)
- 민주성 관련 고려사항: 공공기관과 공동생활가정 간의 거버넌스 구축, 보호대상 아동 가족과 공동생활가정 간의 양육 동맹 구축, 보호대상아동과 종사자(시설장) 간의 민주적 관계 마련 등

2. mix method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 있음

- mix의 유용성: ① 양적/질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합하여 이론적 확증(corroboration) 가능, ②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내어 표면화하는 정교화

(elaboration), ③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 주제를 창시(initiation)

- 이러한 점에서 두 발표 원고에서도 mix method가 갖는 장점을 찾아 발전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동생활가정에서 원가족과 연락하는 비율이 높게 유지된다는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존감 높고 우울불안 높고 공격성 높다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질적 연구 p14, p15에 있는 원가족 관련 이야기를 연결할 때 깊은 이해가 가능함.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원가족 지원서비스 개발에서 고려할 점을 찾을 수 있음.

3.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성별 이슈

-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등에서 남자 아동의 친애성,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음(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개방-폐쇄에서도 남자 아동이 양육태도를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자 아동들의 경우 남자 아동들에 비해 아동생활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양육태도)을 폐쇄적이고 거부적으로 느끼는 이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심리적 양육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개방-폐쇄: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경향, 친애-거부: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해주며 권위를 무조건 존중하고 윗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

〈토론〉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문

장영신 실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회

장영신 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1.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문제점

□ 종사자 급여 문제

- 아동복지시설은 정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그룹홈·지역아동센터는 제외됨
- 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31시간, 평균임금은 208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연장근로시간 월평균 53시간)
-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되어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 사회적 일자리 :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창출되는 저소득층의 취업유도를 위한 일자리

“그룹홈 종사자는 대형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1년 된 사회복지사나 30년 된 나 같은 사람의 임금이 같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용이 나오지 않고, 자립을 도울 요원이 지원되지 않아요. 11가지 차별을 받는데, 이걸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그룹홈 사회복지사는 월평균 231시간 일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362시간 일한다(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평균 임금은 208만원. 여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실질 임금은 165만원에 불과하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7530원)을 계산하면 최소한 237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9만원(실질 임금 기준 72만원) 적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160만~175만원이다. 최저임금(157만원)보다 많아 보이지만 근무시간 감안하면 최소한 197만원 받아야 한다. 둘 다 최저임금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룹홈 복지사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62%, 지역아동센터는 69%에 불과하다

[출처: 중앙일보] 해체가정 아이, 자식처럼 돌보는데 ... 복지사들 '열정페이'(2018.05.04.)

□ 운영상 문제

- 그룹홈과 관련된 부서는 보건복지부(운영), 국토교통부(주거), 고용노동부(일자리), 기획재정부(예산)로 분산되어 있음
 - 운영 예산을 보건복지부 본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책정(복권기금 관리는 기획재정부)
 - 지원받는 연간 운영비는 5,000~7500만원 수준
-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에는 운영비가 부족해 사비까지 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영비원비(피복, 의료, 연료 등 사용제한)는 마지막 분기인 10~11월에 지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어려움
- 전담 부처의 부재로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아 15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부실운영’이라는 지적 존재
- 8월 6일부터 시설장의 가족과 아동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대표가 자비로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 이용자(아동) 문제

-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과의 이용 서비스에서 차별 존재
 - A 도에서 2015년 11월 진행되었던 중국 해외연수에 참가한 45명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38명이 참여한 반면, 그룹홈 아동은 4명, 가정위탁 아동은 3명 참가
 -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그룹홈 아동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참가비용 등 재정적 문제) [출처 : 중부일보] 그룹홈의 빛과 그림자(2) 차별받는 그룹홈 종사자(2017.05.23.)

<표 1>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비교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유형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예산편성	일반 사회복지예산	복권기금 일자리예산
시설지원	시설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전액 국가지원	시설설치와 유지보수 전액자부담

아동지원	아동보호 소요액 전액지원	수급자 지정만 하고 이 또한 자의적 지정 문제와 주거비 제한 등
종사자 급여·근무 여건	-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아동경력 3년 이상 등 - 보육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등	동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지원	호봉·직급 구분 없이 정부(기재부)에서 매년 자의적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급여 책정
	근로기준법 적용 (8시간 본인 분담업무)	- 행정, 회계, 식사준비, 빨래, 청소, 외부업무 등 야간 취침까지 함께 함 - 야간근무, 휴일근무, 명절근무, 수당 등 미적용
운영	- 운영비 전액지원 - 지원체계 수립지원 - 자립지원요원 전원배치 - 보건복지부 관리	- 비정상적 운영비지원 - 지원체계 미비 (중앙과 지방지원센터) - 자립지원요원 미배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리
관리	점검, 감사, 평가 등	동일

2.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정책방향

: 아동보호체계의 형평성

□ 요보호아동 배치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는 아동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재는 의사표현이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선택보다 지자체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
- 원 가족과 아동을 분리할 때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배치기준’ 개발이 중요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의 현실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그룹홈 종사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중앙 정부사업(비분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배제
- *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법정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무가 월 58시간으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심각함(2016. 10. 사회복지분야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년 기준 그룹홈 운영비(개소당 월 28만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6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정부로부터 시설 기능보강비나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운영비까지 마련해야 함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전담요원의 배치 필요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자립전담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아동그룹홈에도 자립전담요원의 배치 필요
- *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0명 이상 1명(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 가정위탁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명,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각 1명(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1])

<표 2> 전국 아동자립전담요원의 배치 현황

구분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자립지원요원 수	234	18명(중앙 1, 지역 17)	-

- 그룹홈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낮은 지능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 하는 아동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음
-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과도하고 무리한 학습을 시키지 않도록 종사자는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개입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단순한 보호를 넘어 학대, 방임, 가족 해체로 인한 정서적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인력 배치 필요

□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 다른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당수 지자체들이 그룹홈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시설 규모에 따라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전문가를 전담직원이나 순회 직원으로 배치 혹은 거점별 자립형 그룹홈 운영 필요(전문인력 배치, 자립교육 강화)

〈토론〉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문

박현동 대표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와 서비스

그룹홈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

박현동 대표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경기북부지역에서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그룹홈)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크게 시선을 집중 받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룹홈에 대하여 5분 10분 별도로 소개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상화가 되기 위한 사회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보고서라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보다 절감했다고나 할까요? 맞아 바로 우리 아이들에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며 읽고 또 읽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하는 마음에 미안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온몸으로 아파하는 아이들

정말 정말 힘들어한다. 첫 입소에서부터 쉽지 않은 기 싸움과 자신의 상처 속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선생님이 나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들에게 또 다른 아픔은 그 큰 아픔을 뒤로 하고 다가가보면 그룹홈에서 만나는 친구와 언니, 동생들은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또 다른 상처를 가진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고 나면 이제는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아내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버거운 삶을 살아내고 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누구나 생애주기적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성장통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전쟁이 되어서 나타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는 시작된다.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뭔가 달라요? 그룹홈 선생님들

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고 한다. 맞다. 선생님이 달라야 한다. 기존에 삶의 방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상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적응미달이나 부적응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상대해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대한 신선했

그룹홈 입소 청소년 7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던 것을 가지고 3가지 차원과 4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특별히 내러티브 탐구방법(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텍스트로, 텍스트구성하기, 연구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까지)은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그룹홈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힘듦과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한계점을 현장에서의 투덜거림으로 표현하던 것을 학문적인 접근과 완성으로 전개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싶다.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을 듣고 나도 한마디

첫째,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가정외 보호체계에 진입할 때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 대한 면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룹홈 입소청소년들에게 원가족과의 만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이다. 주양육자인 그룹홈 선생님들의 양육단계에서 원가족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사정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사정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변경사항(그룹홈부분)에는 '입소 및 퇴소' 신설부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은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입·퇴소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둘째,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에게는 인큐베이터 기간을 정하여 그룹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큐베이터 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입소 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초기적응프로그램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 정서적 파악과 환경체계를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최종입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

히 경계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간단한 부적응이 아닌 병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가 그룹홈 아동·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현재 3인 체계는 그룹홈의 혁명적인 발전이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2인 체계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3인 체계는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이라 하여도 3인 체계의 근무환경은 매우 높은 근무강도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1인 근무시간이 주당 72시간이 넘는 것과 급여체계가 근무 연수와는 상관없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는 보상체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룹홈 근무연한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보다 턱없이 짧다.

주 양육자인 그룹홈 선생님들의 잦은 교체는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보장 할 수 없는 취약부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체계에서의 그룹홈 선생님들의 번 아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재교육과 슈퍼비전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슈퍼비전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갈등, 선생님과 선생님과 갈등,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심한 갈등에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근접성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룹홈 3-4개 소당 1명에 전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별히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에 배치되어 있는 임상심리사에 대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넷째,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맞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원가족 복귀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원가족이 치료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룹홈 선생님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원가족 방문 이후 안정감이 깨지고 또 다른 부적응이 나타난다. 그 모든 피해는 또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의 몫이다. 참 힘들다. 현재 원가정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 치료재활 지원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현실상 함께 할 원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다섯째, 그룹홈에서 퇴소 후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마지막 글에 자립이 그룹홈 청소년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위협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수행과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는 문구는 그룹홈의 현실이지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문구다.

자립은 자립을 전제로 한 경우에 계획이 아닌 실행이 될 수 있다. 즉 그룹홈 아동 청소년들은 입소와 함께 자립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그룹홈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코디네이터들이 순회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학력테스트까지 다양한 검사와 정보를 통해 통합적인 사고로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입소부터 시작되는 자립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원에는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은 역시 퇴소 후다. 그룹홈 청소년들이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퇴소하지만 자립에 가장 힘든 부분을 호소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직업교육과 알선 그리고 경계선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관을 준비하여 격에 맞는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많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오늘도 절규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룹홈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연구보고서도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나 권위보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자는 욕심이 더 앞서서 선생님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 속상합니다.

하지만 전국 그룹홈에 계신 모든 선생님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아이들이 항상 우선 이였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퇴소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멋진 성장과 그룹홈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하여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권위보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문

이인옥 과장

[기획재정부 기금사업과]



MEMO

〈토론〉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토론문

유주현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MEMO

〈부록〉

- 실태조사 설문지
- 심층면접 질문지



2017 그룹홈 실태조사 (운영자용)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입니다.

먼저 귀 그룹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실태조사로 그룹홈 제도의 활성화와 정책제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그룹홈의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한 근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본 설문에 대한 답변은 연구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비밀은 안전하게 보장되오니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설문지 항목이 많고, 종사자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 등에 응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사무국 02-364-1611 / 1617

책임연구자 :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후원 : 일주학술문화재단

2017년 11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Grouphome Korea Council of Grouphome for Children&youth

일련번호(기재하지 마세요)

--	--	--	--

지역		
----	--	--

그룹홈 운영자 설문지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그룹홈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 ② 학대피해아동쉼터 ③ 영유아

1-1. 귀 그룹홈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개인 ② 사회복지법인 ③ 재단법인
④ 사단법인 ⑤ 시민사회단체 ⑥ 사회복지단체
⑦ 종교법인 및 단체 ⑧ 국가지방자치단체 ⑨ 임의단체
⑩ 비영리민간단체 ⑪ 지회 ⑫ 기타()

2. 귀 그룹홈의 소재지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습니까?

- 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3. 귀 그룹홈의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주택 ③ 아파트 ④ 빌라
⑤ 복합건물 ⑥ 기타()

4. 귀 그룹홈 건물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운영자 개인 소유 ② 법인 또는 단체 소유 ③ 전세 ④ 월세
⑤ 무상대여 ⑥ LH나 SH 공공임대주택 ⑦ 기타()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기타 (회)

① 500만원미만 ② 500만-1,000만원 ③ 1,000만-1,500만원
④ 1,500만-2,000만원 ⑤ 2,000만-2,500만원 ⑥ 5,000만-1억원 ⑦ 1억원 이상

① 지원을 받고 있다 ② 지원을 받지 않는다

6-1. 개소 당시 비용은 얼마입니까?(시설매입/전세/월세, 집기구입, 기능보강비용 등 포함)
(만원)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1년 이하 ③ 1년-1년6개월 이하
④ 1년6개월-2년 이하 ⑤ 2년 이상

1년 합계 기준(금 원)

① 시설 기능보강비용 ② 시설 임차비용 ③ 수용비 및 수수료 ④ 공공요금
⑤ 제세공과금 ⑥ 인건비(수당, 사회보험부담금 등) ⑦기타 ()

8-2. 후원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외부 공개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귀 그룹홈에서 외부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 가장 후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시설개보수 ② 시설기능보강 ③ 아동 교육, 학원비 ④ 아동 치료비 (심리, 병원비)
⑤ 그룹홈 운영비(냉난방비, 공과금 등) ⑥기타 ()

10. 귀 그룹홈에 주로 후원하는 기업 또는 재단이 있다면 1순위~3순위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수와 연령층, 성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령층 성별	① 7세 이하	② 8세~13세	③ 14세~16세	④ 17세~19세	⑤ 20세 이상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1-1. 현재 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몇 명입니까? 명

1-2. 총원 중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몇 명 있습니까? 명

2. 귀 그룹홈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주요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2개를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 ① 학습지도 ② 인성지도 ③ 대인관계 ④ 진로지도 ⑤ 자립준비
⑥ 원가족 복귀 지원 ⑦ 문화여가활동 ⑧ 기타 ()

주요 교육 순서대로 2개를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 ① 생활예절교육 ② 특기적성교육 ③ 성교육 ④ 인권교육 ⑤ 취업교육
⑥ 자립교육 ⑦ 비행예방교육 ⑧ 교과목교육 ⑨ 기타 ()

4. 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그룹홈 생활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점부터 순서대로 2개를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 ① 여러 가지 문화체험,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다
- ② 또래들이 많아서 재미있다
- ③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좋다
- ④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
- 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 ⑥ 식사 및 주거환경이 가정적이다
- ⑦ 원가족의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서 좋다
- ⑧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취업교육 등 교육의 기회가 많다
- ⑨ 기타(구체적으로:)

5. 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그룹홈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점부터 순서대로 2개를 적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 ① 집단생활의 스트레스
- ② 부모/친척에 대한 그리움
- ③ 그룹홈 교사들의 꾸지람(훈육)
- ④ 그룹홈 안에서 친구나 선배의 괴롭힘
- ⑤ 그룹홈 안에서의 적응문제
- ⑥ 주변에서 시설(그룹홈)의 아이라고 놀리거나 무시/차별하는 것
- ⑦ 자립 및 진로에 대한 불안
- ⑧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상담하지 않는 것
- ⑨ 기타(구체적으로:)

① 학습부진 ② 정서불안 ③ 진로 및 자립 ④ 우울증
⑤ 학교부적응 ⑥ 가출 ⑦ 대인관계 ⑧ 비행
⑨ 이성문제 ⑩ 친가족과 갈등 ⑪ 기타 ()

구 분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1. 주택마련 비용지원 및 연계					
2. 자립지원금 지원 및 연계					
3. 학비 및 장학금 지원 및 연계					
4. 직업훈련 연계					
5. 취업알선 및 연계					
6. 상담 (개별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					
7. 지속적인 관계 맺기					
8. 기타(추가기재)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9-1) ④ 매우 불만족(☞ 9-1)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어려움(☞ 11-1) ④ 매우 어려움(☞ 11-1)

① 예 ② 아니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④ 5년 이상 7년 미만 ④ 7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⑥ 취업 전까지

15. 그룹홈 퇴소 후 담당자가 내방,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한다면 어느 정도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주 1회 ② 월 1회 ③ 2-3개월 1회
④ 6개월 1회 ⑤ 1년 1회 ⑥ 기타()

16. 보호 종결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②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③ 거주할 집 문제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⑧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⑩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⑪ 기타()

17. 자립지원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비 지원 ② 주거지원 ③ 건강지원(의료지원)
④ 학업지원 ⑤ 취업지원(직업훈련) ⑥ (심리)상담지원
⑦ 법률지원 ⑧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⑨ 기타 ()

운영책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 그룹홈의 종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총 명)
- ▶ 상근종사자 (명)
- ▶ 비상근종사자(주 20시간정도 근무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자)(명)
- ▶ 근무형태
- 종사자 2인 경우 ① 주간근무 ② 격일제 ③ 주야교대 ④ 3조2교대 ⑤ 기타()
- 종사자 3인 경우 ① 주간근무 ② 격일제 ③ 주야교대 ④ 3조2교대 ⑤ 기타()
- ▶ 운영책임자와 종사자간 가족 혹은 친인척 관계 여부 (예, 아니오)

2. 그룹홈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명)

3. 운영자(시설장)의 인적사항을 다음 양식에 의거 적어 주십시오. 해당되는 번호 위에 O표를 해주시거나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 시설장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만() 세
3. 최종학력	① 고졸이상 ② 대졸 ③ 석사 졸 ④ 박사과정 이상	4.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5. 종 교	① 가톨릭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종교 없음 ⑥ 기타종교 ()		
6. 자격증 * 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1급사회복지사 ② 2급사회복지사 ③ 교사 ④ 보육교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 기타()		
7. 사회복지분야 근무년수 (현직포함)	() 년	8. 현 시설 근무년수	() 년
9.이전의 직업 (활동)		10. 전공	① 사회복지 ② 이공계열 ③ 인문계열 ④ 예술계열 ⑤ 사회학계열
11. 근무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2. 월평균 임금	() 만원(세전)	13. 4대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 ② 가입 안함
14. 급여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illegible]

4. 그룹홈에서 받고 싶은 희망임금은 얼마입니까? (연 만원)

5. 귀 시설에서 지난 3년간 이직한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명)

6. 그룹홈 내에서 사용하는 호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이모, 엄마, 아빠, 삼촌, 고모, 큰아빠, 큰엄마, 시설장, 보육사, 아이 이름 등

① 아동 → 종사자 () ② 종사자 → 아동 ()

③ 종사자 $\rightarrow$ 종사자 ()

운영자 직무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번호	설문내용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편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들과 하루의 활동을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적당하다				
3	나의 보수는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적당하다				
4	내가 하는 일은 학부모들에게나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다				
5	내 직업에 대해 남 앞에 떳떳이 내세울 수 있다				
6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잘 실시되고 있다				
7	내가 근무하는 곳은 아동인원에 알맞은 크기이다				
8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는다				
9	현재 나의 근무시간에 만족스러운 편이다				
10	나는 보수외의 수당들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1	우울했던 기분도 아이들을 보면 상쾌해 진다				
12	내가 근무하는 곳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13	나의 보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볼 때 적당하다				
14	보육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				
15	사람들은 대체로 그룹홈 생활복지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6	내가 그룹홈 생활복지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7	내가 근무하는 곳에는 생활복지사의 독립 공간이 갖추어져있다				
18	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19	내가 하는 일이 시간에 쫓길 때가 많다				

운영자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번호	설 문 내 용	① 매 우 그렇다	② 대 체 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편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많이 지쳐 있다.				
2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녹초가 된다고 느낀다.				
3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4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이다.				
5	나는 이 직업을 가진 후 점점 짜증이 늘어난다.				
6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7	내가 보다 나은 직장을 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둘 것이다.				
8	사람들을 만날 때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				
9	내 직업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무더질까봐 걱정스럽다.				
10	그룹홈 아동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11	나는 그룹홈 아동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12	나는 그룹홈 아동의 문제를 적절히 잘 다루고 있다.				
13	나는 직업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14	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				
15	나는 별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다.				
16	나는 일을 할 때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17	이 일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다.				

★ 장시간의 설문에 감사드립니다. ★

2017 그룹홈 실태조사 (보육사용)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입니다.

먼저 귀 그룹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실태조사로 그룹홈 제도의 활성화와 정책제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그룹홈의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에 대대한 정책제언을 위한 근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본 설문에 대한 답변은 연구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비밀은 안전하게 보장되오니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설문지 항목이 많고, 종사자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 등에 응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사무국 02-364-1611 / 1617

책임연구자 :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후원 : 일주학술문화재단

2017년 11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Grouphome Korea Council of Grouphome for Children&youth

--	--	--	--

지역		
----	--	--

☐ 종사자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만() 세
3. 최종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졸 ④ 박사과정 이상	4.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5. 종 교	① 가톨릭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종교 없음 ⑥ 기타종교 ()		
6. 자격증	① 1급사회복지사 ② 2급사회복지사 ③ 교사 ④ 보육교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기타()		
7. 사회복지분야 근무년수(현직포함)	() 년	8. 현 시설 근무년수	() 년
9. 이전의 직업 (활동)		10. 전공	① 사회복지 ② 이공계열 ③ 인문계열 ④ 예술계열 ⑤ 사회과학계열
11. 근무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2. 월평균 임금	() 만원(세전)	13. 4대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 ② 가입 안함
14. 급여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5. 일평균 근로시간	() 시간	16. 주평균 근로일수	() 일
17. 1년간 적절한 교육훈련기간 (원하는 경우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8.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	① 노동시간의 개선 ② 보수체계의 개선 ③ 전문성 강화 ④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⑤ 슈퍼비전 제공 ⑥ 정기적인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 ⑦ 기타()		
19.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종사자 직무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번호	설 문 내 용	① 매 우 그렇다	② 대 체 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편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동들과 하루의 활동을 끈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적당하다				
3	나의 보수는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적당하다				
4	내가 하는 일은 학부모들에게나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다				
5	내 직업에 대해 남 앞에 떳떳이 내세울 수 있다				
6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잘 실시되고 있다				
7	내가 근무하는 공간은 아동인원에 알맞은 크기이다				
8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는다				
9	현재 나의 근무시간에 만족스러운 편이다				
10	나는 보수외의 수당들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11	우울했던 기분도 아이들을 보면 상쾌해 진다				
12	내가 근무하는 활동 공간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다				
13	나의 보수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볼 때 적당하다				
14	보육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				
15	사람들은 대체로 그룹홈 생활복지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6	내가 그룹홈 생활복지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7	내가 근무하는 곳에는 생활복지사의 독립 공간이 갖추어져있다				
18	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19	내가 하는 일이 시간에 쫓길 때가 많다				

종사자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번호	설 문 내 용	① 매 우 그렇다	② 대 체 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은편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많이 지쳐 있다.				
2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녹초가 된다고 느낀다.				
3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4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이다.				
5	나는 이 직업을 가진 후 점점 짜증이 늘어난다.				
6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7	내가 보다 나은 직장을 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둘 것이다.				
8	사람들을 만날 때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				
9	내 직업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무더질까봐 걱정스럽다.				
10	그룹홈 아동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11	나는 그룹홈 아동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12	나는 그룹홈 아동의 문제를 적절히 잘 다루고 있다.				
13	나는 직업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14	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				
15	나는 별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다.				
16	나는 일을 할 때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17	이 일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장시간의 설문에 감사드립니다. ★

그룹홈 아동·청소년 설문지

*** 이 설문은 11세 이상(만 10세) 아동·청소년이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가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도

3. 부모에게서 떨어져 생활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3-1. 그룹홈에서 생활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4.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
|--------------|---------------------|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 ③ 친할아버지/친할머니 | ④ 외할아버지/외할머니 |
| ⑤ 외삼촌/이모 | ⑥ 삼촌/고모 |
| ⑦ 형제자매 | ⑧ 새엄마/새아빠 |
| ⑨ 다른 시설에서 생활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5. 현재 알고 있는 가족과 친척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
|---------------------|---------------------------|
| _____ ① 아버지 | _____ ② 어머니 |
| _____ ③ 친할아버지/친할머니 | _____ ④ 외할아버지/외할머니 |
| _____ ⑤ 어머니의 남/여자형제 | _____ ⑥ 아버지의 남/여자형제 |
| _____ ⑦ 형제자매 | _____ ⑧ 새엄마/새아빠 |
| _____ ⑨ 다른 시설에서 생활 | _____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9. 이곳에 들어오기 전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 때 아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① 전혀 없었다	② 1년에 1-2번 정도	③ 2-3 개월에 1-2번 정도	④ 한달에 1-2번 정도	⑤ 일주일 1-2번 정도
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					
2	부모님(보호자)이 흥기로 나를 위협하거나 찔렀다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이 꾸짖은 적이 있다					
4	부모님(보호자)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집을 본 적이 있다					
5	나는 굶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6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7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8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해 우리 부모님(보호자)은 관심이 없다					
9	부모님(보호자)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한다					

10. 그룹홈에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점부터 순서대로 2개를 적
어 주십시오. 제1순위 (), 제2순위 ()

- ① 여러 가지 문화체험,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다
- ② 또래들이 많아서 재미있다
- ③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좋다
- ④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
- 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 ⑥ 식사 및 주거공간이 좋다
- ⑦ 원가족의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서 좋다
- ⑧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취업교육 등 교육의 기회가 많다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제1순위 (), 제2순위 ()

- ⑨ 기타(구체적으로:)

12. 귀하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친구(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 ③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④ 절대로 하지 않는다

13. 그룹홈으로 오게 된 이후 본인의 학업 성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④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14. 그룹홈 생활 중 만족스러운 것과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이 만족이면 만족란에 v표, 불만족이면 불만족란에 v표를 하세요.

구 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 음식				
2. 의복				
3. 여가시간				
4. 용돈				
5. 아동들 간의 관계				
6. 자유로운 외출				
7. 이곳 어른들과의 관계				
8. 공부할 수 있는 환경				
9. 이곳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				
10. 취업관련 프로그램				
11. 진학관련 프로그램				
12. 기타				

15. 그룹홈에서 생활할 때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① 예 (☞ 15-1)

_____ ② 아니오

15-1. (가출한 경험이 있다면) 그룹홈에서 가출은 몇 번 하였습니다까?(번)

15-2. (가출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_____ ② 학교 가기가 싫어서

_____ ③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_____ ④ 그룹홈의 규칙(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_____ ⑤ 그룹홈의 어른들(보호자)과 사이가 나빠서

_____ ⑥ 그룹홈의 다른 아동들과 사이가 나빠서

_____ ⑦ 그룹홈에 나만의 공간(사생활 존중)이 없어서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6. 그룹홈으로 오게 된 후 학교·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 항		① 전혀 없다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1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2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3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4	다른 아이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5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걸어찬 적이 있다				

17. 최근 6개월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부모/친척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7-1)

② 없다

17-1.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부모/친척이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할아버지/친할머니 ④ 외할아버지/외할머니
⑤ 외삼촌/이모 ⑥ 삼촌/고모 ⑦ 형제자매 ⑧ 새엄마/새아빠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7-2.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합니까?

- 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② 한 달에 한 번 이상 ③ 두 달에 한 번 이상
④ 일 년에 한두 번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항상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6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7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8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9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2. 여러분이 장차 결혼하였을 때, 각자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맡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잘 해낼 것이다 ②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할 것이다
 ③ 잘 할 것 같지 않다 ④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3. 다음의 각 항목 중에 만약 현재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이 있으면 V표를 하세요.

문 항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런 편이다	③ 자주 그렇다
1	외롭다고 불평한다			
2	잘 운다			
3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4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6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7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8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9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1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1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3	걱정이 많다			
14	말다툼을 자주 한다			
15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16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17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8	내 물건을 부순다			
19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20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21	학교 • 학원에서 말을 안 듣는다			
22	쌈을 잘 낸다			
23	자주 싸운다			
24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25	고함을 지른다			
26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27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28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29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30	남을 잘 놀린다			
31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32	남을 위협한다			

그룹홈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각각의 말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해당 칸에 V표를 하세요.

번호	설 문 내 용	① 매 우 그렇다	② 대 체 로 그렇다	③ 보 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편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집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2	우리 집에서는 내 힘에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권하신다					
3	우리 집에서는 어른이 하는 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말할 수가 있다					
4	우리 집에서는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는 편이다					
5	우리 집에서는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다					
6	나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신다					
7	우리 집에서는 내가 실수를 저질러도 꾸짖기보다는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8	우리 집에서는 내가 밖에서 늦을 때면 혹시 잘못될까 봐 염려하신다					
9	우리 집에서는 함께 모여 오락 및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					
10	우리 집에서는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직접 해보게 맡겨 주는 편이다					
11	내가 무슨 일은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만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내게 맡겨 주신다					
12	나의 옷이나 물건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사는 편이다					
13	내 공부방의 방 배치나 살림 위치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해도 수고했다고 격려해 준다					
15	우리 집에서는 실수했거나 부끄러운 일이라도 거리낌 없이 생활교사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16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17	우리 집에서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힘을 합해 도와준다					
18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					
19	우리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다					
20	우리 집에서는 공동의 일을 놓고 함께 모여 의논 할 때가 많다					
21	내가 잘 해낸 일이 있을 때엔 우리 집 식구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다					
22	우리 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서로 무관심하다					
23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과 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					
24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실수를 할까 봐 걱정부터 하신다					
25	우리 집에서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도록 한다					
26	우리 집에서는 나의 친구들이 시설에 놀러 오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27	우리 집에는 남의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28	우리 집에서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때가 많다					
29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					
30	우리 집에서는 하찮은 일로도 나를 바보나 멍청이 같다고 꾸중 한다					
31	내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는 우선 화부터 내신다					
32	우리 집에서는 나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편이다					
33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 집은 마음대로 나에게 관한 일을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34	우리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사면 대단히 꾸중 하신다					
35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도 우리 집에서 반대하시면 못하고 만다					
36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할 때가 많다					
37	우리 집에서는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신다					
38	우리 집 식구들이 보기 싫어 집을 나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39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못마땅해 한다					
40	우리 집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편이다					

6. 퇴소 후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 ②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 ③ 거주할 집 문제
- ④ 음식, 빨래,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 ⑧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 ⑩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 ⑪ 기타()

7. 자립지원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비 지원 ② 주거지원 ③ 건강지원(의료지원)
- ④ 학업지원 ⑤ 취업지원(직업훈련) ⑥ (심리)상담지원
- ⑦ 법률지원 ⑧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⑨ 기타 ()

8. 퇴소 후 시설 선생님과 관계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멀다 ② 다소 멀다 ③ 가깝다 ④ 매우 가깝다

9. 귀하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10번) ② 아니오 (☞ 11번)

10. 귀하는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중복응답가능)

10-1. 등록금 마련 방법 :

10-2. 생활비 마련 방법 :

<보기>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④ 자립정착금	⑤ 시설후원	⑥ 금융기관 대출
⑦ 조부모/친인척 지원	⑧ 부모/형제 지원	⑨ 아르바이트
⑩ 학교장학금	⑪ 디딤씨앗통장(CDA)	⑫ 기타()

11. 현재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직업훈련 중
- ② 자격증 및 어학공부
- ③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는 중
- ④ 구직정보를 찾아보고 있음
- ⑤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음
- ⑥ 기타()

11-1. 어떤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관리직 종사자(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전문가, 컴퓨터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교육전문가, 상담자, 작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배우 등)
-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미용사, 조리사,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근로자, 동물사육사, 정원사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근로자 등)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 ⑨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 ⑩ 없음
- ⑪ 기타()

★ 장시간 설문에 감사드립니다.★

심층면담 질문지(아동)

■ 기초 질문

1. 귀하(성별)는 현재 몇 살입니까?
2.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3.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에서는 얼마동안 생활하고 계십니까?

■ 심층면담 질문

4. 그룹홈에 들어오기 전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억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5. 그룹홈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6. 그룹홈에 들어오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7.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에 들어오기 전, 다른 시설(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있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8.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룹홈에서 삶(관계, 환경 등)은 어떠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9. 현재 원가족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원가족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 평소 학교생활(학업,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은 어떻습니까?
11. 힘든 순간에 나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12. 본인이 꿈꾸는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

발 행 처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발 행 인 : 안정선 회장

위 은 이 : 최선숙, 김혜선

발 행 일 : 2018년 6월 18일

주 소 : 04549 서울시 중구 을지로18길 5, 6층(을지로4가 315-1 무광빌딩)

전 화 : 02-364-1611, 1617

팩 스 : 02-364-1613

홈페이지 : www.grouphome.kr